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영업승계 관련법제 개선방안

이 세 정



연구보고 2012-09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영업승계 관련법제 개선방안

이 세 정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영업승계 관련법제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business
succession system for Burdened Reduction
of Enterprise and Citizen

연구자 : 이세정(연구위원)
Yi, Se-Jeong

2012. 10. 31.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 영업을 인·허가를 받은 자가 해외이주·직업변경이나 그 밖의 개인적 사정으로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즉 영업을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 그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허가를 일단 취소하고 그 영업을 승계한 자가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경제활동의 계속성이 단절됨에 따른 불이익을 초래하여 영업을 양도·양수나 합병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영업자 개인으로 보나 국가경제적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의 경우 영업을 인·허가를 새로 받게 하기보다는

영업허가의 승계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경제활동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그리하여 인·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규제 관련 법률에서는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합병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영업시설·설비를 인수한 자의 지위(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런데 영업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상 ①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영업승계와 관련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②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③ 영업승계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미비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경우, ④ 영업승계 관련 신고 등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다하거나 중복 제재를 예정하고 있거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지위(권리·의무) 승계 여부나 그 대상·범위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상과 같은 경우는 행정의 수범자인 국민과 관련 기업들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이들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준법의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영업승계법제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승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영업승계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영업승계제도의 의의 및 관련 법적 문제점 등에 관한 학설·판례의 입장 등을 분석함
-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 영업승계제도의 현황을 법령전수조사방법을 통하여 분석함. 이 때 ①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②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③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④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⑥ 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제 분야의 순서로 분석함
- 제4장에서는 현행법상 영업승계제도의 현황 분석을 기초로 ①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영업승계와 관련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②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③ 영업승계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미비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경우, ④ 영업승계 관련 신고 등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도하거나 중

복 제재를 예정하고 있거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지위(권리·의무) 승계 여부나 그 대상·범위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5장에서는 현행법상 영업승계제도 정비방향(내지 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국민과 관련 기업들의 권익 실현·불필요한 부담 경감에도모하고,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영업승계법제의 효율적 운용과 선진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부처의 영업승계법제 정비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주제어 : 영업승계, 권리·의무의 승계,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양도, 영업규제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When a person intends to run business regulated by laws, it takes considerable money and efforts as the person should obtain authorization and a permit after satisfying the labor and physical requirements. However, when the person is no longer able to continue to run the business, after obtaining such authorization and a permit, due to his/her moving home overseas, changing jobs, any other personal reasons, or his/her death, the business should be transferred, or inherited to an eligible person.

- When the succession of a business is denied for a transfer, acquisition, merger, or inheritance of a business, the business permit held by the former business owner is revoked, and the successor shall proceed to re-apply for the business license. Such complex procedures naturally disrupt a business continuity, making the transfer, acquisition and merger of a business difficult and complicated. Since this does not benefit the individual business as well as the State and the nation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business to be transferred, or inherited.

- Moreover, it is recommended to allow the following persons to succeed to the business permit, instead of having them newly obtain authorization and a permit for a business: any person wholly

or partially acquires business facilities and equipment in the course of the auct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the conversio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sale of seized property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 Customs Act, or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or any other equivalent procedures. By removing such unnecessary procedures, the business continuity can be secured for business operators in their economic activities.

- In the case of a business transfer, the death of a business operator, or a merger, a person who acquires the business facilities and equipment through an auction or any other viable means is governed, in relation to succeeding to the business status (rights and obligations), by the provisions of the laws on business regulations which mandate a business operator to obtain authorization and a permit.

- However, there are some regulatory problems as described follows under the current laws that regulate the business succession: ① There are several provisions in subordinate statutes that contain provisions concerning the imposition of new obligations on the successor without any explicit ground for delegation of authority, or stipulates significant and fundamental issues concerning the business succession; ② A successor is subject to unnecessary or excessive legal obligations; ③ The procedural regulations for business succession are insufficient or unreasonable; ④ There are redundant or excessive disciplinary measures for a violation of obligations, such as reporting of business succession in some cases, or there are no

regulatory measures specified in relation to the violation of some obligations. In this c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levant obligations cannot be fully secured; and ⑤ In some cases, it is not clearly specified in relevant laws as to whether the status (rights and obligations) of business is to be succeeded to, and other matters, such as the kind of rights and obligations subject to succession and its scope, are not also clearly provided for.

-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related companies that have the obligations to observe the laws and subordinate statutes are likely to be infringed upon; the legal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may also be undermined; their law-abiding spirit may also be discouraged, or the effective legal system cannot be secured in relation to the succession of busi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per standards for business succession, and improve the related regulatory system.
-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islative issues in relation to the succession of business and to explore appropriate ways for improvement by conducting surveys and analysis of the current laws and statutes that govern business succession.

II. Main Content

- In Chapter 2, the significance of the business succession system is defined, and the academic theories and court decisions are analyzed in relation to the related legislative problems.

- In Chapter 3, the current status of the business succession system under the current law is analyzed through a complete enumeration. The analysis is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① Land and maritime related legislative issu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② Knowledge and economy related legislative issu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③ Health and welfare related legislative issu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④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lated legislative issues under the jurisdiction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⑤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lated legislative issues under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⑥ Environment-related legislative issues under the jurisdiction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In Chapter 4, the following issues are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business succession system under the relevant law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are suggested: ① There are several provisions in subordinate statutes that contain provisions concerning the imposition of new obligations on the successor without any explicit ground for delegation of authority, or stipulates significant and fundamental issues concerning the business succession; ② A successor is subject to unnecessary or excessive legal obligations; ③ The procedural regulations for business succession are insufficient or unreasonable; ④ There are redundant or excessive disciplinary measures for a violation of obligations, such as reporting of business succession in some cases,

or there are no regulatory measures specified in relation to the violation of some obligations. In this c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levant obligations cannot be fully secured; and ⑤ In some cases, it is not clearly specified in relevant laws as to whether the status (rights and obligations) of business is to be succeeded to, and other matters, such as the kind of rights and obligations subject to succession and its scope, are not also clearly provided for.

- In Chapter 5, the direction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business succession system under the current laws.

III. Expectations

- Under the improved business succession system, it is expected to impro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related companies, lower unnecessary administrative burdens, while securing the predictability of law enforcement and legal stability.
-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effectively run the business succession system and to realize the advanced rule of law.
- This study is also expected to be used as reference when the government ministries revise the legislative system for business succession.

► Key Words : Succession of Business, Success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Succession of the Effect on Administrative Sanction, Business Transfer, Regulation on Business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2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24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2. 연구의 구성	26
제 2 장 영업승계제도 일반론	29
제 1 절 영업승계의 의의 및 인정 필요성	29
1. 의 의	29
2. 인정 필요성	32
제 2 절 영업허가 효과의 승계(이전) 가능성, 승계 사유, 승계 효과 및 영업승계 신고와 수리의 효과	33
1. 승계 가능성	33
2. 승계 사유	39
3. 승계 효과(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	43
4. 영업승계 신고와 수리의 효과	45
제 3 절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여부	55
1. 제재적 행정처분의 의의 및 종류	55
2. 제재적 행정처분효과 승계의 필요성	57

3. 제재적 행정처분효과 승계 가능성	58
4. 제재적 행정처분효과 승계 요건	64

제 3 장 현행법상 영업승계제도 현황 분석

제 1 절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승계	67
2. 건설업 승계	67
3. 골재채취업 승계	69
4. 공인중개사무소 재개설등록시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69
5. 궤도사업 승계	69
6.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	70
7.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 승인 승계	71
8.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창고업 승계	71
9. 국제물류주선업 승계	72
10. 부동산개발업 승계	72
11.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영업승계	75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계	75
13. 자동차관리사업 승계	77
14. 휴양펜션업 승계	77
15.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정화업 승계	77
16. 철도사업·전용철도 운영권 승계	78
17. 철도용품 인증품 생산업 승계	80
18. 측량업·수로사업 승계	81
19. 국내항공운송업·국제항공운송업 등 승계	81
20. 향로표지위탁관리업 승계	83
21. 예선업 승계	83

22. 항만운송사업 · 항만운송관련사업 승계	83
23.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 · 안전관리대행업 승계	84
24. 해양심층수개발업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 먹는 해양심층수수입업 승계	84
25. 해양환경관리업 승계	85
26. 해양여객운송사업 승계	86
27. 화물자동차운송업 승계	87
제 2 절 지식 · 경제 관련 법제 분야	88
1. 고압가스 제조허가업 등 승계	88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고압가스 제조 허가업 ·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업 · 도시가스 공급시설업 승계	88
3. 도시가스사업 · 천연가스수출입업 승계	89
4. 산업표준화 인증기관의 지위승계	90
5. 석유정제업 · 석유수출입업 · 석유판매업 승계	90
6. 석탄가공업 승계	91
7. 액화석유가스업 등 승계	91
8. 엔지니어링사업 승계	92
9. 특정물질 제조업 승계	93
10. 대규모점포등개설자 · 우수체인사업 · 공동집배 센터사업 승계	93
11. 전기공사업 승계	94
12. 전기사업 승계	95
13. 전력기술물 설계업 · 감리업 승계	96
14.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승계	97
15.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 승계	97

16. 집단에너지사업 승계	98
17. 특정사업 승계	99
18. 1종화학물질의 제조업·생물작용제등 제조업 승계	99
제 3 절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100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수입업·판매업 승계	100
2. 공중위생영업 승계	101
3. 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102
4. 산후조리업 승계	102
5. 사회복지법인합병에 따른 영업승계	103
6.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 승계	104
7. 식품위생검사기관·식품제조업 등 영업승계	105
8. 의약품등 제조업등 승계	106
9.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07
10. 응급환자이송업 승계	108
11.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승계	108
12.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자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109
13. 화장품 제조업·판매업 승계	110
제 4 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110
1. 게임제작업등 승계	110
2. 관광사업 승계	111
3.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승계	112
4. 영화상영관 경영자 지위 승계·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승계	113
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승계	115

6. 정기간행물사업 승계	116
7. 체육시설업 승계	117
제 5 절 농 · 수산 · 식품 관련 법제 분야	118
1. 가축 또는 물건 관련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118
2. 농수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 우수관리시설 ·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118
3. 농수산물유통 도매시장법인 지위 승계	119
4. 농약등 제조업 · 수출입식물방제업 · 품목등록제조업 · 수입업 · 원재업 · 판매업 지위승계	119
5.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120
6.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122
7.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승계	122
8. 비료업 승계	123
9. 사료제조업 승계	123
10. 수산동물 또는 물건 관련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124
11. 허가(한시허가)어업 승계	124
12.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승계	125
13.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 ·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승계	126
14. 양곡가공업 승계	126
15. 어장정화 · 정비업 승계	127
16. 염제조업 승계	127
17. 인삼류제조업 승계	128
18. 도축업 · 집유업 · 축산물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 보관업 승계	128
19. 축산업 · 가축사육업 승계	129
20.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 인증기관/농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 ·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승계	129

제 6 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131
1.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자의 지위승계 · 가축분뇨 관련영업 승계 · 처리시설설계 · 시공업 승계	131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방지사설 설치자의 지위 승계	132
3. 유독물 영업/취급제한 · 금지물질 영업승계	132
4. 소음진동배출시설 · 방지사설 설치자의 지위승계	133
5. 수질 배출시설 · 방지사설 설치자/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징수대상 공장 · 사업장 양수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의 지위승계 및 폐수처리업 승계	134
6. 사업장폐기물배출업/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	135
7. 분뇨수집 · 운반업 승계	137
8. 배출시설이나 불법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의 승계인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37
제 4 장 개선대상 사례 및 개선방안	139
제 1 절 국토 · 해양 관련 법제 분야	139
1.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화를 요하는 경우	139
2.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	147
3. 승계 관련 절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151
4.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181
5. 기 타	186
제 2 절 지식 · 경제 관련 법제 분야	190
1.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화를 요하는 경우	190

2.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	200
3. 승계 관련 절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209
4.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241
5. 기 타	248
제 3 절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254
1.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화를 요하는 경우	254
2.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	258
3. 승계 관련 절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264
4.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286
5. 기 타	301
제 4 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313
1.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	313
2. 승계 관련 절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318
3. 기 타	327
제 5 절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330
1.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화를 요하는 경우	330
2.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	336
3. 승계 관련 절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341
4.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346
5. 기 타	353
제 6 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356
1.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	356
2. 기 타	358

제 5 장 결 론 361

참 고 문 헌 369

《부 록》

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375

II.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412

III.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432

IV.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 446

V.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 457

VI. 환경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47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 영업을 인·허가를 받은 자가 해외이주·직업변경이나 그 밖의 개인적 사정으로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영업을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 그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허가를 일단 취소하고 그 영업을 승계한 자가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경제활동의 계속성이 단절됨에 따른 불이익을 초래하여 영업을 양도·양수나 합병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영업자 개인으로 보나 국가경제적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의 경우 영업을 인·허가를 새로 받게 하기보다는 영업허가의 승계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경제활동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인·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규제 관련 법률에서는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합병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영업시설·설비를 인수한 자의 지위(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규정하는

1) 김승열, 영업을 승계사유에 따른 승계효과, 법제 제500호, 법제처, 1999. 8.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c%98%81%ec%97%85%ec%8a%b9%ea%b3%84&mpbLegPstSeq=129774>>

경우가 많고, 그 조명을 ‘승계’, ‘지위승계’, ‘권리·의무승계’, ‘○○업의 양수 등’ 등으로 명명하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또는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등록영업이나 신고영업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그 법적 성격이 강화상 허가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명칭만을 변경한 경우 허가영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업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영업자의 사망으로 영업을 상속받은 경우 종전 영업자의 지위가 양수인 또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영업허가 등이 물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고 행하여진 것인지, 인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고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에 관하여 학설·판례상 일치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업허가의 성격이 대인적인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가 불가능하고, 대물적인 경우에는 양도가 허용되며, 대인적·대물적인 성격이 혼합된 경우에는 그 허용 여부를 살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영업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영업승계와 관련하여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영업승계와 관련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 영업승계와 관련하여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 영업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

- 영업승계 신고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 또는 장기여서 신고자에게 충분한 신고기간을 주지 않거나 행정청의 관리·감독에 공백을 가져오는 경우, 영업승계 신고의 기산점이 불명확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시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 영업승계 관련 신고 등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다하거나 중복 제재를 예정하고 있거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 그 밖에 지위(권리의무) 승계 여부나 그 대상·범위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승계요건이나 절차 등을 무차별적으로 간소화하거나 없앤 경우 등.

이상과 같은 경우는 행정의 수범자인 국민과 관련 기업들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이들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준법의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영업승계법제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바, 타당한 승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영업승계와 관련하여 ①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영업승계와 관련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②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③ 영업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 영업승계 신고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 또는 장기여서 신고자에게 충분한 신고기간을 주지 않거나 행정청의 관리·감독에 공백을 가져오는 경우, 영업승계 신고의 기산점이 불명확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시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④

영업승계 관련 신고 등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다하거나 중복 제재를 예정하고 있거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지위(권리의 무) 승계 여부나 그 대상·범위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승계요건이나 절차 등을 무차별적으로 간소화하거나 없앤 경우 등의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영업승계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과 관련 기업들의 권익 실현·불필요한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영업승계법제의 효율적 운용과 선진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연구기간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모든 현행법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표와 같이 ①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②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③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④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⑥ 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제 분야로 나누어 총 495개의 법률(해당 시행령·시행규칙 포함)상 영업승계규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분야 및 법률】

분 야	소관 부처	법 률 명	합 계	비 고
국토·해양	국토해양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외 137개	138개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소관 법령 제외
지식경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외 95개	96개	-특허청 소관 법령 제외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 82개	83개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외 45개	46개	
농림·수산·식품	농림수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외 82개	83개	
환경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 48개	49개	
			총 495개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일간에 걸쳐 연구대상 영업승계제도의 현황을 승계대상 영업명(해당 법률명 및 조문), 승계사유, 승계인, 승계절차, 인·허가·신고권자, 신고의무자, 신고기간,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 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를 이용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조사분석 대상 법령의 선정기준일은 법령의 시행일을 그 기준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시작단계인 201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추후 해당 영업승계 관련 조항이 개정된 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법령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해당 법제 분야별로 영업승계제도의 규정 방식 등 현황을 분석하고,²⁾ 개별법상의 영업승계제도 현황분석 결과 개선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크게 ① 영업승계 관련 새로운 의무 부과 등 법률화를 요하는 규정, ② 영업승계 관련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규정, ③ 영업승계 관련 절차 규정, ④ 영업승계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⑤ 기타로 나누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³⁾ 이 때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워크숍을 통하여 영업승계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였다.

2. 연구의 구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2장에서는 영업승계제도의 의의 및 관련 법적 문제점 등에 관한 학설·판례의 입장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 영업승계제도의 현황을 법령전수조사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①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②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③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④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⑥ 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제 분야의 순서로 분석하고자 한다.

2) 해당 법제 분야별 영업승계제도의 현황은 법률의 가나다순으로 분석하였다.

3) 향후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영업승계 관련 법제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의 타당성 확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제4장에서는 현행법상 영업승계제도의 현황 분석을 기초로 ①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영업승계와 관련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②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③ 영업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 영업승계 신고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 또는 장기여서 신고자에게 충분한 신고기간을 주지 않고 있거나 행정청의 관리·감독에 공백을 가져오는 경우, 영업승계 신고의 기산점이 불명확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시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④ 영업승계 관련 신고 등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다하거나 중복 제재를 예정하고 있거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지위(권리의무) 승계 여부나 그 대상·범위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승계요건이나 절차 등을 무차별적으로 간소화하거나 없앤 경우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현행법상 영업승계제도 정비방향(내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영업승계제도 일반론

제 1 절 영업승계의 의의 및 인정 필요성

1. 의 의

영업허가⁴⁾는 실정법상으로는 물론 학문적으로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그 대상과 성질·효과를 기준으로 이론상 허가의 전형적 형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⁵⁾ 즉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론 및 행정법각론에서의 경찰작용과 공기업작용의 구별을 전제로, 영업허가란 명령적 행위에 속하여 경찰허가(질서허가)의 일종이며 형성적 행위인 공기업의 특허와 구별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업허가에 의한 효과는 “법규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라고 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수허가자(受許可者)의 지위가 단순한 금지의 해제에 의한 자유의 회복에 그치는가 아니면 자유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법적 지위의 설정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허가의 효과를 반사적 이익으로 볼 것인지, 권리 내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볼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허가는 이념적으로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으나, 실정법과의 관련에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허가는 단순히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자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내지

4) 법령상으로는 허가·면허·인가·특허·승인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바, 해당 행위가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의 구체적 규정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8, 282쪽.

5) 최영규, 영업규제의 법제와 그 수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46쪽 이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것⁶⁾이 다수의 입장이라 할 것이다. 또한 영업허가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업’의 정의에 관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정의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는데,⁷⁾ 우리나라 행정법학에서는 영업에 관한 정의를 별도로 내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법학에서 사용되는 영업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법학에서 사용하는 영업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법학에서 사용되는 영업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법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이라는 용어를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의미의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일정 행위의 전체”를 말한다. 상법상 “영업을 한다”(제5조, 제6조, 제46조)든지 “영업부류에 속하는 계약”(제53조, 제61조 등)이라고 하는 경우의 영업을 이에 속한다. 객관적 의미의 영업 또는 영업재산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각종의 재산 및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을 말한다. 상법상 “회사영업을 양수한 자의 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제20조)나 “영업을 양도”(제41조)라고 하는 경우 있어서 영업을 이에 속한다.

행정사건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영업의 개념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로 영업양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영업을 “유기적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⁸⁾으로 보고 있고, 이를 “영업을 구성

6) 김동희, 앞의 책, 282쪽.

7) 독일에서도 영업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영업법」(Gewerbeordnung)과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는 일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이고 계속적인 모든 허용된 활동으로서, 1차산업이나 자기 재산의 관리활동 또는 예술·저작활동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개인적 직무제공을 제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H. Sieg/W. Leifermann/P. Tettinger, Gewerbeordnung, 5. Aufl., 1998, S. 17 ff.; R. Stober, Wirtschaftsverwaltungsrecht, 6. Aufl., 1989, S. 175; G. Püttner,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989, S. 33; BVerwG, GewA 76, 293 (294).

8) 대판 2010. 9. 30, 2010다35138.

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⁹⁾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한편, 독일에서도 영업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이해의 승인된 요소를 근거로 현재의 필요에 따라 현대화되는(갱신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¹⁾ 즉 독일 「영업법」(Gewerbeordnung)은 영업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판례나 학설을 통해서 그 내용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불확정법개념으로 남겨두고 있다.¹²⁾ 그 결과 헌법적 자유의 보장을 정향하고 현재의 필요에 부합하는 개념내용의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독일연방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영업법」에서 말하는 영업은 모든 사회적으로 무가치하지 아니한,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계속성을 갖는 자발적인 활동(Tätigkeit)으로서, 일차생산, 자유로운 학문적 활동, 고도의 예술성을 가진 예술적 및 작가적 활동 및 고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인적 서비스와 같은 자유직업 및 자기 재산의 단순한 관리 및 이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¹³⁾

따라서 영업의 개념은 적극적인 개념징표¹⁴⁾도 소극적인 개념징표¹⁵⁾도 갖는데, 문헌에서는 빈번하게 전자를 ‘상업성’(Gewerbsmäßigkeit)으로,

9) 대법원 2009. 9. 14, 2009마1136 결정; 대판 1997. 11. 25, 97다35085.

10) 다만, 우리 판례는 노동사건과 관련하여 영업을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보고 있다. 대판 1991. 8. 9, 91다15225.

11) P. J. Tettinger/R. Wank/J. Ennuschat, GewO, 8. Aufl., München 2011, Einleitung, Rn. 1, S. 76.

12) P. J. Tettinger/R. Wank/J. Ennuschat, a.a.O., §1, Rn. 1, S. 128.

13) BVerwG NJW 2008, 1974, DÖV 1995, 644; OVG Nds. GewArch 2008, 34 (35); Kahl, in: R. Landmann/G. Rohmer Gewerbeordnung, Loseblatt-Komm., Bd. I, 2010, § 1 Rn. 3.

14) 영업개념의 적극적 징표로는 지속성, 이윤추구의도, 독립성 및 활동의 허용가능성(Erlaubtsein)을 들고 있다. P. J. Tettinger/R. Wank/J. Ennuschat, a.a.O., §1, Rn. 1, S. 130.

15) 영업개념의 소극적 징표로는 일차생산, 자유직업적 활동 및 자기 재산의 단순 관리 및 이용을 들고 있다. P. J. Tettinger/R. Wank/J. Ennuschat, a.a.O., §1, Rn. 1, S. 130.

후자를 ‘영업능력’(Gewerbsfähigkeit)으로 표현하고 있다.¹⁶⁾

그리고 승계(承繼)라는 개념에는 일정한 공법적 관계가 관계자의 사망, 대상의 소멸 및 그 밖의 사정변경에 의해서 다른 법 주체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영업승계는 “일정한 영업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각종의 재산 및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에 관한 법적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정 필요성

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영업의 인·허가를 받은 자가 해외이주·직업변경이나 그 밖의 개인적 사정으로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설비나 시설을 인수한 경우 영업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허가를 일단 취소하고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계속성이 단절되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영업양도를 통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의 보장 저해, 자유로운 생산활동 규제 및 기업이익·창의력 저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유발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영업자 개인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¹⁷⁾

따라서 양수인 등으로 하여금 영업허가를 새로 받게 하기 보다는 영업허가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국민경

16) W. Frotscher/U. Kramer, Wirtschaftsverfassungs- und Wirtschaftsverwaltungsrecht, 5. Aufl., München 2008, Rn. 251.

17) 김승열, 앞의 글 참조.

제활동의 계속성을 보장하도록 하므로 영업의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⁸⁾

제 2 절 영업허가 효과의 승계(이전) 가능성, 승계 사유, 승계 효과 및 영업승계 신고와 수리의 효과

1. 승계 가능성

영업허가 효과의 승계(이전)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학설의 대립

1) 긍정설

① 허가의 재산권적 성질에 기초하여 그 승계를 긍정하는 견해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영업허가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은 공법상 권리가 아닌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그 허가를 받은 지위는 양도될 수 없으나, 현실생활서 영업허가권은 그 자체로서 막대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법이론이 이러한 사회현상을 전적으로 도외시할 수많은 없으므로 그 양도를 특별히 금지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성·양도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¹⁹⁾

18) 김승열, 앞의 논문 참조.

19) 권오근, 허가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민사판례연구(XI), 박영사, 1989, 553쪽 참조.

② 허가의 성질에 따라 승계를 긍정하는 견해

통설은 영업허가를 그 성격에 따라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의 세 종류로 구분하고, 영업허가의 효과가 승계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영업허가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견해로, 통설적 입장이다.²⁰⁾ 이 견해는 일신전속성을 기준으로 하여 허가의 이전성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분리가능성 여부에 따라 승계를 긍정하는 견해

이 견해는 분리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허가권의 이전 가능성을 긍정하는 견해로서,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은 그것이 권리자나 의무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아울러 공법상의 권리·의무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인에게 구속되어 있는가의 문제는 법규의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²¹⁾ 이 견해에 따르면 일신전속성을 갖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권리자나 의무자 개인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승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나, 과연 어떤 경우에 분리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2) 부정설

허가는 금지된 자연적 자유의 회복일 따름이고 결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며, 권리가 아닌 단순한 반사적 이익을 이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법이론에 반하기 때문에 이를 이전할 수 없다

20)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85, 304-305쪽; 김동희, 앞의 책, 252쪽;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11, 228쪽;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2, 170쪽 등 참조.

21) 장태주, 행정법상의 권리·의무승계, 현대행정법학이론 : 우재이명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 제2권, 고시연구소, 1996, 122쪽.

는 견해이다. 나아가 이 견해는 대물적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요건이 변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동일한 허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행정관청에 있으므로 그 물적 시설의 양수인은 당연히 동일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에서 허가의 양도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은 대물적 허가의 효과(이전·양도성)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관청이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구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²²⁾

3) 소 결

과거에는 허가를 단순히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로 보아 왔으나, 오늘날 허가는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권리·이익의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형성적 행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긍정설은 허가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주장된 이론인 반면, 부정설은 허가의 권리성 자체를 부정하는 전제 하에서 주장된 이론이라 할 것이다. 오늘날 허가와 특허의 구별이 상대화되고 공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비추어 허가의 권리성을 전제로, 허가의 성질에 따라 승계를 긍정하는 견해가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영업허가의 성질에 따른 승계 가능성

1)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허가의 의의 및 승계 가능성

① 대인적 허가

대인적 허가는 자동차 운전면허·건축사면허·의사면허 등과 같이 사람의 경력·학식·기능·건강이나 그 밖의 개인적 사정 등 허가신청인의 개인적·주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허가로서 법상 허

22) 윤세창·이호승, 행정법(상), 박영사, 1993, 219쪽 이하 참조.

가나 자격요건에 인적 결격사유만 규정되어 있고 물적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허가를 말하고, 이는 영업허가라기보다 일정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허가이다.²³⁾ 대인적 허가의 효과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음이 원칙이며, 따라서 별도로 양도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를 양도할 수 없고, 대인적 허가에서는 상대방의 사망이 실효의 원인이 된다.

② 대물적 허가

대물적 허가는 건축허가·음식점 영업허가·건축물의 준공검사·물건의 품질인정 등과 같이 허가신청인이 갖추고 있는 물적 설비, 지리적 여건 등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허가로서 허가를 위한 심사대상이 물건에 있는 허가를 말한다. 대물적 허가의 효과는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음이 원칙인데, 법령에서는 확인적 의미로 승계규정을 두고 있다. 즉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효과 역시 건물의 양수인에게 양도되는 것이다. 또한 대물적 허가는 심사의 대상인 물적 기초가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실효되거나 철회의 사유가 된다.

앞서 설명한 대인적 허가와 대물적 허가는 허가의 이전성 여부와 관련하여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데, 즉 대인적 허가는 그 허가의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반면, 대물적 허가는 양수인이 당연히 양도인에 대한 허가의 효과를 그대로 이전받는다.²⁴⁾

③ 혼합적 허가

혼합적 허가는 유흥음식점 허가·부동산중개업 등록·전당포영업 허가·석유사업 허가 등과 같이 허가신청인의 자격·기능 등의 인적

23) 김승열, 앞의 글 참조.

24) 서울행정법원 2000. 11. 10. 선고 200구16639 판결.

사항과 물적 설비 등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허가를 말한다. 즉 혼합적 허가는 보통 허가대상의 물적 기준과 아울러 허가신청인의 인적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²⁵⁾ 그 효과는 물적 시설의 양도·양수나 상속에 의하여 허가의 효과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승인이 있어야 이전될 수 있음이 원칙이다. 특히 혼합적 허가의 경우에는 인적 요소의 변경에 관해서는 새로운 허가를 요하고 물적 요소의 변경에 관해서는 신고를 요하는 등의 제한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²⁶⁾

2)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허가의 구분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허가를 구분하는 이론적·실무적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법상 허가나 자격요건에 인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고 물적 기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허가는 대인적 허가라고 보고, 법상 허가요건에 물적 설비 등 객관적 기준만 정하고 있고 인적 요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 허가를 대물적 허가라고 보며, 법상 허가요건이 물적 설비 등의 객관적 기준과 인적 요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일정한 물적 시설기준을 갖추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허가는 혼합적 허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결격사유의 인적 요건 해당성 여부

한편, 대부분의 영업허가에 관한 법령에서는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허가의 법적 성격을 결정할 때 이를 인적 요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특히 어떤 영업허가가 대물적 허가인지 혼합적 허가인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5)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01, 227쪽 참조.

26)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228쪽 참조.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 효과의 승계 여부에 관한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석유사업법」상 그 법적 성격을 대물적 허가로 보아 영업승계를 인정하였으나(대판 1986. 7. 22, 86누203),²⁷⁾ 이와는 달리 다수의 학설은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 결격사유와 물적 시설기준 요건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법적 성격을 혼합적 허가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²⁸⁾

생각건대, 법상 결격사유에 관한 요건은 누구든지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를 제한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이를 대인적 허가에서의 허가요건인 사람의 경력, 학식, 자격 등과 같은 특별한 요건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고, 인적 결격사유는 대부분의 영업허가에서 정형화된 요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²⁹⁾ 단지 인적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 해당 허가의 법적 성격을 곧바로 혼합적 허가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실무에서도 총포 등 제조·판매업허가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물적 요소 외에 결격사유와 같이 인적 요소도 심사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혼합적 허가로 볼 수는 있으나, 그 주관적·인적 요건이 일정한 재능이나 경력 등이 아닌 단순히 결격사유에 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물적 허가에 가까운 것으로 본 바 있다³⁰⁾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7)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유무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오히려 이 사안의 원심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 제4조에서 석유판매업의 허가에 인적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허가의 심사대상이 행위주체인 특정인의 주관적 사정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대인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측면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는 물적 시설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석유판매업허가는 혼합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대물적 허가사항의 효과는 물적 사정에 변경이 없는 한 이전성이 인정되나, 대인적 허가사항의 효과는 일신 전속적인 것으로서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이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광주고등법원 1986. 2. 6. 선고 85구91 판결 참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190 판결.

28) 홍준형, 앞의 책, 228쪽;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4, 909쪽 이하 참조.

29) 배지숙,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단상, 월간법제, 2003. 2, 89쪽 참조.

30) 배지숙, 앞의 글, 89쪽 참조.

결과적으로 법령에서 물적 기준 외에 인적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의 비중이나 인적 결격사유의 규정 내용 등 개개의 영업허가의 구체적 성격을 따져서 그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승계 사유

현행법상 영업승계의 사유로 영업양도, 법인합병, 상속,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른 영업설비·시설의 전부(또는 일부)의 인수를 들 수 있다.

(1) 영업양도

영업승계의 사유로서 영업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영업양도의 요건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실정법은 아무런 정의를 하고 있지 않고, 그 기준도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뉘고 있다.

1) 학 설

행정법학에서는 영업양도의 개념이나 요건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아니한데, 상법학에서는 영업양도의 개념을 이해할 때 양도의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즉 주관적 의미의 영업(인적 요소)에 비중을 두는가, 객관적 의미의 영업(물적 요소)에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영업재산양도설, 지위교체설, 절충설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① 영업재산양도설

영업재산양도설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영업재산)을 영업의 본체라고 보고, 영업양도는 이러한 영업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라고 한다.³¹⁾

31)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03, 213쪽;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7, 161쪽;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4, 181쪽.

② 지위교체설

지위교체설은 영업은 영업재산·영업활동 및 사실관계로 구성되나, 이 중에서 상인의 영업활동이 영업에 불가결한 요소로서 영업의 본체라고 보고, 영업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자의 지위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업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 상법학계에서 순수하게 이 학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는 없다.

③ 절충설

절충설은 영업재산양도설과 지위교체설을 절충한 견해로, 영업재산과 상인의 영업활동 모두를 영업의 본체라고 보고, 영업양도는 경영자인 지위의 인계와 영업재산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라고 한다.³²⁾

④ 소 결

지위교체설과 절충설은 영업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을 영업양도로 보고 있으나, 영업자의 지위의 이전은 영업재산 이전의 효과에 불과하고, 지위라는 것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영업재산양도설이 우리 상법학계의 통설로 지지를 받고 있다.

2) 판례의 입장

우리 대법원은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营业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

32) 서돈각·정완용, 상법강의(상), 법문사, 1999, 129쪽.

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³³⁾이라고 판시하여 영업양도는 본질적으로 기능적 재산(영업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보는 영업재산양도 설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³⁴⁾

(2) 합병

합병이란 2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됨으로써 해산회사의 재산과 사원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로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상의 회사 중 하나가 존속하고 나머지는 해산하여 이에 흡수되는 흡수합병과 2 이상의 회사가 모두 해산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으로 나뉜다. 어느 경우이든 해산회사의 사원과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포괄승계된다.

33) 대판 2005. 7. 22, 2005다602; 대판 1998. 4. 14, 96다8826; 대판 1997. 11. 26, 97다35085 등 참조.

34) 이와는 달리 대법원 판례는 노동법상 영업양도가 문제된 경우에는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대판 2005. 6. 24, 2005다8200; 대판 2005. 6. 9, 2002다70822; 대판 2005. 2. 25, 2004다34790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영업양도를 물적 조직의 이전 외에 인적 조직의 이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노동법상의 영업양도의 개념을 파악함에 있어서 인적 조직의 이전(근로관계의 승계), 즉 인적 요소를 영업양도 개념의 구성요소로 포섭할 것인가를 두고 양자의 경우를 구분하는 차별적 내지 이분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임재호, 영업양도의 개념과 판단기준, 법학연구 제48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8, 171~172쪽 참조.

합병은 경제적으로는 경쟁의 회피, 비용의 절약, 시장의 독점, 영업의 합리화, 도산 직전의 회사 구제, 국제경쟁력의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법률적으로는 해산하는 회사의 청산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재산 처분·정신비용, 조세부담 등의 비용부담을 덜고, 고객 등 영업권 상실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⁵⁾

(3) 상속

상속은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법률상의 지위를 일신전속된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타

법률에 따라서는 영업양도·합병·상속 외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또는 일부)가 이전된 경우에도 영업의 승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업허가의 성질이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영업시설·설비의 전부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시설·설비의 효용성을 그대로 인정하여 인수자가 그 시설을 활용한 종전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³⁶⁾

영업의 양도·합병과 같이 계약에 의하여 영업시설 등이 이전되는 것과는 달리,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영업시설·설비 등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자는 그 후에도 여전히 영업허가의 효과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법적 다툼의 소재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법에서는 종

35) 김승열, 앞의 논문 참조.

36) 김승열, 앞의 논문 참조.

전의 영업자에 대한 허가 등의 그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을 함께 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⁷⁾

3. 승계 효과(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

다수의 법령에서는 상속·합병·영업의 양수 등이 발생한 경우 양수인 등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또는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자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된다. 종전 영업자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해당 영업허가에 관한 영업자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외에 사법상의 권리·의무, 조세납부의무, 고용, 법령위반사유 및 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첫째, 승계는 법적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파생적·유래적으로 취득하게 됨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공법상의 의무뿐 아니라 허가권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에 대해서까지도 그 승계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³⁸⁾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승계 규정의 존재의미가 거의 상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³⁹⁾

둘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영업자의 모든 공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⁴⁰⁾ 이에 대해서는 공법상의 권리의 이전은 하나의 수익적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

37) 이경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와 행정절차 -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혼합적 허가인가? -,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6, 379쪽 참조.

38) 김종권, 공의무, 특히 철거의무 및 이행강제금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23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88쪽.

39) 이영무, 영업양도에 따른 허가권의 이전과 제재사유 또는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법조 제597호, 법조협회, 2006. 6, 107쪽.

40) 임병수, 영업양도 등에 따른 허가 등 효과의 승계에 관한 기준 연구, 법제연구총서 제5집, 법제처, 291쪽.

문에 굳이 이를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공법상의 의무의 이전은 부담적 행위이고, 아울러 이러한 공법상의 의무는 체납된 조세의 납부의무, 무허가건물의 철거의무, 과거에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인하여 향후 가중된 제재처분을 수인할 의무, 각종 보고의무, 과징금 납부의무,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제재처분을 이행할 의무 등과 같이 그 태양이 극히 다양한데, 공법상의 의무의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무시한 채 추상적 규정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⁴¹⁾

생각건대, 공법상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전부 부인하는 것은 현행 법상 승계 규정의 존재의미를 상실시키는 문제가 있고, 영업자의 지위 승계시 공법상의 권리의 이전은 수익적 행위로서 그 이전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공법상 의무의 이전은 부담적인 행위이므로 승계되는 공법상 의무의 종류, 승계의 요건 등을 특정하는 그 밖의 개별적·구체적 법적 근거 없이 막연히 추상적 규정만으로 다양한 공법상의 의무의 획일적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아울러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⁴²⁾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권리·의무, 조세납부의무, 고용의 경우에는 각기 다른 법령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 보고, 영업양도 등에 따른 승계규정은 해당 영업활동을 규율하는 법령상의 권리·의무관계만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⁴³⁾⁴⁴⁾ 이 때에도 대체가능한 것

41) 이영무, 앞의 논문, 107-108쪽.

42) 이영무, 앞의 논문, 108쪽.

43) 이경운, 앞의 논문, 378쪽 참조.

44) 우리 대법원 판례도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3항이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양수인이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양도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양수인을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자로 본다는 것일 뿐이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 양도인의 매출액이 양수인의 매출액으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도중에 카지노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양수인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 대판

(물적·재산적인 것)이면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대체가능하지 아니한 것(인적·비재산적인 것)은 승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⁴⁵⁾

한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이는 모든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공법상의 원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법상의 채무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이전은 공법상의 규율과는 상관없이 상속·합병·영업양도에 대한 사법상의 규율로부터 자체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⁴⁶⁾

우리 대법원 판례도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는 동법의 제정목적, 규정 내용을 감안하여 볼 때 양수인이 양도인인 공사업자의 동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지, 양도인의 일반사법상의 모든 권리의무까지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은 아니다”⁴⁷⁾라고 판시한 바 있다.

4. 영업승계 신고와 수리의 효과

(1) 신고의 의의와 종류⁴⁸⁾

1) 의 의

행정법상 신고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행위”⁴⁹⁾ “사인의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사

1999. 6. 8, 98두1727.

45) 홍정선, 앞의 책, 171쪽 참조.

46) 이영무, 앞의 논문, 109쪽.

47) 대판 1989. 9. 12, 88다카28327.

48) 이하의 내용은 강현철·이세정,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10. 31, 31쪽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49) 홍정선, 앞의 책 187쪽.

실·관념의 통지로서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⁵⁰⁾ “행정청에 대하여 보통 문서로써 행하는 요식적·명시적 통지”,⁵¹⁾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⁵²⁾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신고의 통상적인 법적 효과는 신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신고대상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인신고와 같이 사법상의 혼인의 효력이 창설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⁵³⁾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신고는 사실로서의 신고일 뿐이다.⁵⁴⁾

그런데 실정법상 신고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며, 그 유형에 따라 법적 규율이 다르므로 이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에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요구되며, 수리거부에 대해서 취소소송이 인정되거나 또는 신고의 효과로서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실정법의 현실은 행정규제의 완화책으로서 종래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면서도 제도의 실질은 변화하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50) 천병태·김명길,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5, 101쪽.

51) 김중권, 행정법상의 신고의 법도그마적 위상에 관한 소고, 고시연구, 2002. 2, 26쪽.

52) 대판 1999. 12. 24, 98다57419·57426.

53) 김명길, 신고의 법리,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2, 470쪽.

54)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 사실을 신고하여 관할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판 2000. 12. 22, 993455; “재단법인인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낚골탑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시설들은 신고한 낚골탑을 실제로 설치·관리함에 있어 마련해야 하는 시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사항이 낚골탑 설치신고의 신고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종교단체가 낚골탑 설치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데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고를 이를 일괄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려처분 중 위와 같은 시설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05. 2. 25, 2004두4031.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의 신고제는 형식은 신고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완화된 허가제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2) 종 류

①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전형적인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 단순신고)란,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예 : 테니스장업 신고)를 말한다. 본래적 의미에서의 신고는 신고가 상대방(행정기관)에 제출되어 도달된 때 관계법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사인의 신고행위 그 자체만으로 금지가 해제된다),⁵⁵⁾ 이는 자체완성적인 행위인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신고도 그 효과와 관련하여 법적 효과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신고(예 : 혼인신고)도 있고, 경찰상 금지의 해제원인으로서의 신고(예 : 각종 영업신고)도 있다. 또한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의무적 신고(예 : 출생신고)와 임의적 신고(예 : 혼인신고)로 구분될 수 있다.⁵⁶⁾

「행정절차법」 제40조 제1항은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전형적인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관

55) 홍정선, 앞의 책, 329쪽.

56) 홍정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리재검토, 김동희 편, 행정작용법(중범 김동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5, 150쪽.

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40조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즉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도 수리·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예컨대,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4항·제5항)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대로 개별법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완료되는 행위라면 「행정절차법」의 규율대상인 신고에 해당한다.⁵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수리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의 수리는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로서의 수리를 의미한다. 즉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수리만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밖의 수리는 다만 사실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⁸⁾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예 : 혼인이라는 법적 관계의 발생 또는 경찰상 금지의 해제를 통한 기본권(영업의 자유)의 회복]을 가져온다. 신고에 의하여 법이 정한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고에 대한 심사·처리는 불필요하며, 설사 행정청이 신고에 대한 심사·처리를 했더라도 그것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건축법상의 신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신고의 효과는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심사·처리 등 별단의 조치가 불필요하다.⁵⁹⁾ 자체완성적 행위의 내용에 흠이

57) 대판 1996. 7. 12. 95주11665; 대판 2000. 4. 11, 98두5682.

58)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253쪽.

59)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08, 139쪽.

있는 경우에 그 흠의 효과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개별 행정법령의 해석이 문제된다.

②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행정법상 신고에는 이상과 같은 전형적인 신고(자기완결적 신고) 이외에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변형적인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란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예 : 수산업법 제44조의 어업신고)를 말한다.⁶⁰⁾ 즉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수리는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사인이 알린 일정한 사실을 행정청이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수리는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서 수령하는 인식의 표시행위인 점에서 단순한 문서의 도달이나 접수와 다르다.⁶¹⁾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자체완성적 신고와 다르다.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금지가 해제된다.⁶²⁾

60) 어업의 신고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면서 그 기산점을 ‘수리한 날’로 규정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취지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한 행정청의 조치에 위반한 경우에 어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 교부한 어업신고필증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설사 관할관청이 어업신고를 수리하면서 공유수면매립 구역을 조업구역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외된 구역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수리가 없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그 구역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소정의 적법한 어업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판 2000. 5. 26, 99다37382.

61)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253쪽.

62) 홍정선, 앞의 책, 329쪽.

대체로 신고가 인·허가나 등록에서의 신청과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⁶³⁾ 판례는 수산업법 제44조의 어업신고,⁶⁴⁾ 구 건축법 제14조의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⁶⁵⁾ 등을 이와 같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다.

③ 양자의 구별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그 법적 효과, 신고수리의 의미 및 수리거부에 대한 쟁송가능성 등에 있어 그 내용을 달리하는 바, 신고의 효과, 신고에 대한 신고필증의 의미, 신고수리의 의미, 신고수리 거부처분의 성질 등에서 구별 실익이 있다.

그런데 개별법령상 나타나고 있는 신고가 과연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개별법령이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법령의 목적과 당해 법령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련 조문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⁶⁶⁾ 다만,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규제의 정도가 완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 질서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 행위 내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에 침해하는 것이 아닌 행위 등이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할 것이다.⁶⁷⁾

일설은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구별기준으로 “원칙상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만인 경우에는

63)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139쪽.

64) 대판 2000. 5. 26, 99다37382.

65) 대판 2007. 6. 1, 2005두17201.

66) 홍정신, 앞의 책, 149쪽; 김명길, 앞의 논문, 474쪽.

67) 김명길, 앞의 논문, 474쪽.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 요건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실질적 요건을 신고요건의 한 부분으로 한다고 하여도 입법자가 이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규정할 수도 있는바, 양자의 구별은 신고요건의 성질이 아니라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⁶⁸⁾

생각건대, 물론 신고제와 허가제가 가지는 법적 의미의 차이에서 본다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허가제의 경우와 달리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입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적으로 신고는 사인의 적법한 신고만 있으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신고라고 할 수 없고, 등록 또는 허가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⁶⁹⁾

특히 행정규제 완화책의 일환으로 종래의 허가제를 대폭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신고제와 허가제의 차이에 따른 제도의 정비 없이 형식만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실질은 허가제를 그대로 유지한 결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는 실질적인 허가제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다수 포함되는 점에서도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실질적 허가와의 구별은 용이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⁷⁰⁾

따라서 적어도 허가제의 실질을 가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는 실질적 요건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⁷¹⁾

68) 홍정선, 앞의 책, 150쪽.

69) 조성규, 신고의 법적 성질과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 고시연구 2005. 1, 243쪽.

70) 조성규, 앞의 논문, 243쪽.

71) 조성규, 앞의 논문, 243쪽.

④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의 대다수 문헌은 신고를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누며, 판례 역시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대법원 2000. 5. 26, 99다37382 판결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존재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이고, 대법원 2002. 4. 12, 2001두9288 판결은 ‘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라는 사건 이름이 시사하듯 그와 같은 맥락에 선다. 이 외에도 대법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지위승계신고(대판 1993. 6. 8, 91누11544),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건축물양수인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대판 1992. 3. 31, 91누4911),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른 어업신고(대판 2000. 5. 26, 99다37382)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다.⁷²⁾

이와는 달리 판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골프장이용료변경신고(대판 1993. 7. 6, 93마635),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대판 1999. 4. 27, 97누6780) 등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고 있다.

(2) 영업승계 신고의 수리

개별법령에서 당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면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단지 신고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신고의 성격이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는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및 그 수리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면서 “구 식품위생법(2002. 1. 26. 법률 제 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72) 대판 1995. 2. 24, 94누9146; 대판 1993. 6. 8, 91누11544.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판시하여 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격을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 해석하지 않고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 해석하고 있다.⁷³⁾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찬성하는 견해는 만약 이 경우 양수인의 신고를 자체완성적 신고로 본다면 허가요건을 구비할 수 없는 자도 양수인이 될 수 있게 되어 허가제를 회피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⁷⁴⁾

또한 판례는 “구 식품위생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행정청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성격을 “신규허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 보고, 구체적으로는 ‘양도인의 영업허가취소’와 ‘양수인의 권리설정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위승계신고 수리를 양수인에 대한 실질적인 허가처분으로 보고 있다.⁷⁵⁾

73) 대판 2003. 2. 14, 2001두7015.

74) 홍정선, 앞의 논문, 148쪽 이하.

75) 2001. 2. 9, 2000도2050; “구 식품위생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데,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정청

판례처럼 수리가 있어야만 권리변동이 있다고 보는 이론의 실익은 승계의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과 사전절차를 강제하여 양도인 등을 보호한다는 점 및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질적 허가요건에 대한 사전적 심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⁷⁶⁾

그러나 영업승계신고에 대한 수리가 있어야만 영업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판례의 입장은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구 식품위생법 제 25조 제2항)라고 규정한 명문의 규정에 어긋난 해석이라 할 것이다.⁷⁷⁾

또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대물적인 성격이 강한 혼합적 허가라고 이해한다면 신고에 의해서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판례는 이러한 허가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3조와 그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의 서식(별지 제33호서식)을 보면, 지위승계신고의 경우에는 당초 영업허가나 신고의 경우와는 달리 그 처리기간을 ‘즉시’로 하고 있다. 또한 영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기타의 이유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지위승계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는 위 사실 등의 진위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이 신고서와 첨부서류가 요건에 맞으면 당연히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⁷⁸⁾

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대판 2003. 2. 14, 2001두7015).

76) 이경운, 앞의 논문, 389쪽.

77) 이경운, 앞의 논문, 390쪽 참조.

78) 이경운, 앞의 논문, 390쪽 참조.

결과적으로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지위 승계의 효과는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양도행위 또는 법률에서 정한 사실의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신고는 승계사실을 일방적으로 행정청에 통지하는 의미의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수리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⁷⁹⁾

제 3 절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의 의의 및 종류

(1) 개념

제재적 행정처분 또는 행정제재처분⁸⁰⁾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Sanktion)⁸¹⁾로서의 처분을 말한다. 즉 제재적 행정처분이란 상대방이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한다.

79) 이경운, 앞의 논문, 390쪽 참조.

80) 실정법상으로는 제재적 행정처분이라는 용어보다는 행정제재처분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81) 제재란 본래 형법상의 개념으로서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위법한 행위에 대응하는 법효과를 의미하지만, 제재가 반드시 형법에 국한된 개념은 아니고 비형법적 성격의 제재들도 있는바, 특히 독일 법률용어사전들에서는 질서위반법상의 과태료(Geldbüß)나 공무원법이나 군인법 영역에서의 공법상의 징계처분, 영업법상의 영업금지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등을 행정법상 제재의 예로 들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행정제재의 개념 정의에 관해서는 다양한 학설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Conseil d'Etat(국사원 또는 국참사원이라고도 한다)가 발간한 한 연구보고서에서는 행정제재의 징표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제재란 “행정청이 공권력이라는 특권의 틀 안에서 내린 일방적 결정”으로서 “법률과 명령에 대한 위반을 벌하는 것”이라고 한다. Conseil d'Etat, section du rapport et des études, Les pouvoirs de l'administration dans le domaine des sanction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aris, 1995, pp. 35-36; 이현수, 앞의 논문, 165쪽 각주 53번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이 행정법규를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에 발할 수 있는데, 행정법규의 위반 또는 불이행은 행정제재처분을 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될 뿐이며, 행정법규위반이 곧 행정제재처분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즉 행정법규위반은 상대방의 행위 또는 상태이고 행정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인바, 순서상 먼저 행정법규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이 행해질 수 있으므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행정법규위반과 별도로 존재하게 된다.⁸²⁾

2) 종류

제재적 행정처분은 그 성질에 따라 일신전속적 제재처분과 비전속적 제재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특정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해당 특정인에게 과하여지는 제재처분을 말하고, 당해 특정인만이 제재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성질의 처분이다. 이에 반하여 비전속적 제재처분은 특정한 물적 설비에 부과된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위반된 경우에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제재처분이다. 일신전속적 제재처분은 특정인만이 해당 제재처분의 의미를 이행할 수 있어 그 제재처분의 이전이 성질상 곤란하다. 그러나 비전속적 제재처분은 특정한 시설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시설의 책임자가 변경되면 여전히 당초 책임자에게 제재처분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책임자와는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 제재처분이 행해지게 된다.⁸³⁾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그 효과와 성질에 따라 대인적 제재적 행정처분·대물적 제재적 행정처분·혼합적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과는 법령 위반자에게 작위·부작

82) 김향기,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토지공법연구 제33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11 163쪽.

83) 김향기, 앞의 논문, 164쪽.

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보통이며, 그 의무의 성질은 대인적 의무인 경우도 있고 대물적 의무 또는 혼합적 의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인적 제재적 행정처분은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나 대물적 제재적 행정처분은 특정한 시설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보통 비전속적 성질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⁸⁴⁾

그 밖에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제재의 내용에 따라 재산적 제재와 비재산적 제재로 나눌 수 있다. 재산적 제재로는 건설중단, 철거명령, 대상물 파괴, 몰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가산세 등이 있다. 비재산적 제재로는 자유침해의 제재와 권리·이익의 제한·박탈의 제재 및 심리적 제재로 나눌 수 있다. 권리·이익의 박탈·제한으로는 면허취소·정지, 영업소폐쇄조치 등이 있고, 심리적 제재로는 징계처분인 경고·견책 등이 있다.⁸⁵⁾

2. 제재적 행정처분효과 승계의 필요성

현행법상 영업의 양도 등으로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에게 존재하는 제재사유 또는 과거에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졌던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과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개별법상 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일 허가의 양수인이 허가와 관련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수차례의 법규위반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당할 지위에 있는 자가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있기 직전에 그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행정청은 양도인이나 양수인 누구에게도 위반행위에 대한

84) 김향기, 앞의 논문, 164쪽.

85) 김향기, 앞의 논문, 164쪽.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여 응분의 제재처분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행정법상 여러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무력화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또한 그 결과로 같은 행정법규 위반자라 할지라도 법규를 잘 아는 악의의 사업자는 재빨리 영업을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해버림으로써 제재적 행정처분을 면하는 반면, 그렇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자는 응분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⁸⁶⁾

3. 제재적 행정처분효과 승계 가능성

(1) 문제의 제기

행정상 의무위반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게 된 피승계인이 자신의 영업허가권(공법상의 지위)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도 함께 이전되는지가 한편으로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목적 실현 내지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승계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는 승계인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된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문제는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아직 제재적 행정처분이 행해지지 않은 단계(이 단계에서는 피승계인의 추상적 의무위반 및 추상적 책임만이 존재한다)에서 그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종료된 해당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과도 승계받게 되는가의 문제를 포함한다.

여기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 문제는 공법상 지위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검토될 수 있는 문제다. 즉 공법상 지위의 승계가

86) 유상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고시계, 1998. 4, 90-91쪽; 이영무, 앞의 논문, 113쪽.

가능하여 종전의 공법상 지위가 새로운 공법상 지위로 이전된 경우 종전 공법상 지위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공법상 지위에 승계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영업허가권이 양도·양수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피승계인이 저지른 행정상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인에게 물리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자기책임의 원칙⁸⁷⁾상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양수인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것인데 양도인의 행위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행정책임을 지우는 것은 양수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 등에서 문제될 수 있다.⁸⁸⁾

그러나 어떤 허가영업의 승계(이전)가 가능한가 여부와 법률위반이라는 제재적 행정처분사유의 승계(이전)가 가능한가는 일단 구분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허가영업이 대물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이전(양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의 법률위반과 같은 귀책사유가 허가의 이전과 함께 당연히 이전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⁸⁹⁾ 왜냐하면 개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87)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기책임의 원리는 민, 형사를 막론한 모든 법적 책임의 기본원리이고 더 나아가 문명사회에서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는 기본원리의 하나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책임의 원리는 명문의 규정 유무를 떠나서 당연히 헌법상의 기본원칙이 될 뿐만 아니라 문명을 징표하는 헌법 이전의 선형적 가치기준이 되는 것이다”(2002.8.29.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2헌가3·7·9·12, 2000헌바34, 병합)라고 판시하여 민·형사책임뿐 아니라 행정책임의 경우에도 자기책임의 원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형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는 기본적으로 행위자의 의사결정과 책임의 범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행위책임과 무관한 제재는 ‘책임원칙’에 반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006.4.27. 2003헌바79).

88) 김향기, 앞의 논문, 162-163쪽 참조.

89) 김춘환, 공중위생영업의 양도양수와 귀책사유의 승계여부, 법학논총 제9권,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46쪽.

(2) 학설의 대립

1) 승계부정설

양도인의 법령위반 등의 귀책 사유 중에는 일신전속적 또는 대인적 성격을 지니는 것도 있으므로 영업양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위법사유로 인한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저촉된다고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과는 승계될 수 없다고 한다.

2) 승계긍정설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양도인이 법령위반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제재적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업의 양도·양수가 자행될 우려가 있어 제재적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그 승계를 부인하는 경우 법령위반을 야기시킨 시설 등의 양수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절차경제에 반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승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관계 법률에 승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법(私法) 영역에서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등을 유추적용하여 승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행정허가 관련 법률에서 지위승계 규정을 제재적 행정처분 승계의 근거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⁹⁰⁾

90) 이만아, 행정 제재사유 및 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8, 26-27쪽 참조.

3) 제한적 승계긍정설

일신전속적 또는 대인적 위법사유로 인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승계되지 않고, 비전속적 위법사유로 인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승계를 인정하되,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그 효과의 승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양수인의 악의 여부는 행정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범위를 위법사유가 대물적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자기책임의 원칙에 충실한 견해라 할 수 있다.

(3)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는 허가의 성질이 대인적인 것인지 대물적인 것인지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승계가능성을 부정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제재처분도 대물적 성질을 갖고 있어 일신전속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적 처분사유도 승계된다⁹¹⁾고 판시하거나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질이 대인적인 것인지 대물적인 것인지를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일신전속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적 처분사유도 승계된다⁹²⁾고 판

91) “석유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석유판매업의 적극적 등록요건과 제9조 제4항, 제5조가 규정하는 소극적 결격사유 및 제9조 제4항, 제7조가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양도, 사망, 합병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단순히 석유판매시설만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또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승계에는 종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대판 2003. 10. 23, 2003두8005) 같은 취지를 나타내고 있는 대판 2001. 6. 29, 2001두1611; 대판 1998. 6. 26, 96누18960; 대판 1995. 2. 25, 94누9146 등도 참조.

92) “구 산림법(2001. 5. 24. 법률 제6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1항, 제12

시한 바 있다. 다만, 승계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참작되어야 한다고 하여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⁹³⁾도 있다.

(4) 소 결

제재적 행정처분의 법적 성질을 기준으로 일신전속적 또는 대인적 성격을 지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승계를 인정해서는 아니 되고, 비전속적 또는 물적 성격을 지니는 제재적 행정처분효과는 그 승계를 인정하되,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귀책사유의 이전 및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⁹⁴⁾

이와는 달리 허가의 법적 성질을 기준으로 대물적 허가의 경우에는 제재적 행정처분도 모두 대물적 성질을 갖는다고 보고 승계를 인정하

항이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형질 변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복구 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로서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법 제4조가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 등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림의 보호·육성을 통하여 국토의 보전 등을 도모하려는 법의 목적을 감안하여 법에 의한 처분 등으로 인한 권리와 아울러 그 의무까지 승계시키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그 상속인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5. 8. 19, 2003두9817, 9824)

93)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1회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원고가 지병인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몸이 아파 쉬면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일시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 또 전날 과음한 탓으로 쉬면서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2회 적발되었는데, 원고는 그의 개인택시영업에 의한 수입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대판 1991. 11. 8, 91누4973)

94) 김춘환, 앞의 논문, 46쪽 참조.

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허가처분과 제재처분은 별개의 행정 처분이고, 물적 요소 이외에 인적 요소도 심사 대상으로 하는 혼합적 허가 경우에는 제재처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원래의 허가처분과 관련하여 발해진 제재적 행정 처분의 법적 성질이 대인적인가 대물적인가를 구분해서 대물적인 경우에는 승계가능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⁹⁵⁾

또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법행위와 그로 인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시키는 것은 양수인의 신뢰와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깨뜨리게 되고, 제재규범(Sanktionsnormen)과 관련한 의무의 대부분이 전형적인 일신전속적인 의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일신전속적인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수단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⁹⁶⁾는 점에서 이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법행위와 그로 인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을 양수하여 결과적으로 양도인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면탈에 조력한 경우에는 양수인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밖에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없이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상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한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것이 요구된다.⁹⁷⁾

95) 이민아, 앞의 논문, 28쪽 참조.

96) 이현수, 앞의 논문, 165쪽; 이영무, 앞의 논문, 118쪽 참조.

97) 김향기, 앞의 논문, 176쪽.

4. 제재적 행정처분효과 승계 요건

(1) 문제의 제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질에 따라 승계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별법상 침익적 행정행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영역에 침익적 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허용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법치국가의 근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하는 의무의 생성에 관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⁹⁸⁾ 승계요건(Nachfolgetatbestand) 또는 승계사유(Nachfolgegrund)를 규정한 승계규범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1) 법적 근거 필요설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책임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책임승계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⁹⁹⁾ 우리나라 및 독일의 다수설¹⁰⁰⁾이다.

98) 이현수, 영업양도와 제재처분상의 지위승계, 행정판례연구 X, 박영사, 2005, 155쪽.

99) 이현수, 앞의 논문, 154쪽 이하.

100) 독일의 다수설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를 위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책임승계에 관한 법적 근거, 즉 승계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법률유보의 요청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즉 다소 엄격한 입장에서는 침익적 지위의 승계는 승계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O. Rumpf, Die Rechtsnachfolge im Öffentlichen Recht, VerwArch 78(1987), 283; F.-J., Peine, Die Rechtsnachfolge in Öffentliche Recht

이 견해는 다시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 경찰법상 명시적인 승계 규정이 없으나, 사법의 경우 민법상의 상속, 회사법상의 합병에서 포괄승계 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상 규정된 포괄권리승계에서의 의무에는 공법상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고, 따라서 책임도 승계되는 것인바, 포괄권리승계규정은 사법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법과 공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원칙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¹⁰¹⁾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특정승계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현실화된 상태책임이 물적인 성격과 동시에 특정한 개인에 대한 명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민법의 재산인수 규정(민법 제453조, 제454조)을 유추적용하지 않는 한¹⁰²⁾ 개별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한다.

2) 법적 근거 불요설

상태책임과 그에 근거한 처분은 공법상의 물적 부담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소유자는 이러한 물적 부담을 가진 소유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물권적 획득의 결과 포괄승계 또는 특정승계를 불문하고 책임을 승계한다고 한다. 독일의 소수설이다.

und Pflichten - OVG Münster, NVwZ-RR 1997, 70, JuS 1997, 947), 보다 완화된 입장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공법상의 승계요건들을 유추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법률유보의 요청이 충족될 수 있다고 하거나(V. Hassel, VR 1987, 43), 법률유보의 요청이 공법뿐 아니라 민법상의 승계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충족될 수 있다(K. Finkelnburg/K.-M., Ortloff, Öffentliches Baurecht, Bd. II, München 1998, S 189)고 보기도 한다. 이현수, 앞의 논문, 155-156쪽.

101) J. Dietlein, Nachfolge im Öffentlichen Recht: staat - und verwaltungsrechtlichen Grundfragen, SöR Bd. 791, 1999, 152-153; 이현수, 앞의 논문, 154-155쪽; 이민아, 앞의 논문 40-41쪽 참조.

102) 이민아, 앞의 논문, 41쪽.

(3)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과거 다수의 판결에서 제재처분사유 및 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개별법적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별다른 논거 없이¹⁰³⁾ 또는 지위승계 규정을 근거¹⁰⁴⁾로 제재사유의 승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제재사유의 승계요건으로 수권 근거를 요하지 않는 입장인지, 아니면 법적 근거를 요하되, 그 근거를 지위승계 규정에서 찾는 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4) 소 결

침익적 행정행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책임승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허가처분과 제재적 행정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지위승계 규정을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103) “구 공중위생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 5항에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II. 개별기준 3. 이용업에서 업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3차 또는 4차 위반시(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는 1차 위반시)에는 영업장폐쇄명령을 하고, 그보다 위반횟수가 적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을 하게 되며, 일정한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폐쇄명령을, 이용사(업주)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영업정지나 영업장폐쇄명령 모두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할 이치이고, … 만일 어떠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1. 6. 29, 2001두1611)

104)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2010. 4. 8, 2009두17018) 대판 2010. 11. 11, 2009두14935도 참조.

제 3 장 현행법상 영업승계제도 현황 분석

제 1 절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승계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감리전문회사 영업양도·법인합병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신고 기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데,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감리전문회사 법인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사전신고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3조 제2항 제6호). 회사의 영업승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에 의한 승계는 당연히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리실적이 감리전문회사의 중요한 영업내용임을 반영한 것이다.

2. 건설업 승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서는 ‘건설업의 양도 등’이라는 조명(條名) 하에 제1항에서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와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한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법 제96조 제2호).

일반적인 입법례에서의 영업양도 규정의 경우와 달리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서는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에게 30일 이상 공고의무를 지우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건설업 양도 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 양도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에서는 ‘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이라는 조명 하에서 제1항에서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같은 법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골재채취업 승계

「골재채취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골재채취업의 영업양도·법인합병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골재채취업자 사망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골재채취업 지위승계인에 관하여는 골재채취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한편, 「골재채취법」 제45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공인중개사무소 재개설등록시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상 공인중개업 등록은 그 법적 성격상 대인적 허가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전(승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당연히 허가권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서는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를 염두에 두고 중개업자가 폐업신고한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궤도사업 승계

「궤도운송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궤도사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궤도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궤도운송사업법」에서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신고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재수단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는 그 기준으로 ①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제15조에 따른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할 것(다만,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② 도로·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궤도사업자 허가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의 영업허가에 정형화된 요건으로서 누구든지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를 제한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궤도사업법」상 궤도사업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직접적으로 영업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4조에서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은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자에게도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사

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의무가 변경된 사업자에게도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승인관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 승인 승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서는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8.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창고업 승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영업양도·법인합병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대한 결격사유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영업승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67조 제2항 제1호).

한편, 같은 법 제21조의7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은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국제물류주선업 승계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영업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방식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과 같다. 즉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물류정책기본법 제73조 제1항 제2호).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지위승계인에 관하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0. 부동산개발업 승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한다)제1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개발업¹⁰⁵⁾ 영업양도·법인합

105) 부동산개발이란 강학상으로는 인간에게 생활, 일, 쇼핑, 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량(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조성)하는 활동 또는 기존의 건물을 리노베이션하여 임대하는 것에서부터 개량하여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사업인 동시에 포괄적인 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07. 4), 「부동산개발업법」상 부동산개발이란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②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

병(등록사업자인 법인이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상속의 경우에 대한 준용규정을 두면서 상속인이 같은 법 제6조 각 호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부동산개발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에 앞서 양도신고 30일 전까지 ①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 양도예정 연월일, ③ 양도하려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④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를 2 이상의 일간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명령이 발해지고(법 제22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0조 제3항 제2호).

또한 「부동산개발업법」 제13조에서는 일반적인 입법례와는 달리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에 관련된 부동산등, 인·허가, 건설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 등에 관한 권리·의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일반적인 입법례와는 달리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을 말하고,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참조).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할 수 없다(다만, 부동산개발업법 제11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부동산개발업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같은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폐업신고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에게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요청,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부동산개발업자가 폐업신고 후 언제든지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하되, 폐업신고 전에 받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과가 계속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정청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신고를 통해 제재적 행정처분을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것으로 부동산개발을 통한 부동산의 공급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승계되는 행정처분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11.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영업승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영업승계절차로서 사전신고제도를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영업양도·법인합병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상속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계의 경우에는 신고를 통하여 그 승계사실을 관할 행정청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영업승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 기간 동안¹⁰⁶⁾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106)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면허를 받은 자가 ①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③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④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참조).

중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참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는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을 포함한다.¹⁰⁷⁾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양도나 상속을 통해서 영업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2009년 5월 27일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시 고유가와 경기침체, 승용차의 보편화에 따라 택시승객이 급감하여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공급 과잉으로 택시운송사업 및 그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신규로 면허를 받는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도록 한 입법조치에서 기인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즉 강학상 특허로서의 성격을 갖고(대판 2007. 2. 8, 2006두13886; 대판 2007. 3. 15, 2006두15738; 대판 1996. 10. 11, 96누6172), 특허 효과의 승계(또는 이전) 문제는 일반원칙(일신전속적인가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인데,¹⁰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에 모두 착안하여 발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혼합적 성격을 갖고, 이에 따라 법령에서 그 효과의 이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107) 대판 1994. 8. 23, 94누4882.

108)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244쪽.

규정을 두는 경우에 승계가 가능할 것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입법정책인 측면에서 그 효과의 이전(승계)을 제한하고 있다.

13. 자동차관리사업 승계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영업양도·법인합병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영업양도·법인합병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계의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통하여 그 승계사실을 관할 행정청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14. 휴양펜션업 승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 제5항에서는 휴양펜션업 영업양도·경매 등에 따른 휴양펜션업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휴양펜션업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는 양수 또는 인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62조 제6항 제5호).

15.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정화업 승계

「지하수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의 영업양도·법인합병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속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영업양도·법인합병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양도·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속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0조 제6호).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2 제3항에서는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철도사업·전용철도 운영권 승계

(1) 철도사업 승계

「철도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철도사업자가 그 철도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및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철도사업 영업양도·법인합병 인가에 관한 철도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전용철도 운영권 승계

「철도사업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전용철도의 운영(권)¹⁰⁹⁾ 양도·법인합병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상속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권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6조 제4항 및 제37조 제4항에서는 전용철도 운영권 양도·법인합병·상속에 관한 전용철도운영자 결격사유의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전용철도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109)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는 피상속인의 전용철도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보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서 제출서류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수의 입법례에서는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신고인과 선순위 또는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우리나라 입법례에서는 선순위 또는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제출이 드물지만, 일본 입법례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법령에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전원의 동의에 따라 당해 영업을 승계할 상속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입법례

【식품위생법】 제53조 ① 전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영업자”라 한다)에 대해서 상속, 합병 또는 분할(당해 영업을 승계받은 것에 한한다)이 있는 때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전원의 동의에 따라 당해 영업을 승계할 상속인을 선정한 때에는 그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따라 해당 영업을 승계한 법인은 허가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뜻을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관업법】 제3조의2 ① 전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아 여관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인 법인의 합병의 경우(영업자인 법인과 영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여 영업자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분할의 경우(당해 여관업을 승계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당해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해서 도도부현지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따라 당해 여관업을 승계한 법인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생략)

일본 입법례

- 제 3 조의3** ①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전원의 동의에 따라 당해 여관업을 승계할 상속인을 선정한 때에는 그 자. 이하 같다)이 피상속인이 영위한 여관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도도부현지사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상속인이 전항의 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그 승인을 받은 날 또는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피상속인에 대해서 한 제3조제1항의 허가는 그 상속인에 대한 것으로 본다.
- ③ 제3조제2항(신청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승인에 대해서 준용한다.
- ④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관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밖에 앞서 설명한 철도사업 양도·양수 등에 따른 사업승계의 경우와는 달리 「철도사업법」은 전용철도 운영권 승계의 경우는 상속에 따른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신고제도로 운용하고 있다.

17. 철도용품 인증품 생산업 승계

「철도안전법」(법률 제11193, 2012. 1. 17. 일부개정·시행) 제29조 제1항에서는 철도용품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¹¹⁰⁾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품질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81조 제1항 제6호).

110) 「철도안전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의 경우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상속인의 경우에 종전의 인증품 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8. 측량업·수로사업 승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서는 측량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111조 제1항 제9호)

그리고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는 측량업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54조 제6항).

한편,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단서에서는 측량업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등록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9. 국내항공운송업·국제항공운송업 등 승계

「항공법」 제124조 제1항에서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5조에서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히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의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①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② 사업계획서상의 운항계획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③ 해당 사업에

사용할 항공기의 대수(臺數), 항공기당 좌석 수 및 자본금 등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양수인이 같은 법 제114조 각 호(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양도인이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양도인이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양수가 제한된다(항공법 제124조 제2항).

이와는 달리 「항공법」은 상속으로 인한 영업승계의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항공법」 제126조 제1항에서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한 1명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294조 제3호 참조), 피승계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피승계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항공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사업을 합병하거나 또는 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처분이 발령될 수 있다(법 제129조 제1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 영업승계에 관하여는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132조 제3항, 제134조 제3항, 제142조 제1항, 제142조 제2항 참조).

20.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승계

「항로표지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의 시설·설비의 전부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항로표지법 제44조 제1항 제5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승계에 준용된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항로표지법」 제14조에서는 그 등록기준으로 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인원과 그 시설자본금 등을 들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법적 성격은 혼합적 허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1. 예선업 승계

「항만법」 제36조에서는 예선업¹¹¹⁾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선업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예선업 승계에 준용된다(법 제33조 제3항).

22. 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승계

「항만운송사업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항만운송사업¹¹²⁾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111) 「항만법」상 예선업은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曳船業務)”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제32조제1항).

112) 「항공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시설·장비 전부의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4에서는 항만운송관련사업¹¹³⁾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3.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 승계

「해사안전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 영업양도·법인합병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이 발령될 수 있으며(법 제23조 제1항 제6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110조 제3항 제4호).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해상교통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4. 해양심층수개발업·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먹는 해양심층수수입업 승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심층수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서는 해양심층수개발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제2조 제2항)으로서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제3조).

113) 「항공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으로 구분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시설·설비의 전부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양심층수개발업을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해양심층수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해양심층수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의 영업승계에 관한 사항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같은 호 단서 나목에서는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5. 해양환경관리업 승계

「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해양환경관리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시설·설비의 전부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방식은 「해양심층수법」상 해양심층수개발업 영업승계의 경우와 유사하다.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 제2항 제8호).

26. 해양여객운송사업 승계

개정 「해운법」(법률 제11480호, 2012.6.1 개정, 2012.12.2 시행) 제17조 제1항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 등의 절차에 따라 해상운송사업의 시설과 설비의 전부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승계에 준용되는데, 개정 「해운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그 대표자를 변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 「해운법」 제17조에서는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는 것만 규정하고 승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두고 있지 않았는데, 개정 「해운법」에서 승계신고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특히 결격사유가 있는 영업양도·법인합병에 따른 승계인의 경우 승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여객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그 대표자를 변경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한편, 현행 「해운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운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해운법」은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기간만 90일 이내로 수정함) 영업승계신고 절차의 법제화에 맞추어 제19조 제1항 제9호를 추가하여 영업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적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27. 화물자동차운송업 승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양도, 법인합병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영업승계에 관한 입법례와는 달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1년 6월 15일자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신설되어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 시장은 시·도별 화물운송사업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신규허가에 대한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으나, 시·도간 양도·양수가 자유로운 현행 체제 하에서는 시·도별 수급균형이 깨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에 지역 간 수급균형이 무너지는 경우 물류유통 구조에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무분별한 양도·양수 및 합병을 제한하는 제도를 둬으로써, 화물운송사업자의 수를 지역 간에 적정하게 배치하여 원활한 물류수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¹¹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는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즉 강학상 특허로서의 성격을 갖고(대판 2007. 2. 8, 2006두13886; 대판 2007. 3. 15,

114)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1. 4, 8쪽 참조.

2006두15738; 대판 1996. 10. 11, 96누6172), 특히 효과의 승계(또는 이전) 문제는 일반원칙(일신전속적인가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인데,¹¹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에 모두 착안하여 발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혼합적 성격을 갖고, 이에 따라 법령에서 그 효과의 이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 승계가 가능할 것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입법정책인 측면에서 그 효과의 이전(승계)을 제한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승계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70조 제2항 제8호).

제 2 절 지식 · 경제 관련 법제 분야

1. 고압가스 제조허가업 등 승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제조허가업,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업, 고압가스 수입업, 고압가스 운반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3조 제4항 제1호).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고압가스 제조허가업·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업·도시가스 공급시설업 승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0조의13 제1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115)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244쪽.

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고압가스 제조·저장 및 판매 시설이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인수한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조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등¹¹⁶⁾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승계절차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3. 도시가스사업·천연가스수출입업 승계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도시가스사업 영업양도·법인 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전부의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제2항 제1호).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의2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되,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

116)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등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포함된다.

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 제3항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천연가스수출입업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산업표준화 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산업표준화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산업표준화 인증기관[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함)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의 영업양도·법인합병·사망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4조 제1항 제2호).

5.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 승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석유정제업자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의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서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를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속으로 승계받은 자 외에 선의의 석유정제업자의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은 석유 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에도 준용된다(법 제9조 제4항 전단, 제10조 제5항 전단, 제32조 제4항 전단, 제33조 제3항 전단 참조).

6. 석탄가공업 승계

「석탄산업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석탄가공업¹¹⁷⁾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전부의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석탄산업법 제20조 제3항),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하며(법 제40조),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5조 제3항 제1호).

7. 액화석유가스업 등 승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2호).

117) 「석탄산업법」상 석탄가공업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고, 석탄가공제품은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연탄, 기타 가공탄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업 허가·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나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8. 엔지니어링사업 승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에는 수수료를 내야 하며(법 제45조 제2호),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승계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9. 특정물질 제조업 승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특정물질 제조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2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상속인의 경우 법상 제조업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지위를 양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0. 대규모점포등개설자·우수체인사업·공동집배 센터사업 승계

(1) 대규모점포등 승계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등¹¹⁸⁾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에서는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같은 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118)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에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포함되는데, 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는 ①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②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 준대규모점포는 ①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 우수체인사업 승계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중소유통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로서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은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3)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에 따른 승계

「유통산업발전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공동집배송신탁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지위 승계 절차를 갈음하고 있다.

11. 전기공사업 승계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전기공사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기공사업 지위승계절차는 신고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합병의 경우에는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①’ 및 ‘②’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같은 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일부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지정공사업자단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참조). 영업승계신고를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고(법 제35조 제4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3조 제3호).

전기공사업 지위승계인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7조 제3항).

특히 전기공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전기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하여야 하고,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해야 하는 제한이 뒤따른다(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전기공사업법」 제28조에서는 전기공사업 등록 취소(영업정지)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전기공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같은 법 제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간은 등록 취소(영업정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12. 전기사업 승계

「전기사업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①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②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③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④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영업양도·법인합병에 따라 영업을 승계하려면 사전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전기사업자 지위승계인에 관하여는 전기사업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11조 제2항).

「전기사업법」 제12조에서는 전기사업 등록 취소(사업정지)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5호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를 전기사업 등록 취소(사업정지)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같은 법 제8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등록 취소(사업정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13. 전력기술물 설계업·감리업 승계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는 ① 전력기술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②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하고(법 제26조 제6호),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9조 제9호). 전력기술물 설계업·감리업 지위승계인에 관하여는 전력기술물 설계업·감리업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16조의2 제3항).

14.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승계

「전자거래기본법」(2012.6.1. 개정, 법률 제11461호 2012.9.2. 시행) 제31조의14 제1항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⁶⁷⁾가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와 합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6조 제2항 제11호). 이는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营业을 양도하거나 합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영업양도나 법인합병을 통하여 종전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6조 제2항 제12호).

15.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 승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양도하는 경우, ②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

67) 종전의 법률에서는 “법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나, 2012년 6월 1일자 개정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명칭을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바꿨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2. 5, 2쪽 참조.

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지정기준 적합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신고를 수리한 때에 종전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16. 집단에너지사업 승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⁶⁸⁾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의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결격사유는 승계인에게도 준용된다(법 제12조 제4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의 허가 취소·사업정지 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허가 취소·사업 정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68)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하고(법 제2조 제1호),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같은 조 제2호)으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17. 특정사업 승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1항에서는 특정사업⁶⁹⁾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특정사업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8. 1종화학물질의 제조업·생물작용제등 제조업 승계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는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 한다) 또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제조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인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0조 제1항 제1호).⁷⁰⁾

6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상 특정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사업자 중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정한 품목등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사업자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5조 참조).

70)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서는 과태료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제조허가취소·제조정지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동안,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3개월 동안은 제조허가취소·제조정지 사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제 3 절 보 건 · 복 지 관 련 법 제 분 야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수입업·판매업 승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제조·수입·판매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호).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그 승계의 경우에 준용되는데, 다만, 상속에 의한 지위승계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예외가 인정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는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1항 각호 또는 제33조 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제재처분의

있을 뿐 부과기준을 직접 정하거나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가 없는 것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수권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공중위생영업 승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⁷¹⁾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영업승계제도와는 달리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승계인에 대한 영업자의 결격사유의 준용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3조의2 제3항), 신고영업으로 운용되고 있는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 신고의 요건으로 물적 요소인 시설기준 뿐 아니라, 인적 요소(학력·능력)에 따라 부여받은 면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 신고의 명칭은 신고이지만, 그 법적 성격은 강화상 혼합적(완화된) 허가라 할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 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71)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기관 영업승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제85조 제3항에서 영업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4항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사전에 양도인 등에게 부과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산후조리업 승계

「모자보건법」 제15조의3 제1항에서는 산후조리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영업승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에서는 산후조리업 승계인에게 같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승계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승계인이 상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5. 사회복지법인합병에 따른 영업승계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⁷²⁾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합병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같은 조 제2항).

종전에는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이 가능했는데, 2011년 8월 4일자 개정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0997호, 2012.8.5. 시행)에서 원칙적으로 허가권을

7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고(법 제2조 제3호),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참조).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되,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여전히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권을 갖는 것으로 했다.

여기서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의미에서의 강화상의 허가라기보다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인 강화상 인가(認可)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 승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자⁷³⁾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에 준용되는데, 상속에 의한 지위승계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예외가 인정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7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사회서비스 제공자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제2조 제4호).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승계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승계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되, 새로운 제공자(상속으로 지위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7. 식품위생검사기관·식품제조업 등 영업승계

(1) 식품위생검사기관 영업승계

「식품위생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기관 운영자”라 한다)의 사망,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권 양도, 법인합병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으로 식품위생검사기관 영업 시설 전부 인수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3항 제1호).

(2) 식품제조업등 영업⁷⁴⁾승계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식품제조업등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74) 「식품위생법」상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제2조 제9호).

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식품제조업등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제조업등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승계에 준용되는데, 다만, 상속에 의한 지위승계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예외가 인정된다.

「식품위생법」 제78조에서는 식품제조업등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75조 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되,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8. 의약품등 제조업등 승계

「약사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의약품 판매업자(한약업사는 제외한다), 검사기관등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의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의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 허

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등에 대한 영업양도에 따른 해당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지위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승계에 준용된다. 다만, 상속에 의한 지위승계의 경우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89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조업자등과 수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되, 새로운 제조업자등(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과 수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9.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

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0. 응급환자이송업 승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에서는 응급환자이송업(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영업승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명령이 발령될 수 있으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62조 제1항 제5호).

11.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승계

「의료기기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승계인에게 「의료기기법」상 영업자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영업을 양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제48조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되, 새로운 제조업자등(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2.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자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통지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 화장품 제조업 · 판매업 승계

「화장품법」 제26조에서는 화장품의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 영업양도, 법인합병 · 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4 절 문화 · 체육 · 관광 관련 법제 분야

1. 게임제작업등 승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서는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일반게임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양도 · 법인합병 · 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폐업신고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 · 기구⁷⁵⁾의 전부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6호).

7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서는 모든 영업시설 · 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 영업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 영업승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는 ①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경우 영업소, 영업설비와 기구, ② 게임제공업의 경우 영업소, 게임물, ③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영업소, 게임물,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구를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같은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같은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관광사업 승계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관광사업 양도·양수, 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⁷⁶⁾의 전부

76)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모든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 영업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 영업승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은 ①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②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등록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③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지정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④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카지노업만 해당한다), 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참조).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등 취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시설·운영 개선이 명해질 수 있고(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3호), 특히 카지노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법 제83조 제2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관광사업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법 제7조)이 준용되고,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관광사업자 결격사유 규정(법 제7조) 및 카지노사업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법 제22조)이 준용된다(법 제8조 제6항).

「관광진흥법」 제8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79조 제5호에서는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3.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승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는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인수한 자의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7호).

4. 영화상영관 경영자 지위 승계·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시청제공업 승계

(1) 영화상영관 경영자 지위 승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서는 영화상영관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 지위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기구⁷⁷⁾의 전부인수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의 위반을 사유로

7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에서는 모든 영업시설·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 영업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 영업승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는 ① 비디오물제작업의 경우 제작시설 및 장비, ②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경우 비디오물의 시청기구와 기기를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참조).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시청제공업 승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서는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하는 경우의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기구⁷⁸⁾의 전부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영업양도 등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 제1항 각 호 또

7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에서는 모든 영업시설·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 영업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 영업승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는 ① 비디오물제작업의 경우 제작시설 및 장비, ②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경우 비디오물의 시청기구와 기기를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참조).

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서는 폐업신고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같은 법 제67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연습장업 승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연습장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해당 영업자의 시설·기구⁷⁹⁾의 전부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7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서는 모든 영업시설·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 영업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 영업승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는 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경우 음반·음악영상물 제작기기, ②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③ 노래

그리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같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같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되,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6. 정기간행물사업 승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는 정기간행물⁸⁰⁾사업 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 및 행정제재

연습장업의 경우 노래반주장치를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80)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① 잡지(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② 정보간행물(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③ 전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참조)에 등록·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3조 제2항 제3호).

7. 체육시설업 승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⁸¹⁾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⁸²⁾의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간행물(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④ 기타간행물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참조).

8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하고,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제2조 제1호 및 제2호),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으로 구분한다(법 제10조 제1항).

8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는 모든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 영업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영업승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은 편의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와 결부된 별표 4 참조).

제 5 절 농림 · 수산 · 식품 관련 법제 분야

1. 가축 또는 물건 관련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은 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가축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농수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 우수관리시설 ·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②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③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권리 ·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 ·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각각 지정을 받은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별도의 제재는 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3. 농수산물유통 도매시장법인 지위 승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합병의 승인을 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 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농약등 제조업·수출입식물방제업·품목등록 제조업·수입업·원재업·판매업 지위승계

「농약관리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자 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3항).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2항).

그리고 「농약관리법」 제5조의2에서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행한 같은 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제5조 및 제5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16조 제4항에서는 원제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제1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7조 제3항 제1호 마목에서는 수입업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제1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고(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0조 제2항 제1호).

5.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1항에서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설비⁸³⁾의 전부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8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서는 모든 영업시설·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 영업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 영업승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는 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경우 음반·음악영상물 제작기기, ②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③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노래반주장치를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1항에서는 관광농원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3항에서도 관광농원은 이들만이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4항).

「농어촌정비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9조 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가 계속 이어서 진행될 수 있다(법 제90조 제2항). 다만, 같은 법 제90조 제3항에서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87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양수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30조 제4항 제3호).

6.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동물보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7조 제1항 제5호).

7.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 승계

「동물보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동물장묘업자·동물판매업자·동물수입업자·동물생산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35조 제3항).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7조 제1항 제6호).

영업자의 등록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영업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 승계되며, 처

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는데,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8. 비료업 승계

「비료관리법」 제13조에서는 비료(생산·수입)업자의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료관리법」은 비료생산업은 등록제로, 비료수입업은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등록’,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완화된 의미에서의 허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비료생산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순수하게 물적인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고, 비료생산업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도 순수하게 물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영업등록 및 신고의 법적 성격은 대물적 허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법령에서 영업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승계가 가능하지만, 「비료관리법」에서는 확인적 의미에서 영업승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9. 사료제조업 승계

「사료관리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사료제조업자의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사료관리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사료관리법」 제9조 제4항에서는 “제25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수산동물 또는 물건 관련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은 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수산동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산동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1. 허가(한시허가)어업 승계

「수산업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1조(허가어업) 및 제42조(한시허가어업)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어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102조 제1항 제9호).

그리고 「수산업법」 제44조 제3항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되,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12.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승계

「식물방역법」 제40조의3 제1항에서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40조의3 제3항),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50조 제3항 제5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법 제40조의3 제2항).

13.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 ·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식품산업진흥법」 제29조(2013. 6. 2. 시행) 제1항에서는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 및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사업양도 · 법인합병 · 상속(우수식품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을 계속하여 생산 · 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및 제3항).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8조 제1항 제4호).

14. 양곡가공업 승계

「양곡관리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양곡가공업 영업양도 · 법인합병 · 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 · 설비의 전부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양곡관리법 제19조의2 제3항),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양곡관리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간 지위를 승계한 양곡가공업자에게 승계되고, 행정청은 그 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2항). 다만,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한다.

15. 어장정화·정비업 승계

「어장관리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어장정화·정비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어장정화·정비업 승계에는 결격사유에 관한 제18조의 규정이 준용된다(어장관리법 제18조 제4항).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3조 제1항 제3호).

16. 염제조업 승계

「염관리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염제조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7. 인삼류제조업 승계

「인삼산업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인삼류제조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판매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3조 제1항 제4호).

18.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승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제3항), 영업승계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며(법 제41조 제15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5조 제4항 제10호).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법 제22조 제3항 및 제24조 제3항)이 준용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제재적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19. 축산업·가축사육업 승계

개정 「축산법」(법률 제11359호, 2012.2.22, 일부개정, 2013.2.23. 시행) 제24조 제1항에서는 축산업·가축사육업⁸⁴⁾ 영업임대(가축사육업만 해당한다)/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축산업자·가축사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56조 제1항 제5호).

축산업·가축사육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법 제23조)이 준용된다. 「축산법」에서는 가축사육업 임대차의 경우에도 영업승계를 인정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20.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인증기관/농자재 공시등을 받은 자·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승계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7 제1항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및 인증기관의 사업양도·법인합병·상속(해당 인증품을 계속

84) 가축사육업은 2012년 2월 22일 「축산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업으로서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축산법 제2조 제8호). 개정 「축산법」은 가축사육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운영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제로 운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하여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위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인증을 한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및 제4항),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27조 제1항 제2호).

(2)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승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0조의10 제1항에서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및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사업양도·법인합병·상속(해당 농자재공시등제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농자재공시등을 한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에게,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및 제4항).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0조의10 제4항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승계의 경우와는 달리 종전의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내에서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6 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1.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자의 지위승계 · 가축분뇨 관련영업승계 · 처리시설설계 · 시공업 승계

(1)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자의 지위승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같은 법 제 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의 영업양도 · 법인합병 · 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가축분뇨관련영업 승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서는 가축분뇨의 수집 · 운반 · 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의 영업양도 · 법인합병 · 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관련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같은 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승계되지 아니하고(법 제29조 제1항 단서),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같은 법 제31조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2항).

(3)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승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서는 처리시설(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의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자의 지위 승계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함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유독물 영업/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승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유독물영업의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같은 법 제2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유독물영업 등록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63조 제1항 제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6항에서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나 제36조 각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법 제48조 본문).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단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는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볼 수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굳이 이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1호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4. 소음진동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

「소음·진동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소음진동배출시설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함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50조에서는 사업의 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되, 새로운 사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는 제외한다)가 그 사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행정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5. 수질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자/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징수대상 공장·사업장 양수자/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자의 지위승계 및 폐수처리업 승계

(1) 수질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함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징수대상 공장·사업장 양수자의 지위승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서는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자의 지위승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7항에서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폐수처리업 승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는 폐수처리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이 경우 폐수처리업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은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폐수처리업 영업시설의 전부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인수한 자가 폐수처리업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할 수 없다).

6. 사업장폐기물배출업/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

(1) 사업장폐기물배출업 승계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6항에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업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의 인수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이상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제39조의2 제2항).

(2) 폐기물처리업 승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폐기물배출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이 발해될 수 있다(법 제27조 제2항 제16호).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이상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법 제40조 제3항).

7. 분묘수집·운반업 승계

「하수도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분묘수집·운반업 영업양도·법인 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분묘수집·운반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승계되지 아니하고(같은 항 단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분묘수집·운반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8. 배출시설이나 불법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의 승계인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배출시설이나 불법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4 장 개선대상 사례 및 개선방안

제 1 절 국토 · 해양 관련 법제 분야

1.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화를 요하는 경우

(1)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폐업신고 전의 실적 승계

-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3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 9 조의8(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1조의2에 따른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한다.</p> <p>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 받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0조의3(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p> <p>① · ② (생 략)</p> <p>③ <u>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 전의 실적을 승계한다.</u></p>

2) 검토의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제3항에서는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같은 법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 전의 실적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폐업신고 후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폐업신고 후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실적을 승계하도록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으면 이를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p>제 9 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p>	<p>제 9 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선 안
<p>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⑦ 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폐업신고 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한다.</p>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p>제10조의3(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p> <p>①·② (생략)</p> <p>③ 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 전의 실적을 승계한다.</p>	<p>제10조의3(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p> <p>①·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2) 화물자동차 영업양도금지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등

1) 관련 법령 및 조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및 제23조 제5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p>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u>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u></p> <p>④ (생략)</p>	<p>제23조(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p> <p>①·② (생략)</p> <p>③ <u>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④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다만,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신설 2011.12.31></p> <p>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그 허가를 받은 날. 다만,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수탁차주에 대한 허가로 인하여 차량을 충당한 경우는 그 차량 충당의 변경신고일로 한다.</p>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p>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양도·양수신고일</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p> <p>1.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p> <p>2.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종합물류기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p> <p>3.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p> <p>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p> <p>나. 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p> <p>다. 60세 이상인 경우</p> <p>4. 그 밖에 화물운송실적, 화물운수 서비스,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p>

2) 검토의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양도금지 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양도금지 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에서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⁸⁵⁾ 영업양도 제한의 본질적·핵심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금지 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선안】

현 행	개선안
<p>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② (생략)</p> <p>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p>	<p>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②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p> <p>③ ----- -----</p>

85)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1. 4, 8쪽 참조.

현 행	개선안
<p>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p> <p><신 설></p> <p>④ (생 략)</p>	<p>-----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p> <p>-----</p> <p>-----</p> <p>-----.</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2.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종합물류기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 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60세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화물운송실적, 화물운수 서비스,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p>제23조(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할 수 있다.</p> <p>1.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p> <p>2.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종합물류기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p> <p>3.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p> <p>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p> <p>나. 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p> <p>다. 60세 이상인 경우</p> <p>4. 그 밖에 화물운송실적, 화물운수 서비스,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p>	<p>제23조(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p>

2.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1) 골재채취업 관련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대상 및 범위

1) 관련 법령 및 조문 : 「골재채취법」 제17조 제3항

골재채취법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2) 검토의견

- 「골재채취법」 제45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만으로는 승계인이 어느 범위에서 언제까지 종전의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의 효과가 그에게 미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면탈 등의 방지를 이유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인에게 미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선의의 승계인의 경우 그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골재채취업 승계인에게 미치는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나 기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골재채취법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p>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p>	<p>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골재채취업자에게 제○조 제○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2) 국내항공운송사업 · 국제항공운송사업 인가 신청 공고 및 그 비용

1) 관련 법령 및 조문 : 「항공법」 제1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2조 제2항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p>제124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양도·양수</p>	<p>제29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신청) ① (생략)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p>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p>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u>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u></p>	<p>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도·양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는 노선 및 사업범위 3. 양도·양수의 사유 4.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 및 양도·양수 예정일

2) 검토의견

- 「항공법」 제124조 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인가 신청을 받으면 이를 공고하고, 그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가를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인가 신청 단계에서 양도·양수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공고가 양도·양수인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공고의 비용을 양도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개선방안

- 반드시 인가 신청 단계에서 공고를 하여야 하는 정책적인 필요가 없다면, 인가 결정 이후에 공고를 하도록 하고, 공고를 통해서 양도인이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공고의 비용도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항공법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p>제124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① · ② (생 략)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p>	<p>제124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 ----- ----- . <후단 삭제></p>

【항공법 시행규칙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p>제29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신청) ① (생 략)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는 노선 및 사업범위 3. 양도·양수의 사유 4.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 및 양도·양수 예정일</p>	<p>제29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p>

3. 승계 관련 절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1) 상속에 따른 골재채취업 승계신고 절차 수권 근거

1) 관련 법령 및 조문 : 「골재채취법」 제17조 제3항

골재채취법
<p>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①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存續)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③ <u>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p>

2) 검토의견

- 「골재채취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시 신고자가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집행명령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그 수권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 또한 「골재채취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상속에 따른 신고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할 행정청이 상속에 따른 영업자 변동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하여 해당 영업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신고기간은 다소 장기(長期)인 측면이 있다. 이는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도 마찬가지이다.

3) 개선방안

- 골재채취업 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신고 절차 규정의 수권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신고기간을 골재채취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골재채취법 개선안】

현 행	개선안
<p>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①·② (생략)</p> <p>③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면 <u>상속일로부터 3개월</u>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일로부터 1개월(또는 2개월) ----- -----.</p> <p>④ (현행과 같음)</p>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영업승계 신고기간

1) 관련 법령 및 조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의무의 승계일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2) 검토의견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영업승계 신고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신고기간을 권리·의무의 승계일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기간은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데 충분한 기간으로 보기에 어렵고, 영업승계 기간을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짧은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신고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영업승계 신고기간을 해당 법령의 특색 및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하여 연장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일단 신고기간을 30일로 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p>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의무의 승계일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 ----- ----- ----- ----- ----- ----- ----- 30일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3) 국제물류주선업 영업승계 신고기간

1) 관련 법령 및 조문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p>제 8 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도·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속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2) 검토의견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승계 신고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신고기간을 권리·의무의 승계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기간은 (앞서 설명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영업승계 신고기간보다 길기는 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데 충분한 기간으로 보기에 어렵고, 영업승계기간을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짧은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신고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국제물류주선업 영업승계 신고기간을 해당 법령의 특색 및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하여 연장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일단 신고기간을 30일로 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제 8 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도·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	제 8 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 ----- ----- ----- -----

현 행	개 선 안
<p>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u>15일</u>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 ----- ----- ----- ----- ----- 30일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4) 상속에 따른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승계 신고 절차 규정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제4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제 9 조의8(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2에 따른 종전의 안전진단</p>	<p>제10조의2(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한다.</p> <p>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및 정밀안전진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9조의 8제1항에 따라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p>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양수인등”이라</p>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p>한다)이 영 제11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양수인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2) 검토의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서는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영업양도·합병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상속의 경우 영업양도·합병에 따른 승계규정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이 규정은 2011년 5월 19일자로 새로 시행된 것인데, 법률에서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에서는 상속에 따른 승계와 관련한 신고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하위법령에서는 상속에 따른 신고에 관한 절차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상속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승계하는 자가 어떠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3) 개선방안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상속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5) 휴양펜션업 영업승계 사유 등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p>제174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 ~ ④ (생략)</p> <p>⑤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등록·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휴양펜션업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는 양수 또는 인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⑥ ~ ⑨ (생략)</p>

2)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74조 제5항에서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시설·설비)을 인수한 자는 등록·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휴양펜션업 시설·설비의 인수는 여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절차에 따라 휴양펜션업 시설·설비를 인수한 경우에 종전의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또한 휴양펜션업의 경우 법인화 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영업승계를 인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정책적 필요성을 판단하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 휴양펜션업 시설·설비의 인수에 따라 휴양펜션업 승계가 가능한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p>제174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p> <p>⑤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등록·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휴양펜션업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는 양수 또는 인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⑥ ~ ⑨ (생 략)</p>	<p>제174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휴양펜션업자의 등록·사업 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 -----.</p> <p>⑥ ~ ⑨ (현행과 같음)</p>

(6)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 신고시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수권 근거

-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제27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하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u>따라 양도·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와 법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③ <u>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을 승계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p>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p>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p>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p>③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2.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검토의견

- 「지하수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지하수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특히 영업양도·법인합병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는 신고기간에 관한 사항만을 새로 정하고 있을 뿐,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등에 관하여 직접 정하거나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는 명확한 위임 근거 없이 영업양도·양수 신고 및 합병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부령 차원에서 시행규칙으로의 위임 근거를 명확하게 할 것이 요구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는 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시 제출 서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과 제3항의 조문의 형식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위임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는 상속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업 승계의 경우에 신고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장기로 관리·감독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간을 적절하게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영업양도·법인합병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시 제출 서류 등을 정할 수 있는 법령상 수권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상속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기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개선안
<p>제3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양도·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u>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③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승계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일부터 <u>3개월</u>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 ----- ----- ----- <u>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양수일</u>----- ----- <u>신고하</u> <u>여야</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60일</u> ----- -----.</p>

(7) 철도사업 인가 방법 및 절차 등 수권 근거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철도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p>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철도사업을 양수한 자는 철도사업을 양도한 자의 철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철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④ 제1항과 제2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p>	<p>제10조(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철도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도·양수 후 당해 운영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양수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p>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p>

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p>지 제12호서식의 합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가 신청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합병계약서 사본 5. 삭제 6.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2) 검토의견

- 「철도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철도사업자가 그 철도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및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가신청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하지도 않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철도사업양도·양수의 인가신청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려면 상위법령의 수권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인가신청 시점과 관련하여 「철도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로 규정하여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라고 규정하여 사후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법률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 이와는 달리 법인합병에 따른 사업인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사전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도 사전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규칙 규정만을 놓고 볼 때 영업양도에 따른 사업인가의 경우에는 사후인가를 받도록 하고, 법인합병에 따른 사업인가의 경우에는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승계 사유별로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도 있다.

3) 개선방안

- 법률의 규정 내용 및 법인합병에 따른 사업인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상의 영업양도에 따른 사후인가를 사전인가로 변경하도록 한다. 그것이 신고제도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인가제도로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p>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p>	<p>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는 노선 및 사업범위 3. 양도·양수의 사유 4.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 및 양도·양수 예정일</p>

2) 검토의견

- 「항공법」 제124조 제1항에서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인가신청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2조 제1항 및 제293조·제294조까지에서는 인가신청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양도인 등에게 서류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비록 인가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의무를 시행규칙 차원에서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항공법」에 인가신청에 따른 서류제출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수권 근거를 마련한다.

【항공법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p>제124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p>	<p>제124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① ----- -----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p> <p>②·③ (현행과 같음)</p>

(9) 예선업 승계 절차 규정

1) 관련 법령 및 조문 : 「항만법」 제36조

항만법
<p>제3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선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예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예선업자가 합병한 경우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p>제32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曳船業務)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하되, 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선은 자기소유예선[자기명의로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또는 자기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른 마력[이하 “예항력”(曳航力)이라 한다]과 척(隻) 수가 적합할 것

항만법

2. 예선추진기형은 전(全)방향추진기형일 것
 3. 예선에 소화설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 것
 4. 등록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船齡)이 12년 이하일 것.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선 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항만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1개의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
 2. 2개 이상의 항만이 인접한 경우

제33조(예선업의 등록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류(類) 또는 발전용 석탄의 화주(貨主)
 2. 「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3. 조선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 ② 관계법인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36조에 따라 예선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검토의견

- 「항만법」상 예선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물적 요건으로서 예선(시설)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예선업 등록 결격사유, 즉 ①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류(類) 또는 발전용 석탄의 화주(貨主), ② 「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③ 조선사업자,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이러한 결격사유는 일반적인 영업허가와 관련한 입법례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를 제한하는 의미에서의 소극적 의미의 결격사유라기보다는 대인적 허가에서의 허가요건인 사람의 경력, 학식, 자격 등과 같은 특별한 요건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의 결격사유를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인바, 「항만법」상 예선업 등록은 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혼합적 성격의 영업허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일정한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영업(또는 권리·의무)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승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승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행정실제에서는 예선업의 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양도·양수나 상속, 법인간 합병의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따라 변경등록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변경등록의무 부과 보다는 관리·감독의 원활화나 있을 수 있는 승계 상황을 대비하여 관련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항만법」에 예선업 영업승계신고방법·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항만법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p>제3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제3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예선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10) 해양심층수개발업 영업승계신고 기산점

- 1) 관련 법령 및 조문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및 제31조 제3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제20조(사업의 승계)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당해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당해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제31조(영업의 승계)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당해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④ (생략)</p> <p>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 5. (생략) 6. 제3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p>② ~ ⑤ (생략)</p>

2) 검토의견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서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개월 이내’를 언제부터 기산할 것인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

- 이 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영업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영업승계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3) 개선방안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신고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정한다.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개선안
<p>제20조(사업의 승계) ①·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20조(사업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1조(영업의 승계) ①·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p>	<p>제31조(영업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u></p>

현 행	개 선 안
<p>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p> <p>-----.</p> <p>④ (현행과 같음)</p>

(11) 해양환경관리업 영업승계신고 기산점

1) 관련 법령 및 조문 : 「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 제3항

해양환경관리법
<p>제74조(해양관리업의 승계 등) ① 해양환경관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관리업자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제132조(과태료)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 7. (생 략)</p> <p>8. ~ 12. (생 략)</p> <p>③·④ (생 략)</p>

2) 검토의견

- 「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 제3항에서는 해양관리업자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개월 이내’를 언제부터 기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
- 이 법 제132조 제2항 제8호에서는 영업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 제3항에 신고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정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p>제74조(해양관리업의 승계 등) ① · ② (생 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제74조(해양관리업의 승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 ----- -----.</p> <p>④ (현행과 같음)</p>

(12) 해양환경관리업 영업승계신고시 첨부서류

1) 관련 법령 및 조문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별지 서식 제4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p>제43조(해양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08.3.14>			(앞쪽)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업종:)			처리기간 1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	① 성명(법인명)		② 대표자
	③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법인소재지)		
양도인·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 법인	⑤ 성명(법인명)		⑥ 대표자
	⑦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⑧ 주소(법인소재지)		
⑨ 권리·의무 승계(합병) 일자			
⑩ 권리·의무 승계(합병) 사유			
<p>「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귀하</p>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구 비 서 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양도 ·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3.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폐기물배출업자로 한정합니다)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 ² (재활용품)]			

2) 검토의견

- 「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해양관리업 영업승계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는 별지 서식에 관한 사항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고인의 입장에서는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별지 서식을 찾아본 뒤에 알 수 있는 문제가 있다.

3) 개선방안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영업승계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각 승계사유별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별지 제43호 서식에서는 양도 · 양수 등 영업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 외에,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사항은 이미 등록이나 지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영업승계신고시에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신고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 해양환경관리법 개선안 】

현 행	개선안
<p>제43조(해양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각 호 신설></p> <p><삭 제></p>	<p>제43조(해양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①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합병의 경우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상속의 경우 : 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p>

4.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1) 건설업자 지위승계 신고의무 위반

1) 관련 법령 및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및 제96조 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p>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② ~ ④ (생략)</p> <p>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생략) 3.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이하 생략)

2) 검토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와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96조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6조)에 처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법문의 해석상 신고의무자는 양도인, 건설업자인 법인이라 할 것이나, 행정형벌 부과 대상은 양수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으로서 행위 의무자와 형벌부과의 상대방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바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 또한 행정형벌의 정도 역시 일반적인 지위승계신고 위반에 관한 입법례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고, 과태료 부과만으로도 「건설산업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개선방안

- 건설업 지위승계신고의무자와 형벌부과의 상대방을 일치시키고, 지위승계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대체하도록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p>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2. (생략)</p> <p>3.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p> <p>4. ~ 6. (생략)</p>	<p>제96조(벌칙)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삭제></p> <p>4. ~ 6.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제9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p>	<p>제96조(과태료)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선안
<p>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신 설></p> <p>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p>	<p>1.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p> <p>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p>

(2) 안전진단대행업자 영업승계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관련 법령 및 조문 : 「해사안전법」 제23조 제1항 제6호 및 제110조 제3항 제4호

해사안전법
<p>제21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을 승계한 자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p> <p>제23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6.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7. ~ 12. (생략)</p>

해사안전법
<p>② (생 략)</p> <p>제110조(과태료) ①·② (생 략)</p> <p>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1. ~ 3. (생 략)</p> <p>4. <u>제21조제2항(제5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p>

2) 검토의견

- 「해사안전법」 제23조 제1항 제6호(제54조 제1항 제6호도 마찬가지 지임)에 따르면 안전진단대행업 영업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상 안전진단대행업 허가는 물적 요건에 착안한 대물적 허가로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승계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영업을 승계할 수 있고, 여기서 신고는 행정청이 해당 영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 같은 법 제11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영업승계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으로 신고의무 이행을 담보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개선방안

- 「해사안전법」상 등록취소·영업정지처분 사유에서 안전진단대행업 영업승계신고의무 위반의 경우를 삭제한다.

【 해사안전법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p>제23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6.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7. ~ 12. (생략)</p> <p>② (생략)</p>	<p>제23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삭제></p> <p>6. ~ 1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5. 기 타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사망에 따른 영업승계

-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제한)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생략)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같은 법 제 14조 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상속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도록 한 취지라고 보인다.
- 그런데 같은 항 후문에서는 상속인 본인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즉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상속을 금지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3) 개선방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후문을 삭제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생략)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③ ----- ----- ----- ----- 있다.

현 행	개 선 안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 관련 법령 및 조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4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p>제14조(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1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은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자에게도 그 효력을 가진다.</p> <p>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 2. 버스 공동배차제의 실시 3. 교통산업 종사원의 근로환경 개선 4.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정류소 및 환승시설의 설치·운영 5.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6.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7. 교통시설의 확충(해당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교통시설에만 해당한다) 8.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의 이행(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교통시설의 관리청인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생략)</p> <p>③ <u>시장이나 군수는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u> 이 경우 명령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p>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 ④ (생략)

2) 검토의견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4조에서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은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자에게도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일종의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대상자인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매우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 기본적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의 사업자 개념이 매우 불명확한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대상자 역시 불명확하여 행정

실제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해당 조항의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거나 승계 대상자 및 승계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2 절 지식 · 경제 관련 법제 분야

1.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화를 요하는 경우

(1) 엔지니어링사업 승계인에 대한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시 선의의 양수인 등 보호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7 조(행정처분효과의 승계)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검토의견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승계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같은 조 제2항의 행정처분 절차의 계속 진행의 경우는 선의의 승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1항의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의 경우는 이를 두고 있지 아니한데, 제1항의 경우에도 선의의 승계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인바, 양자 모두에 선의의 승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둘 것이 요구된다.
- 그리고 같은 조 제1항의 경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발한 경우 영업양도·양수나 법인합병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할 것이 아니라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일정기간까지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이미 행해진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의 경우에도 선의의 승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할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까지로 수정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 7 조(행정처분효과의 승계)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단서 신설></p> <p>② (생략)</p>	<p>제 7 조(행정처분효과의 승계) ① ----- ----- ----- ----- 끝나는 날부터 1년 동안 ----- -----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p>

(2) 전기공사업 영업승계인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p>제31조(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 정보가 필요한 행정기관, 발주자,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관련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각 호 생략)</p> <p>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⑤·⑥ (생략)</p>	<p>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p> <p>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삭제 <2011.5.18> 3. 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4.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p>④ <u>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⑤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제6항에 따라 공시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다음 해의 공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 1건당 수급금액을 말한다.</p> <p>⑥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매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또는 양도가 있거나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p> <p>⑦ ~ ⑩ (생략)</p>

2) 검토의견

-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3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

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서는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 전기공사업자의 경우 영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식경제부장관이 평가한 시공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바,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도록 하거나 특정한 경우에는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보고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행규칙 차원에서 규정하기보다는 법률 차원에서 규정함으로써 승계인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여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고, 그 예외 역시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현행	개정안
④ ~ ⑥ (생략)	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⑨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 법 제 31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p> <p>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p> <p>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p> <p>2. 삭제 <2011.5.18></p> <p>3. 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p>	<p>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u>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u> <u>가 경영하는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u> <u>하는 경우</u></p> <p>4.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p> <p>④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 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 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을 합산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해당 공사 업을 승계한 양도·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 ⑩ (생략)</p>	<p><삭 제></p> <p>② ~ ⑦ (현행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와 같음)</p>

(3) 전력시설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영업승계시 양도인의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 결부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본문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등)</p> <p>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讓</p>	<p>제29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 수 신고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감리업)양 도·양수 신고서 또는 설계업(감리 업)법인합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p>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渡)·양수(讓受)하려는 경우</p> <p>2.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려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p>	<p>야 한다. (각 호 생략)</p> <p>③ <u>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양도신고만 해당한다)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u>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④·⑤ (생략)</p>

2) 검토의견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항에서는 전력시설물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항).
- 이 규정을 통하여 양도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는 영업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새로운 조건에 해당하고, 권리·의무의 승계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나뉠 수는 있을 것이나, 해당 영업에 관한 의무가 아닌 조세법상의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은 양수인에 대한 부담적 조치로서

적어도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에 한하여 그 승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더 나아가 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나 지방세에는 해당 영업과 관련된 것이 아닌 개인적 국세·지방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국세·지방세 완납과 영업양도·양수를 결부지우는 것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Koppelungsverbot)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양자를 결부지우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그 밖에 설계업·감리업 영업양도 신고의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을 영업양도·양수의 간접적인 조건으로 하고 있고,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또 다른 승계사유인 법인합병의 경우에는 그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달리 취급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도 있다.

2.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1) 특정물질 제조업 승계시 첨부 서류

-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 조(제조업의 허가) ① 특정물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지식경제	제 3 조(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하려는 수량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할 것 2. 특정물질의 제조·저장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p>③ (생략)</p> <p>제 5 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p>위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u>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 각 1부 3. 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u>사업계획서</u>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제조업허가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업허가증을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p>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p>	<p>제 2 조(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업 착수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4. 사업계획서 <p>② ~ ⑦ (생략)</p>

2) 검토의견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로, ①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③ 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사업계획서를 열거하고 있다.

- 특히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제조업 허가요건으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아니한바, 영업승계신고시 이들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 또한 영업허가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지위승계시 다시 제출하도록 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것과 새로이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고,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이미 허가관청에서 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승계인에게 중복제출의 부담만을 지울 뿐이라고 생각된다.

3) 개선방안

- 영업승계신고시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중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계획서를 제외하도록 한다.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선안 】

현행	개정안
제 3 조(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	제 3 조(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u>정관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 각 1부 3. 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u>사업계획서</u> ②·③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 정관 1부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2)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위 승계 신고시 제출 서류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의14(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양수 등)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와 합병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보관소 ⁸⁶⁾ 지정절차) ① 법 제3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제15조(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 ① (생략) ② 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86) 2012년 6월 1일자 개정 「전자거래기본법」(법률 제11461호 2010년 9월 2일 시행)에서 종전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명칭을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로 개칭하였는데, 2012년 6월 25일 현재 관련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아 시행령상의 명칭은 아직 공인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p>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종전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③ <u>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 2012.9.2.] 제31조의14</p> <p>제31조의5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p>	<p>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법인의 임원과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p> <p>2. 정 관</p> <p>3.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p> <p>4. <u>사업계획서(제15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u></p> <p>② ~ ⑤ (생략)</p>	<p>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영업 양수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수계약서 사본 1부 나. 양수한 법인의 정관 1부 다. <u>양수한 법인의 양수 후 사업계획서 1부</u></p> <p>2. 합병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u>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각 1부</u></p> <p>③·④ (생략)</p>

전자문서보관소로 사용되고 있다. 법률의 개정 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 지정요건이나 방법·절차 등에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하나(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자로 종전의 법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이 포함됨), 여기서는 일단 현행 시행령(2010.5.4.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5. 시행) 및 시행규칙(2010.5.6.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26호, 2010.5.6. 시행)을 기준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p>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시작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1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② ~ ④ (생략)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 2012.9.2.] 제31조의5		

2) 검토의견

-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영업 양수의 경우와 합병의 경우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고, 특히 영업 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한 법인의 양수 후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양수인에게 양수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지정을 새로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영업양도·양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 또한 같은 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는 합병의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제4호의 서류가 사업계획서인데, 이 규정만으로는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의미인지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합병에 따른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승계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할 경우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승계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합병에 따른 승계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고, 만일 법인

합병에 따른 승계의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면 이 역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정을 새로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법인합병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승계나 법인합병에 따른 승계의 경우 모두 사업계획서를 새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승계의 실익을 줄이거나 승계인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종전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보되, 만일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요건을 새로 추가하여(현행 전자거래기본법상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업무정지의 요건에는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영업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시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중 사업계획서를 제외하도록 한다.

【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15조(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p> <p>① (생략)</p> <p>② 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p>	<p>제15조(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p> <p>①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 양수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수계약서 사본 1부 나. 양수한 법인의 정관 1부 다. 양수한 법인의 양수 후 사업 계획서 1부 2. 합병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각 1부 ③·④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제3호 ----- ③·④ (현행과 같음)

3. 승계 관련 절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1) 석유정제업 영업승계 사유 보고제도

-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별표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 7 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	제 9 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석유정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p>한 경우 그 양수인</p> <p>2. 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p> <p>3. 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p> <p>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p> <p>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p> <p>제 5 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p>	<p>제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p> <p>가. 상압증류시설</p> <p>나. 감압증류시설</p> <p>다. 개질시설(改質施設)</p> <p>라. 탈황시설(脫黃施設)</p> <p>마. 분해시설</p> <p>2. 사업개시연도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사업개시연도 석유제품 생산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p> <p>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p> <p>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3.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p> <p>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p>	<p>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및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 소비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8과 같다.</p> <p>(이하 생략)</p>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p>록한 사항 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생략)</p> <p>③ <u>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 기준 등 등록 요건과 신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u>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u></p>	<p>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p> <p>③ ~ ⑤ (생략)</p>	

제 4 장 개선대상 사례 및 개선방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p>부·서류·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p> <p>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4. (생략)</p> <p>5. <u>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u> (이하 생략)</p>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u>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제1항 관련)</u>			
보고사항	보고받는 자	서식	보고기한
<p>1.~7. (생략)</p> <p>8. 기 타 가. ~ 나. (생략)</p>			
다. <u>법 제7조·제9조제4항·제10조제5</u>	시·도지	별지 제51호	<u>승계사유가 발</u>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항·제32조제4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의 보고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서식
라. (생략)		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검토의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에서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석유정제업 등록요건에 비추어 석유정제업 등록은 대물적 허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법률에서 영업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영업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승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확인적 차원에서 승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승계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거나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서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을 [별표 8]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석유정제업자 등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에 별지 51호서식에 따라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서는 이와 같은 보고의무의 수권 근거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제1항을 들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 등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보고대상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는 승계인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보고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바, 일반국민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별표 8]에 따라 지위승계 사실을 보고할 것을 기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측면이 있다.
- 일반적인 입법례에서는 영업승계를 보고제를 통하여 규율하기보다는 신고제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의 대강을 법률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더 나아가 석유정제업자등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서 보고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석유정제업자 등 영업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에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보다 상세한 것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을 정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영업승계에 따른 보고사항(8.)을 삭제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선안 】

현 행	개정안
<p>제 7 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각호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각호 생략)</p> <p><신 설></p>	<p>제 7 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2) 석탄가공업 영업승계 신고기간 및 첨부 서류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p>제20조(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①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p>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p>1.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p> <p>2. 석탄가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p> <p>3. 법인인 석탄가공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p> <p>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p> <p>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p>	<p>한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등록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p> <p>2. 삭제 <1999.9.9></p> <p>③·④ (생략)</p>

2) 검토의견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따르면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석탄산업법」 제4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신고기간이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매우 짧은 편이므로 그 기간을 적어도 1개월 정도로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그리고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서류로 등록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만을 들고 있는데, 과연 등록증만으로 지위승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지위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 승계 사유별로 제출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석탄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승계 사유별로 구분하여 명시한다.

【 석탄산업법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①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p>	<p>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u>등록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u></p> <p>2. <u>삭제 <1999.9.9></u></p> <p>③ · ④ (생략)</p>	<p>1. <u>영업양수의 경우 : 양도 · 양수 계약서 사본 1부</u></p> <p>2. <u>법인합병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1부)</u></p> <p>3. <u>상속의 경우 :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u></p> <p>4. <u>그 밖의 경우에는 경매 · 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3) 대규모점포등 영업승계 방법 및 절차 규정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1항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p>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p> <p>① <u>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때 또는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 ·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u></p> <p>②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 5 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p> <p>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p>제 8 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p> <p>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p> <p>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p> <p>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p> <p>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p> <p>마. 업종의 구성</p> <p>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p> <p>사. 재무구조</p> <p>2. 삭제 <2006.6.30></p> <p>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외의 서류를 말한다)</p> <p>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사본</p> <p>② ~ ⑤ (생략)</p>

2) 검토의견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때 또는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대규모 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여 대규모점포등 개설자가 영업양도·법인합병·상속에 따라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대규모점포등 개설 등록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등 개설 등록의 법적 성격은 대물적 허가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대물적 허가의 경우 그 특성상 법령에서 영업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당연히 영업을 승계할 수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확인적 의미에서 영업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그런데 행정 실제에서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지위 승계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지위 승계 사실을 행정청이 적절하게 알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아마도 행정실무에서는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변경등록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물적 허가영업 승계시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3) 개선방안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에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지위승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때 또는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u><신 설></u></p> <p>②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4) 전기사업 양도·양수,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 기준·절차 수권 근거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p>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① <u>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u></p>	<p>제 5 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기준) <u>법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자</u></p>	<p>제 9 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 신청) ① <u>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양수</u></p>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p>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1조(사업의 승계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 	<p>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 그에 대한 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5항 각 호의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p>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업양수 인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수이유서 또는 분할·합병이유서 2.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3. 양수에 필요한 자금 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사업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5.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p>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p> <p>3.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p> <p>4.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p> <p>②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p>		<p>업연도 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p> <p>6.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p> <p>7. 발전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p>

2) 검토의견

-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①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②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③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처럼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자의 지위 승계의 전제요건으로 관할 행정청의 사전인가를 들고 있으므로 인가기준이나 절차 등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전기사업법」에서는 인가기준이나 절차 등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인가에 있어서 중요한 인가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인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

3) 개선방안

- 「전기사업법」 제10조에 인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이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한다.

【 전기사업법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①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자는 <u>지식경제부장관</u>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각 호 신설></p> <p>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① ----- -----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p> <p>1. 제7조제5항 각 호의 허가기준에 <u>적합할 것</u></p> <p>2.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u>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에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개 정 안
<p><u>제 5 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기준) 법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 그에 대한 인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5항 각 호의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p><삭 제></p>

(5) 상속에 따른 전기사업 승계 절차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전기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전기사업법
<p>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3.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전기사업법

4.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 7 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전기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그런데 같은 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기사업 영업양도·양수, 법인합병에 따른 승계의 경우에는 사전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반하여

상속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아무런 절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 전기사업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허가는 주로 물적 요소에 착안하나 인적 요소(기술능력) 역시 고려하는 이른바 혼합적 허가라 할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영업승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상속에 따른 영업승계의 근거규정뿐 아니라 절차규정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전기사업법」 제11조에 상속에 따른 영업승계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를 두고 보다 상세한 것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 또한 상속은 당연히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제11조 제1호에서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를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한다.

【 전기사업법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1.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p> <p>2. ~ 4. (생략)</p> <p><신설></p>	<p>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전기사업자-----</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피상속</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단서 신설></p>	<p>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전기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p>

(6) 전력시설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영업승계 신고기간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등)</p> <p>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讓渡)·양수(讓受)하려는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려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설계업 또</p>	<p>제29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 2서식의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양수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법인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 3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합병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p>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감리업)양도·양수 신고서 또는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p> <p>③~⑤ (생략)</p>

2) 검토의견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나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 간 합병을 하려면 사전에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의 경우 양도·양수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법인합병 신고의 경우 법인합병 등기일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에 반하는 것이다.

3) 개선방안

-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영업양도·양수나 법인합병을 통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승계를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것보다는 사후신고제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서는 사후신고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등)</p> <p>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讓渡)·양수(讓受)하려는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려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p>	<p>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등)</p> <p>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讓渡)한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한 경우 <p>②·③ (현행과 같음)</p>

(7)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승계신고 기산점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4 제3항

전자거래기본법
<p>제31조의14(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양수 등)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와 합병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p>

전자거래기본법
<p>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종전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 2012.9.2] 제31조의14</p> <p>제46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0. (생략)</p> <p>11.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을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p> <p>12. 제31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13. ~ 20. (생략)</p> <p>③ (생략)</p>

2) 검토의견

-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4 제3항에서는 종전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개월 이내’를 언제부터 기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
- 이 법 제46조 제2항 제12호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4 제3항에 신고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정한다.

【 전자거래기본법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p>제31조의14(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양수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1조의14(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양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 ----- -----.</p>

(8) 집단에너지사업 승계신고 기산점

-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2조 제3항

집단에너지사업법
<p>제12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p> <p>제6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3항·제17조제1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이하 생략)

2) 검토의견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종전의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0일 이내’를 언제부터 기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
- 이 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2조 제3항에 신고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정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선안】

현 행	개선안
<p>제12조(사업의 승계 등) ①·② (생략)</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12조(사업의 승계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그 승계사유 발생일부터 30일 ----- -----.</p> <p>④ (현행과 같음)</p>

(9) 특정사업 승계신고 방법 및 절차 규정

1) 관련 법령 및 조문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7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p>제 7 조(사업의 승계)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특정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특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삭제 <1999.2.5></p>

2) 검토의견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1항에서는 특정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특정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특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상 특정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사업자 중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정한 품목등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사업자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 지정의 법적 성격은 강학상 특허라 할 것이고, 특허 효과의 이전 문제 역시 일반원칙인 일신전속적인가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⁸⁷⁾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특정사업자 지정의 요건으로 ① 지정품목 또는 유사품목을 1년 이상 생산한 실적이 있거나 개발 능력이 있을 것, ② 자금능력·경영능력등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③ 기존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 ④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을 들고 있는바, 특정사업자로 지정할 때 주로 물적 요소에 중점을 두기는 하나, 경영능력 등 인적 요소 역시 고려하는 점에 비추어 혼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특허 효과가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

87) 김남진·김연태, 앞의 책, 244쪽 참조.

- 같은 법 제7조가 특정사업의 승계의 근거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근거만을 두고 있을 뿐 승계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직접 정하고 있지도 않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실제 특정사업의 승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법상 그 승계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특정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9년 2월 5일자 개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 개정법률은 항공우주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항공기·우주비행체등을 생산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특정사업자 지위승계신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역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 생각건대, 특정사업자 지위승계신고제도는 새로운 사업자가 별도의 지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규제라고 보기 어렵고, 승계의 근거 규정을 둔 상태에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만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만일 특정사업 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였다면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외에 승계 근거 규정도 함께 삭제했어야 할 것이고, 특정사업 승계를 인정하려는 취지라면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사실상·법상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7조에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선안 】

현 행	개선안
<p>제 7 조(사업의 승계)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특정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특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삭 제 <1999.2.5></p>	<p>제 7 조(사업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특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10) 1종화학물질의 제조업 등 승계신고 방법 및 절차 수권 근거

- 1) 관련 법령 및 조문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p>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 7 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제조사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제조사 또는 신고제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허가제조사 또는 신고제조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허가제조사 또는 신고제조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제조사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 3 조(허가제조사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제조사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사 지위승계 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사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 사유가 합병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p>

<p>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제조사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3]</p>

2) 검토의견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는 허가제조사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방법 및 절차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한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신고서식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수권 근거 없이 행정부가 정해도 되는 단순한 집행명령적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바, 그 수권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3) 개선방안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다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절차를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 행	개선안
<p>제 7 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u>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u>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 7 조(지위승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 ----- -----.</p>

4.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1) 천연가스수출입업 영업승계 관련 제재규정 마련

1) 관련 법령 및 조문 :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과태료) ① (생략)

도시가스사업법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계자 (이하 생략)</p> <p>제 7 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각 호 생략)</p> <p>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p> <p>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4조·제7조 및 제7조의2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는 “등록”으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제10조”는 “제10조의8”로 본다.</p>

2) 검토의견

-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사업승계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이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경우도 영업승계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도시가스사업 영업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영업승계신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 도시가스사업 영업승계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 영업승계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하지 아니할 정책적인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후자의 경우에도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제재수단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천연가스수출입업 영업승계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5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계자 <괄호 안 신설></p>	<p>제5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제1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p>

현행	개정안
(이하 생략)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2) 전기공사업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전기공사업법」 제43조제3호

전기공사업법
<p>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u>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계신고를 한 자</u> 4. ~ 8. (생략) <p>제 7 조(공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공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공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p>② <u>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p>

2) 검토의견

- 「전기공사업법」 제43조 제3호에서는 전기공사업 영업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계신고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종래의 통설에 따르면, 행정형벌은 행정법규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해지는 것인 반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 예컨대, 신고·보고·장부비치의 의무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것으로서,⁸⁸⁾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대상이 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정목적 침해의 직접성과 간접성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행정형벌을 과하던 것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바,⁸⁹⁾ 그에 따라 양자의 구별은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 즉 최근 「형사소송법」에 의한 행정형벌의 부과 절차상 복잡할 뿐 아니라, 형사소송에 대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인해 행정의 주도권이 검찰에 넘겨지고, 형벌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행정형벌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종래 행정형벌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대폭 과태료로 전환하고 있다.
-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刑種)과 형량(刑量)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88) 대법원 1969. 7. 29, 69마400 결정.

89) 다만,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은 국민들의 책임의식의 해이와 국민들에 대한 절차상 보호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홍정선, 앞의 책, 616쪽 참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⁹⁰⁾고 판시하여 종래의 통설의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양자의 구별의 상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최근의 입법례 및 판례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행정형벌은 행정목적에 직접 침해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데 반해, 행정질서벌은 ① 행정목적에 직접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과태료로써 충분히 그 제재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행위와 ② 행정목적에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행정목적에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과거에 행정형벌을 과하던 것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입법추세나 신고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유사 법령에서의 지위승계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질서벌로 대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전기공사업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대체한다.
- 「전력기술관리법」상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괄 정비를 요한다.

90) 헌재결 1994. 4. 28, 91헌바14.

정비 대상 입법례

【**전력기술관리법**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전기공사업법 개선안】

현행	개정안
<p>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계신고를 한 자 4. ~ 8. (생략) 	<p>제43조(벌칙)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p><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 5.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p>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 10. ② · ③ (생략) 	<p>제4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p>1의2.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계신고를 한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5. 기 타

(1) 상속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승계신고 첨부 서류 관련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괄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 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인증서(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③ (생 략)

2) 검토의견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위승계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에서 특히 상속과 관련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괄호 안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속의 개념은 사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괄호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괄호를 삭제한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 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 한다)</u></p> <p>②·③ (생략)</p>	<p>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①(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괄호 삭제></u></p> <p>②·③ (현행과 같음)</p>

(2) 석탄광업자 등의 승계인에 대한 지위승계 범위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석탄산업법」 제5조

석탄산업법
<p>제 5 조(행위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석탄광업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4.14]</p>

2) 검토의견

- 「석탄산업법」 제5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석탄광업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만으로는 과연 이 법에 따른 어떠한 절차나 행위가 누구에게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3) 개선방안

- 「석탄산업법」 제5조를 삭제하고, 이 법에 따른 행위의 효력을 승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서 효력이 미치는 자 및 효력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 석탄산업법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 5 조(행위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석탄</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광업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p>	

(3) 우수체인사업자 지위승계 규정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제5항

유통산업발전법
<p>제1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유통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점포수, 매장면적 등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2.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우수할 것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p>②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절차·지정방법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지식경제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④ 중소기업청장은 우수체인사업자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식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p> <p>⑤ <u>제13조의 규정은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u></p> <p>[법률 제6959호(2003.7.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9년 1월 30일까지 유효함]</p>

2) 검토의견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로서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은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이 규정은 법률 제6959호(2003.7.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30일까지 유효하여 이미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2012년 1월 17일자 일부개정·시행)에 여전히 남아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시 이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우수체인사업자 지정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를 삭제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개선안 】

현 행	개 정 안
<p><u>제1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u></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점포수, 매장면적 등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p> <p>2.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우수할 것</p> <p>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p>②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절차·지정방법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지식경제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④ 중소기업청장은 우수체인사업자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식경제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p> <p>⑤ 제13조의 규정은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p>	

제 3 절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1.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화를 요하는 경우

(1)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등 승계인에 대한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시 선의의 양수인 등 보호

1) 관련 법령 및 조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4조(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32조제1항 각호 또는 제33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는 종전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3조 제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승계인에게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만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역시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선의의 승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둔다.
-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행	개정안
제34조(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32조제1항 각호 또는 제33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	제34조(행정처분효과의 승계) ----- ----- ----- ----- 양수인이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 양수인이나

현행	개정안
<p>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2) 공중위생영업 승계인에 대한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시 선의의 양수인 등 보호

1) 관련 법령 및 조문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

공중위생관리법
<p>제11조의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① 공중위생영업자가 그营业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p> <p>② 공중위생영업자가 그营业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p>

2) 검토의견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에서는 종전의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승계인에게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에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만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역시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에 선의의 승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둔다.
-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개선안 】

현행	개정안
제34조(행정처분효과의 승계) ① 공중 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제34조(행정처분효과의 승계) ----- -----

현행	개정안
<p>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p> <p>②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p> <p><신 설></p>	<p>----- ----- ----- -----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p> <p>② ----- ----- ----- -----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2.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1)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등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 서류 확인 방법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삭 제 <2008.9.22>

③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외에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2) 검토의견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신청인⁹¹⁾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서류 외에 사실확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는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

91) 여기서 ‘신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신고인’이라고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관할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신원확인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법원 등 유관 기관에게 협조요청을 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2)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 서류 확인 방법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p>제48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삭제</p> <p>③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④ (생략)</p>

2) 검토의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서는 허가신청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청인⁹²⁾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 제38조 제1항 제8호는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관할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신원확인 필요 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법원 등 유관 기관에게 협조 요청을 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3) 산후조리업 관련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기간

1) 관련 법령 및 조문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 제1항

모자보건법
<p>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9에 따라</p>

92) 여기서 ‘신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신고인’이라고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모자보건법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진행 중이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검토의견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 제1항에서는 ①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②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③ 법인은 같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만으로는 승계인은 언제까지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처분의 효과가 그에게 미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제재적 행정처분의 면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승계인에게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없이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승계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것이 요구된다.

3) 개선방안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에 산후조리업 승계인에게 미치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모자보건법 개선안】

현 행	개선안
<p>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p> <p>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u> 2. <u>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u> 3. <u>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u> <p>②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진행 중이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p> <p>① <u>산후조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5조의9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간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u></p> <p><삭제></p> <p>② (현행 제3항과 같음)</p>

3. 승계 관련 절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1) 사회복지사업법인 합병 허가 방법·절차 등에 관한 수권 근거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p>제30조(합병) ①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다만,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p>	<p>제11조(사업복지법인의 합병)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u>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u></p> <p>② 합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관계사회복지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사회복지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u></p>	<p>제19조(법인의 합병)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정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정관변경안 1부 다. 사업계획서·예</p>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p>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p> <p>라.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p> <p>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p> <p>가. 합병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p> <p>나. 합병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p> <p>다.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 각 1부</p>

2) 검토의견

-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합병 허가의 기준이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하지도 아니하고,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한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모법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 없이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합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사회복지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사회복지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합병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
-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경우에도 법률이나 시행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 없이 법인합병 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수권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법인합병허가신청에 따른 서류제출의무 등에 관한 수권 근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만일 합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사회복지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사회복지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합병 허가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중복되는 사항인데, 이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사항이 아닌,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차원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면 될 것이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p>제30조(합병) ①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다만,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신 설></p> <p>② (생략)</p>	<p>제30조(합병) ①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p> <p>② 합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사회복지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p>제11조(사업복지법인의 합병) ① 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p> <p>② 합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p>	<p><삭 제></p>

현 행	개 선 안
<p>관계사회복지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사회복지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p>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p>제19조(법인의 합병)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p>	<p>제19조(법인의 합병)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인합병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정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정관변경안 1부 다.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라.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합병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합병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 각 1부

현 행	개선안
<p>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p> <p>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정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p> <p>나. 정관변경안 1부</p> <p>다.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p> <p>라.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p> <p>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p> <p>가. 합병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p> <p>나. 합병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p> <p>다.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 각 1부</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2)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신고 기산점 및 관련 제재 수단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p>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① 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사실을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2) 검토의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서는 종전의 사회서비스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개월 이내’를 언제부터 기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

- 이 법에서는 사회서비스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신고 기산점과 관련하여 큰 다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관할 행정청이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두어야 할 것이고, 신고의 기산점 역시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사회서비스제공자 지위승계신고 기산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안】

현 행	개선안
<p>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①·② (생략)</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사실을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제4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선 안
<p><신 설></p> <p>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p> <p>② (생 략)</p>	<p>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법인합병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시 첨부 서류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① <u>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u></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p> <p>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p>	<p>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u>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u></p> <p>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p> <p>가.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률」에 따른 환가</p> <p>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사실을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2) 검토의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각 호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자 지위승계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각 승계 사유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양도·양수, 상속 외에 법인합병에 따른 지위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첨부 서류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경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법인합병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양도·양수, 상속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비추어 충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또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호에서는 사회서비스제공자 지위승계신고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사항은 이미 관할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지위승계신고시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신고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법인합병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회서비스제공자 지위승계신고시 첨부서류 중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삭제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안】

현 행	개선안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선안
<p>1. <u>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u></p> <p>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p> <p>가.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u><신 설></u></p> <p>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 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u><삭 제></u></p> <p>1. (현행 제2호와 같음)</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법인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p> <p>라. (현행 다목과 같음)</p>

(4) 응급환자이송업자 영업승계 신고기간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p>제5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p>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2) 검토의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항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기한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따르면 영업자의 지위 승계의 효과는 신고의 수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은 응급환자 이송업 관리·감독 차원에서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신고 기한을 비교적 장기인 60일 이내 할 경우 관리·감독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

므로 그 기간을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신고기간의 기산점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유사 입법례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약사법】 제89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의약품 판매업자(한약업사는 제외한다), 검사기관등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89조의2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2011.3.30, 2011.6.7>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제31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의약품 판매업자: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등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양수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

유사 입법례

에 관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6.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시행일 : 2012.3.31] 제89조

3) 개선방안

- 유사 입법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항상의 응급환자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신고 기한을 단축하여 정하도록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선안】

현행	개정안
<p>제54조(영업의 승계)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54조(영업의 승계)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그 승계사유 발생일부터 30일 ----- -----.</p>

(5) 의료기기 제조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의무 부과, 신고기간·방법 등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의료기기법」 제47조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령
<p>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① <u>제조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수리업자: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제6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영업을 양도하여야 한다.</p> <p>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6조제2항·제6항 또는 제15조제2항·제5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p>	<p>제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12. (생략) 13. <u>법 제47조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u> 14. (생략)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령
<p>의료기기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을 양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품목류 또는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2) 검토의견

- 「의료기기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자등의 사망, 영업 양수, 법인 합병시 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 양수도시 품목류 또는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의료기기법」상 제조업등 허가·신고는 물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어 허가·신고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승계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승계가 가능하지만 확인적 의미에서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승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그런데 행정관청이 허가권자로서 영업자의 변동상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양수·양도나 상속시 사후에 (인·허가적 의미가 아니라) 그 사실을 통보하는 의미에서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행정실무에서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는데, 영업승계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 한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호에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실무상 지위승계 사무가 실제 수행되고 있거나 또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그 밖에 「의료기기법」 제47조 제3항에서는 영업 양도의 경우에만 품목류 또는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이나 법인 합병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의료기기업의 경우에도 경매 등에 따른 제조시설의 전부 인수의 경우에도 지위승계를 인정할 실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관련 규정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의료기기법」 제47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뒤, 보다 세부적인 사항(양식이나 첨부 서류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 신고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태료 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도록 한다.
- 영업 양도의 경우 외에 상속이나 법인 합병의 경우도 품목류 또는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지위승계를 인정할 필요성을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 의료기기법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① 제조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6조제2항·제6항 또는 제15조제2항·제5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을 양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품목류 또는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신설></p>	<p>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나 제3항에 따라 해당 품목류 또는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6)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영업승계 절차

1) 관련 법령 및 조문 : 「화장품법」 제26조

화장품법
<p>제26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u>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 등의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한다.</u></p> <p>제 3 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① <u>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와 그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u></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u>정신질환자</u>. 다만, 전문의가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u>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u>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③ <u>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④·⑤ (생략)</p>

2) 검토의견

- 「화장품법」 제26조에서는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 등의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 ‘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은 완화된 허가의 일종으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비추어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 등록시에는 물적 요소에 중점을 두나, 일반적인 영업허가에 관한 결격사유와는 달리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그 요건으로 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적 요소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혼합적 허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 다만, 대물적 허가인지 혼합적 허가인지가 일견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영업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법정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화장품법」에서는 이를 법정하고 있어서 일단 화장품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은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화장품법」에서는 영업승계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행정 실제에서 화장품의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 승계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관할 행정청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지위 승계 관련 절차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화장품법」 제26조에 화장품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 승계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 신고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태료 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도록 한다.

【 화장품법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26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 등의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한다.</p> <p><신 설></p>	<p>제26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①</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4.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등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1) 관련 법령 및 조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p>제4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2. (생략)</p> <p>3. <u>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p> <p>4 ~ 8. (생략)</p>
<p>제11조(영업의 승계) ①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양도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2) 검토의견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는 종전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등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3호에서는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행정목적은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전기공사업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에 관한 사례에서 설명한 것처럼 과거에 행정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입법추세나 신고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유사 법령에서의 지위승계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질서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3) 개선방안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등의 승계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도록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선안】

현 행	개선안
제4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선 안
<p>1. ~ 2. (생 략) <u>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4. ~ 8. (생 략)</p> <p>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 4. (생 략) <u><신 설></u></p> <p>5. ~ 8. (생 략)</p>	<p>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3. ~ 7.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p> <p>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 5. <u>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p>

(2) 공중위생업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1) 관련 법령 및 조문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p>제20조(벌칙) ① (생 략)</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생 략) 2. <u>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3. (생 략) ③ (생 략)</p>

공중위생관리법

제 3 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법」에 따른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4항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1월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은 이러한 지위승계의무 위반에 관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0조제2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행정목적은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과거에 행정형벌을 과하던 것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입법추세나 신고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유사 법령에서의 지위승계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질서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3) 개선방안

-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도록 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p>제20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생 략) 2. <u>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p> <p>3. (생 략) ③ (생 략)</p>	<p>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 <삭 제></p> <p>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선 안
<p>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신 설></p> <p>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제2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중 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의3. (현행 1의2.와 같음)</p>

(3) 산후조리업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1) 관련 법령 및 조문 : 「모자보건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모자보건법
<p>제26조(벌칙)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2.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p> <p>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p>

모자보건법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 「모자보건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5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행정목적은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과거에 행정형벌을 과하던 것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입법추세나 신고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유사 법령에서의 지위승계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질서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3) 개선방안

-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도록 한다.
- 「모자보건법」 제27조에서는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과태료의 형량을 200만원 이하와 100만원 이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지위승계신고의무 위반과 유사한 위반행위라 할 수 있는 폐업·휴업 또는 재개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로 제재하고 있으므로 지위승계신고의무 위반의 경우도 100만원 이하로 제재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모자보건법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p>제26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2.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제2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한 -----.</p> <p><삭 제></p> <p><삭 제></p>
<p>제27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 략) <신 설></p> <p>2. ~ 5. (생 략)</p> <p>③ (생 략)</p>	<p>제2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4) 식품제조업등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항

식품위생법
<p>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식품위생법
<p>②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1조(과태료) ①·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 4. (생략) ④ (생략)

2) 검토의견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제조업등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식품제조업등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영업승계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위승계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수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어느 경우에는 제재수단을 두고 있고, 어느 경우에는 제재수단을 두지 아니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식품제조업등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식품제조업등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한다. 이 때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위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에 맞추어 그 수단 및 정도를 정하면 될 것이다.

【 식품위생법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p>제101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u><신 설></u></p> <p>2. ~ 4. (생 략)</p> <p>④ (생 략)</p>	<p>제10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u></p> <p>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5)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약사법」 제89조

약사법
<p>제89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의약품 판매업자(한약업사는 제외한다), 검사기관등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89조의2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제31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의약품 판매업자: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②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약품등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양수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③ <u>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다만,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p>

2) 검토의견

- 「약사법」 제89조 제3항에 따르면 의약품등 제조업자등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약사법」은 의약품등 제조업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영업승계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의약품등 제조업자의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한다.

【약사법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p>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0. (생략)</p> <p><u><신설></u></p> <p>② ~ ⑤ (생략)</p>	<p>제9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1. ~ 10. (현행과 같음)</p> <p><u>11. 제8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6) 응급환자이송업자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중복제재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항 제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p>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① (생략)</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u></p> <p>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2항·제3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u>제54조제3항</u>,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이하 생략)</p> <p>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4. (생략)</p> <p>5.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u>제54조제3항</u>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6. (생략)</p> <p>② (생략)</p>

2) 검토의견

-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행정벌(형벌·과태료) 외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제한, 과징금, 위반사실의 공표, 공급거부, 허가사업의 제한 등의 제재수단을 동시에 병과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이중처벌금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재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병과가 허용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⁹³⁾ 다만, 행정벌과 제재적 행정처분이 각각 다른 부과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재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중적 제재로 받아들여 제재에 대한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재수단을 단일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단일화 하고, 이 때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무 위반을 행정목적의 직접적 침해로 보기 어렵고,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의 경우 행정의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제한하여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제재적 행정처분의 수단보다는 행정질서별로 제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3) 김명길, 규제와 제재법리에 관한 실정법의 분석적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 52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 15-16쪽; 현재결, 2008. 7. 31, 2007헌바85; 현재결 2003. 6. 26, 2002헌가14; 현재결, 1994. 6. 30, 92헌바38; 대판 1983. 6. 14, 82누439 등 참조, 다만, 최근의 입법례에서는 행정벌과 행정처분의 한 유형인 과징금과의 혼용을 자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제47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8조(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 참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① (생략)</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2항·제3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이하 생략)</p>	<p>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 ----- ----- -----, 제53조, 제54조의2 ----- ----- (이하 현행과 같음)</p>

5. 기 타

(1) 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관련 벌칙규정

1) 관련 법령 및 조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제2항 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p>제94조(벌칙)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 략) 3.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4. (생 략) <p>제85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84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p>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국민건강보험법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85조 제3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같은 법 제85조 제3항은 행정제재 처분효과 승계에 관한 규정으로 요양기관의 개설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아마도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제85조 제4항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의 통지의무 위반을 제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즉, 입법상 오기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통지의무 위반은 행정목적에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재하더라도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문제는 공법상 지위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검토될 수 있는 문제인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기관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사항도 규정하지 아니하면서,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만을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

3) 개선방안

-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p>제94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3.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4. (생 략)</p>	<p>제9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p>

(2) 식품위생검사기관 영업승계 사유 정비·법인합병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시 첨부 서류·신고 기산점

-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식품위생법」 제29조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p>제29조(영업의 승계)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기관 운영자”라 한다)가 <u>사망하거나</u>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을 양도하거나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p>	<p>제29조(검사기관 지위승계의 신고)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p>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p>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 중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로서 제2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는 그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 중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4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p> <p>①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의 검사(이하 “식품위생검사”라 한다)를 행하는 기관(이하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p>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 2. 다음 각 목에 따른 검사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5조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다.</p>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p>2. <u>식품위생검사를 효율적으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u></p>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위생검사 업무범위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1.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 제19조 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중 식품위생검사에 해당하는 검사</p> <p>2.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p> <p>③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식품위생검사시설, 식품위생검사 전문인력(이하 “검사원”이라 한다)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2) 검토의견

- 「식품위생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기관 운영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그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 중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는 개념에는 자연인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상속에 따른 지위승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 내용을 보더라도 자연인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 그리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개월 이내”를 언제부터 기산할 것인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
-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서는 식품위생 검사기관 운영자 지위 승계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각 승계 사유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영업양도, 상속 외에 법인합병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첨부서류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영업양도·상속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비교하였을 때 법인합병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충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위승계신고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사항은 이미 관할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지위승계신고시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신고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식품위생법」 제29조 제1항에서 상속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위승계사유를 제외하고, 이와 동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상속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 서류를 삭제한다.
- 「식품위생법」 제29조 제3항에 신고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법인합병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시 첨부서류를 규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제조업등 법인합병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시 첨부서류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괄 정비를 요한다.

정비대상 입법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삭 제

정비대상 입법례

- ③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43조에 따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29조(영업의 승계)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기관 운영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을 양도하거나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u>그 상속인·양수인</u>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 중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u>1개월</u>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9조(영업의 승계) ① ----- ----- 식품위생검사기관 ----- ----- ----- <u>그 양수인</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u> ----- -----</p>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29조(검사기관 지위승계의 신고)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u>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u></p> <p>2. 다음 각 목에 따른 검사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p> <p>가.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p> <p>나. 상속의 경우: 「<u>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u>」 제15조제1항 제1호의 <u>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u></p> <p><신 설></p> <p>다. 그 밖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② (생략)</p>	<p>제29조(검사기관 지위승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2.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나. <u>법인합병의 경우: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u></p> <p>다.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3)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양수인에 대한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p>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각 호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u>제1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⑤ (생략)</p>
<p>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u>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u></p> <p>②·③ (생략)</p> <p>④ <u>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u></p>
<p>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u>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u></p> <p>②·③ (생략)</p> <p>④ <u>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u></p> <p>⑤ ~ ⑦ (생략)</p>

2) 검토의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1년 4월 28일자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10.29. 시행)에서 신설된 것이다.
- 이와 같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문제는 공법상 지위의 승계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검토될 수 있는 문제다. 즉 공법상 지위의 승계가 가능하여 종전의 공법상 지위가 새로운 공법상 지위로 이전된 경우 종전 공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공법상 지위에 승계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영업허가권이 양도·양수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피승계인이 저지른 행정상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인에게 물리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 그런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영업승계(치과기공소 영업자 및 안경업자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사항도 규정하지 아니하면서,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만을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
-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과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에 비추어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및 안경업소 개설 등록은 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완화된 허가의 일종이라 할 수 있고, 그 법적 성격은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등록을 해주는 혼합적 성격의 허가라 할 것이므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을 때에만 그 법적 효과가 승계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행정제재처분효과를 승계시키려고 하려면 일단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영업허가권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법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치과기공사, 안경사의 영업양도에 따른 승계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조항에서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한다.
-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괄 정비를 요한다.

정비대상 입법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1.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1)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인에 대한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기간

1) 관련 법령 및 조문 : 「관광진흥법」 제8조 제3항

관광진흥법
<p>제 8 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p>③ <u>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관광진흥법

- 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 ⑦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검토의견

- 「관광진흥법」 제8조 제3항에서는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만으로는 승계인이 언제까지 종전의 관광사업자에게 한 처분의 효과가 그에게 미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면탈 등의 방지를 이유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인에게 미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승계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것이 요구된다.
- 또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관광사업 휴업·폐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율사항은 영업승계에 관한 사항과 이질적이므로 별도의 조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관광진흥법」 제8조 제3항에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인에게 미치는 행정제재처분효과의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 관광진흥법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 8 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② (생략)</p> <p>③ <u>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④ ~ ⑥ (생략)</p> <p>⑦</p>	<p>제 8 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 8 조의2(관광사업 휴업·폐업 등) 관 <u>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u></p>

(2)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요건·기간 등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p>제22조(영업의 승계) ①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u>효과를 승계한다.</u></p> <p>② (생략)</p>

2) 검토의견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는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영업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사항 역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고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인지, 어느 기간 동안 승계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승계인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

3) 개선방안

- 승계인에게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승계 대상 행정(제재)처분 및 승계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안】

현행	개정안
<p>제22조(영업의 승계) ①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u>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u></p> <p><신 설></p> <p>② (생략)</p>	<p>제22조(영업의 승계) ① ----- ----- ----- ----- ----- -----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의 <u>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정기간행물사업자에게 제○조제○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또는 그 행정처분의 만료일부)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2. 승계 관련 절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1)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방법 · 절차 수권 근거

1) 관련 법령 및 조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제 8 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③ (생략)</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 ⑦ (생략)</p>	<p>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p> <p>① (생략)</p> <p>② <u>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1. <u>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u></p> <p>2. <u>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u></p>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u>다만,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u></p>

2) 검토의견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서는 법률의 명확한 수권 근거 없이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방법 및 절차, 서류제출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수권 근거 없이 행정부가 정해도 되는 단순한 집행명령적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바, 그 수권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방법·절차에 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 영화상영관 경영자,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시청제공업 승계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및 제63조 제4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입법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영업의 승계)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 8 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p>	<p>제 8 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 ----- ⑤ ~ ⑦ (현행과 같음)</p>

(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 영업승계 신고절차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①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p>	<p>제15조(영업의 승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p>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 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p>	<p><u>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u></p>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 처분일로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2) 검토의견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이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등”이라 한다) 영업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등 신고·등록은 물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어 신고·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승계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승계가 가능하지만 확인적 의미에서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관할 행정청에서 승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그런데 행정관청이 인·허가권자로서 영업자의 변동상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양수·양도나 법인합병, 상속시 사후에 (인·허가적 의미가 아니라) 그 사실을 통보하는 의미에서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행정실무에서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 영업승계 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 한편,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영업자의 지위 승계인에게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효과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절차적 권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 차원이 아니라 법률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뒤, 보다 세부적인 사항(양식이나 첨부 자료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 신고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태료 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도록 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안 】

현행	개정안
제23조(영업의 승계) ①~④ (생략)	제23조(영업의 승계) ①~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신 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⑥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p>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15조(영업의 승계 등) ①·②(생략)</p> <p>③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5조(영업의 승계 등) ①·②(현행과 같음)</p> <p><삭 제></p>

(3) 체육시설업 영업승계 신고절차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p>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p>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併)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각 호 생략)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 검토의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체육시설업 영업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상 음체육시설업 신고·등록은 물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어 신고·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승계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승계가 가능하지만 확인적 의미에서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관할 행정청에서 승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그런데 행정관청이 인·허가권자로서 영업자의 변동상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양수·양도나 법인합병, 상속시 사후에 (인·허가적 의미가 아니라) 그 사실을 통보하는 의미에서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뒤, 보다 세부적인 사항(양식이나 첨부 자료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 신고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태료 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도록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안】

현행	개정안
<p>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② (생략) <신설></p> <p>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p>	<p>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p>

3. 기 타

(1) 영화상영관 경영자 지위승계인 관련 용어

-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제10호, 제46조 제1항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4호, 2012.2.17, 일부개정]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8. (생 략)</p> <p>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p> <p>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p> <p>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p> <p>라. <u>영화상영업자</u> : <u>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u></p> <p>10. <u>“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u></p> <p>11. ~ 20. (생 략)</p> <p>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 <u>영화상영관 경영자</u>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③·④ (생 략)</p> <p>[본조신설 2007.1.26]</p> <p>[법률 제8280호(2007.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p>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4호, 2012.2.17, 일부개정]
<p>제37조(재해예방조치) 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u>영화상영관 경영자</u>”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당해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정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6조(영업 등의 승계) ① <u>영화상영관 경영자</u>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u>영화상영관 경영자</u>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u>영화상영관</u>을 인수한 자는 <u>그 영업자</u>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영화상영관 경영자</u>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u>영화상영관 경영자</u>에 대하여 제45조의 규정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u>영업자</u>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2) 검토의견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서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같은 대상을 제1항의 경우에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라는 용어를, 제2항에서는 ‘영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달리 표현하는 문제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2조 제9호 라목에서는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를 ‘영화상영업자’라고 정의하고 있고(이 법에서는 영화상영업자라는 용어는 정의 조항 외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25조의2 제2항에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영화상영관 경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를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약칭하고 있다.
- 그리하여 같은 법 제46조상의 지위승계인이 영화상영업자를 말하는 것인지(영화상영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설)영화상영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영화상영관 경영자를 말하는 것인지가 매우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

3) 개선방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위승계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 영화상영업자, 영업자의 용어를 통일하거나 명확하게 하도록 한다.

제 5 절 농림 · 수산 · 식품 관련 법제 분야

1.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화를 요하는 경우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시 납부 수수료

1) 관련 법령 및 조문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농어촌관광휴양단지 <input type="checkbox"/> 관광농원				처리기간
				즉시
승계하는사람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승계받는사람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		
	상호(명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		

시행규칙」 제87조 제4항과 결부된 별지 제81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서는 9,300원의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수수료는 법령상 부과된 지위승계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납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종의 강제적 성격의 수수료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징수를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고, 수수료 부과 주체, 수수료 금액 또는 산정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역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수수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한다.

【 농어촌정비법 개선안 】

현 행	개선안
<p>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각 호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각 호 생략)</p> <p>③ (생략)</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p>	<p>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현 행	개선안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시 선의의 양수인 보호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0조의10 제4항

친환경농업육성법
<p>제20조의10(농자재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농자재공시등제품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상속인 2.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② 제1항에 따라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농자재공시등을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제20조의9제1항 및 제2항과 제20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내에서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p>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7(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
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인증을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0조의10 제4항에서는 종전의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게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내에서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여기서는 승계인이 그 지위의 승계 시에 행정처분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선의인 경우에도 행정처분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 행정처분효과의 승계기간을 그 처분기간 내로 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

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발한 경우 영업양도·양수나 법인합병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를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효과의 승계기간을 처분기간 내로 할 것이 아니라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일정기간까지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만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이나 법령의 통일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0조의10 제4항에 선의의 승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할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까지로 수정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경우에도 제재적 행정처분의 면탈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바, 행정처분효과 승계 규정을 두도록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양도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인감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33조제3항제1호·제4호 및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2) 검토의견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장묘업자·동물판매업자·동물수입업자·동물생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인이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제1호·제4호 및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
- 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제1호·제4호 및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1호는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및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관할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신원확인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법원 등 유관 기관에게 협조요청을 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영업승계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입법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② (생략)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3) 개선방안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을 삭제하도록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p>제42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 ② (생 략) ③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33조제3항제1호·제4호 및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u> ④·⑤ (생 략)</p>	<p>제48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p>

(2)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인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수산업법」 제44조 제3항

수산업법
<p>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수산업법

③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검토의견

- 「수산업법」 제44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업허가를 받을 때 붙은 부담이나 조건 등은 어업허가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지위승계에 따라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어업허가를 받은 이후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예컨대, 각종 개선명령이나 조치명령 등)의 경우는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지위승계에 따라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승계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규정만으로는 그 행정처분의 효과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승계인에게 미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면탈 등의 방지를 이유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인에게 미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승계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것이 요구된다.

3) 개선방안

- 「수산업법」 제44조 제3항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인에게 미치는 행정(제재)처분의 범위 및 그 효과의 기간을 명시하도록 한다.

3. 승계 관련 절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1) 농약등 제조업등·수출입식물방제업 영업승계신고 기산점

1) 관련 법령 및 조문 : 「농약관리법」 제5조 제3항

농약관리법
<p>제 5 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p>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농약관리법
<p>제40조(과태료) ① (생 략)</p>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1. <u>제5조제3항(제12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p> <p>2. ~ 6. (생 략)</p> <p>③ (생 략)</p>

2) 검토의견

- 「농약관리법」 제5조 제3항에서는 농약등 제조업자등·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개월 이내’를 언제부터 기산할 것인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
- 이 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 「어장관리법」상 어장정화·정비업 승계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므로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입법례

【어장관리법】 제19조(영업의 승계) ①·② (생 략)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정비대상 입법례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3) 개선방안

- 「농약관리법」 제5조 제3항에 신고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정한다.

【 농약관리법 개선안 】

현행	개선안
<p>제 5 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 5 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 ----- ----- -----</p>

(2)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영업승계 신고기간

-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식물방역법」 제40조의3 제3항

식물방역법
<p>제40조의3(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목재 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0조의2</p>

식물방역법
<p>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p>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50조(과태료) ①·② (생 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 략) 5.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④ (생 략)</p>

2) 검토의견

- 「식물방역법」 제40조의3 제3항에서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식물방역법」에서 직접 신고기간을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고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다.

-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의무 이행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고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개선방안

- 「식물방역법」 제40조의3 제3항에 신고기간을 명시한다.

【 식물방역법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p>제40조의3(지위승계) ①·② (생 략)</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 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u>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제40조의3(지위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u> -----.</p>

4.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 (1) 농수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지정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1) 관련 법령 및 조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8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p>제28조(지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제9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p>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을 받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2) 검토의견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각각 지정을 받은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지위승계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p>제1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4. (생략)</p> <p><신설></p> <p>5. ~ 7.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4. (현행과 같음)</p> <p>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1) 관련 법령 및 조문 :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4항 제3호

농어촌정비법
<p>제130조(벌칙) ①~③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농어촌정비법
<p>1. · 2. (생략)</p> <p>3. 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4. ~ 6. (생략)</p> <p>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각 호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각 호 생략)</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만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2) 검토의견

-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행정목적은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전기공사업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에 관한 사례에서 설명한 것처럼 과거에 행정형벌을 과하던 것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입법추세나 신고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유사 법령에서의 지위승계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질서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비대상 입법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10.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 12. (생략)

⑤ (생략)

- 한편,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제재하고 있고, 법인합병이나 상속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는 영업양도·양수에 따라 영업을 승계한 자를 법인합병이나 상속에 따라 영업을 승계한 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대우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형평의 관점에서 법인합병이나 상속에 따라 영업을 승계한 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제재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농어촌관리법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대체한다.
- 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법인합병·상속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도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과 마찬가지로 제재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제시한다.

【 농어촌정비법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130조(벌칙) ①~③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2. (생략)</p> <p>3. <u>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양도·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p> <p>4. ~ 6. (생략)</p>	<p>제130조(벌칙)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3. ~ 5.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2. (생략)</p> <p><신설></p>	<p>제13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2의2. <u>제8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u></p>

현행	개정안
3. ~ 8. (생략) ②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 어업허가 승계시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수산업법」 제102조 제1항 제9호

수산업법
<p>제10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8. (생략)</p> <p>9. 제44조제2항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p> <p>10. ~ 19. (생략)</p> <p>② (생략)</p> <p>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p> <p>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수산업법

③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검토의견

- 「수산업법」 제102조 제1항 제9호에서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고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상 요구되는 영업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영업승계의 효과를 부인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과태료로 제재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 「수산업법」 제102조 제1항 제9호에서는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삭제한다.

【 수산업법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10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8. (생략)</p> <p>9. 제44조제2항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p> <p>10. ~ 19. (생략)</p> <p>② (생략)</p>	<p>제10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10. ~ 1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5. 기 타

(1) 사료제조업 승계시 제재처분 규정 준용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사료관리법」 제9조 제4항

사료관리법
<p>제 9 조(제조업의 승계) ① 제조업자가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사료관리법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25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한 경우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시설을 변경한 경우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0.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1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1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13.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14. 제15조제2항에 따른 물질·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15.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경우
16.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경우

사료관리법
17. 제20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9.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사료관리법」 제9조 제4항에서는 “제25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5조는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 승계에 따라 당연히 제조업자가 되므로 제25조 제1항에 따른 위반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면 될 것인바, 준용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사료관리법」 제9조 제4항을 삭제한다.

【 사료관리법 개선안 】

현 행	개선안
제 9 조(제조업의 승계) ① ~ ③ (생략) ④ 제25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 9 조(제조업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 6 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1.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경우

(1) 소음진동배출시설 사업자의 지위승계인에 대한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기간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소음·진동관리법」 제50조

소음진동관리법
제50조(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10조(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는 제외한다)가 그 사업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검토의견

- 「소음·진동관리법」 제50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사업자에 대하여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발한 경우 영업양도·양수나 법인합병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 따라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할 것이 아니라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일정기간까지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할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까지로 수정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개선안 】

현행	개정안
<p>제50조(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10조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는 제외한다)가 그 사업을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7 조(행정처분효과의 승계) ① ----- ----- ----- ----- 끝나는 날부터 1년 동안 ----- ----- ----- ----- ----- ----- -----</p>

2. 기 타

(1) 유독물영업 승계 신고자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 등

1) 관련 법령 및 조문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p>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p> <p>7.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p> <p>8. ~ 10. (생략)</p> <p>11.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p> <p>12. ~ 15.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28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유독물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p>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p>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p> <p>[전문개정 2007.12.27]</p> <p>[시행일 : 2013.2.2] 제28조</p>

2) 검토의견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는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볼 수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굳이 이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1호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3) 개선방안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를 삭제한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p>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p> <p>1. ~ 6. (생 략)</p> <p>7.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 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p> <p>8. ~ 10. (생 략)</p> <p>11.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8 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 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 한 자</p> <p>12. ~ 15. (생 략)</p> <p>② (생 략)</p>	<p>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8. ~ 10.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12. ~ 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 국토해양부 소관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제 분야로 나누어 총 495개의 법률(해당 시행령·시행규칙 포함)상 영업승계규정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를 기초로 ①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 근거 없이 하위 법령에서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영업승계와 관련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② 영업승계와 관련하여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③ 영업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 영업승계 신고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 또는 장기여서 신고자에게 충분한 신고기간을 주지 않고 있거나 행정청의 관리·감독에 공백을 가져오는 경우, 영업승계 신고의 기산점이 불명확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시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④ 영업승계 관련 신고 등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도하거나 중복 제재를 예정하고 있거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지위(권리의무) 승계 여부나 그 대상·범위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승계요건이나 절차 등을 무차별적으로 간소화하거나 없앤 경우 등 개선을 요하는 사례 77개를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 대상 사례 발굴 현황>

순 번	분 야	발굴 내용 및 건수
1	• 승계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화를 요하는 경우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폐업신고전의 실적 승계” 외 8건 발굴
2	• 승계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골재채취업 관련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대상 및 범위” 외 11건 발굴
3	• 승계 관련 절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상속에 따른 골재채취업 승계신고 절차 수권 근거” 외 32건 발굴
4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건설업자 지위승계 신고의무 위반” 외 12건 발굴
5	• 기 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사망에 따른 영업승계” 외 9건 발굴
	합 계	77건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업승계규정의 정비 방향(내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승계인에게 영업승계와 관련하여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특히 영업양도 금지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등 영업승계와 관련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2) 영업승계와 관련하여 승계인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담지우지 않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허가나 지정을 받을 때 요구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서류 제출을 요

구할 경우 이는 영업양도나 법인합병 등의 실익을 반감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승계에 필요한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승계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입법례에 따라서는 지위승계 신고시 ‘등록증’만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처럼 지위승계사실을 증명하는 데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행정기관이 영업승계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영업승계에 따른 관리·감독에 공백이 없게 하는 등 영업승계제도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승계 사유마다 승계에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것인바, 시행규칙 등에서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열거할 때에는 가능한 한 승계 사유별로 나누어 이를 열거하면 수범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는 승계인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므로 승계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히 자기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수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승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하나의 법률에서 승계 사유별로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여부가 달라지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정책적인 필요가 있지 않는 한 제재적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를 인정할 때에는 승계 사유마다 달리 취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선의의 승계인에게 제재적 행정처분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승계를 배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지위승계규정은 두지 아니하면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만을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는 전자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검토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행정제재처분의 면탈의 방지 등을 이유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할 정책적인 필요가 있다면 그에 선행하여 공법상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영업양도 등을 할 때 법률에서는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에서는 사후신고제를 예정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에서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규칙에서는 사후신고제로 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업승계 신고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인 경우 사실상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하려는 경우 불필요한 다툼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고기간을 단기로 하여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지 않는 한 신고기간을 충분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신고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로 예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영업승계에 따른 행정청의 관리·감독에 공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승계 사유의 성격과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적절하게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신고기간을 좀 더 충분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법인합병의 경우에는 단기의 신고기간을 예정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신고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승계 사유 별로 신고 기간을 달리 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업승계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신고기간 자체를 법률에서 직접 또는 하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민이나 집행공무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저해하거나 불필요한 다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영업승계 신고에 따른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지만, 사후 신고제로 운영하는 입법례 중에는 영업승계사유가 발생하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다수의 학설도 영업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이나 법령의 규정 방식을 고려하여 영업승계사유가 발생하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신고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등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격사유 해당성 여부나 인허가 요건 구비 등에 관한 행정청의 확인이나 심사 등의 필요성이 강한 경우에는 신고가 있어야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승계사유의 발생만으로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신고라는 용어를 ‘통보’나 ‘통지’ 등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혼합적 허가의 경우는 대물적 허가의 경우와는 달리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영업승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영업승계 근거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 규정도 같이 두어 절차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법상 승계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대물적 허가의 경우에는 승계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승계가 가능하지만, 행정관청이 영업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업의 양도·양수나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허가적 의미가 아니라) 그 사실을 통보하는 의미에서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업승계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법정하여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4) 하나의 법률에서 어느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를 예정하고 있고, 다른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를 예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이는 새로운 영업제도를 신설하면서 승계와 관련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미처 두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사례라고 생각된다), 영업에 따른 차별을 가져올 소지가 있으므로 하나의 법률에서 유사한 영업 승계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의 여부, 수단이나 정도 등을 유사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을 벌칙으로 제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을 행정목적에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과거에 행정형벌을 과하던 것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입법추세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 등을 고려하여 벌칙보다는 과태료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과태료로 제재할 경우에도 해당 영업을 규제하는 법률의 취지나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업승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과 행정벌(과태료·벌칙) 양자를 모두 예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재적 행정처분과 행정벌은 각각 부과 목적의 다르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제재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이중적 제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므로 의무 위반 사례가 많은 등 반드시 두 가지 제재수단을 다 활용하여 제재하여야만 행정목적 달성할 수 있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자 중의 어느 하나의 수단만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영업승계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영업승계 사례나 신고의무 위반 사례가 많지 않는 등 제재의 필요가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적절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해당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철·이세정,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10. 31.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1. 4.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2. 5.
- 권오곤, 허가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민사판례연구(XI), 박영사, 1989.
- 김남진, 경찰 및 질서행정법상의 의무와 그의 승계 등, 고시연구, 2000. 11.
- _____, 행정법상 권리·의무 승계, 고시계, 1990. 11.
- _____,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4.
- _____, 행정제재사유 승계의 능부, 고시연구, 2002. 9.
-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12.
-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85.
-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8.
- 김명길, 규제와 제재법리에 관한 실정법의 분석적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2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
- 김승열, 영업의 승계사유에 따른 승계효과, 법제 제500호, 법제처, 1999. 8.
- 김중권, 공의무, 특히 철거의무 및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23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1995.

- 김중권, 행정법상의 신고의 법도그마적 위상에 관한 소고, 고시연구, 2002. 2.
-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08.
- 김춘환, 공중위생영업의 양도양수와 귀책사유의 승계여부 :대법원 2001.11.09. 2001두5064,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제9집,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 김향기, “과징금부과처분의 승계 여부”, 고시연구, 2004. 10.
- 배지숙,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단상, 법제, 법제처, 2003. 2.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06.
- 법제처, 법제연구총서, 법제처, 2000.
- 서돈각·정완용, 상법강의(상), 법문사, 1999.
- 서영기, 식품위생법 제25조의 영업승계 중 강제절차에서 영업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 재판실무연구 2007, 광주지방법원, 2008.
- 유상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고시계, 1998. 4.
- 윤세창·이호승, 행정법(상), 박영사, 1993.
- 이경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와 행정절차 -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혼합적 허가인가? -,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6.
- 이민아, 행정 제재사유 및 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8.
- 이영무, “영업양도에 따른 허가권의 이전과 제재사유 또는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법조 제55권 제6호, 법조협회, 2006. 6.
- 이영동, 공중위생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그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001년상반기 통권 제6호, 대법원, 2001.

- 이원우, 허가·특허·예외적 승인의 법적 성질 및 구별, 행정작용법 (중범 김동희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5.
-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법, 박영사, 2003
- 이현수, 영업양도와 제재처분상의 지위승계, 행정판례연구 X, 박영사, 2005.
- 임병수, 영업양도 등에 따른 허가 등 효과의 승계에 관한 기준연구, 법제연구총서 5, 법제처, 2000.
- 임재호, 영업양도의 개념과 판단기준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 다602 판결, 법학연구 제48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8.
- 장태주, 행정법상의 권리의무의 승계, 현대행정법학이론: 우제이명구 박사화갑기념논문집 II, 고시연구사, 1996.
- 장호익, 영업의 승계에 관한 입법례 검토, 법제 제492호, 법제처, 1998. 12.
-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7.
- 조성규, 신고의 법적 성질과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 고시연구 2005. 1.
- 천병태·김명길, 행정법총론, 삼영사, 2005.
- 최기원, 상법학신문(상), 박영사, 2004.
- 최영규, 영업규제의 법제와 그 수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2.
- 홍정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리재검토, 김동희 편, 행정작용법(중범 김동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5.

참 고 문 헌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01.

F.-J., Peine, Die Rechtsnachfolge in Öffentliche Recht und Pflichten - OVG
Münster, NVwZ-RR 1997, 70, JuS 1997, 984 ff.

G. Püttner,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989.

H. Sieg/W. Leifermann/P. Tettinger, Gewerbeordnung, 5. Aufl., 1998.

J. Dietlein, Nachfolge im Öffentlichen Recnt: staat - und verwaltungsrechtli-
chen Grundfragen, SöR Bd. 791, 1999.

K. Finkelnburg/K.-M., Ortloff, Öffentliches Baurecht, Bd. II, München 1998.

P. J. Tettinger/Rolf Wank/Jörg Ennuschat, Gewerbeordnung Kommentar, 8.
Aufl. München, 2011.

R. Landmann/G. Rohmer Gewerbeordnung, Loseblatt-Komm., Bd. I , 2010

R. Stober, Wirtschaftsverwaltungsrecht, 6. Aufl., 1989.

W. Frotscher/U. Kramer, Wirtschaftsverfassungs- und Wirtschaftsverwaltungsrecht,
5. Aufl., München 2008.

O. Rumpf, Die Rechtsnachfolge im Öffentlichen Recht, VerwArch 78(1987),
269 ff.

책
파

표현형도 영역영역 영역영역 영역영역

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준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1	감리진문 회사 영업 (건설기술 관리법 제 29조의2제 1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인·허가· 신고권자 시· 도지사	인·허가· 신고 의무자 양도인· 양수인 공동	사 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에 관한 제63조제1 항 각 호의 서류 -수행 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용역의 양 도·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 조제2항 제6호)	- 등록기준 부적합시 시정 요구
		법인 합병	합병의 당사자 가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 또는 합병 당사 자의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	"	"	감리전문 회사와 대표자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 또는 합병 당사 자의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	"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공고문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 의서 사본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 는 법인에 관한 제63조제1 항 각 호의 서류 -수행 중인 감리용역이 있 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동 의를 증명하는 서류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준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2	건설업 (건설산업 기본법 제 17 조 제 1 항· 제3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국토해양부 장관	양도인· 양수인 공동	사 전	-양도계약서 사본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시 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첨 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 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을 말한다)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 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 한 서류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 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 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 견서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 에 한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 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임찰참	×	×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의 벌금 (법 제96 조제2호)	- 이해관계 인의 의견 이 조정되 지 아니한 때 등 보 완조치 (시행규칙 제18조 제 5항)

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 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 는 법인	"	"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 나 신설 되는 법인 의 대표자 공동	"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공고문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 서 사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 제2항 각 호 서류(해당 건설 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	"	"	
		상 속	상속인	"	"	상속인	상속 개시일 부터 60일 이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인에 관한 서류로서 시 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 만을 말함)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결격 사유에 해당 하면 3개월 이내에 건설업 양도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 에 한한다)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장· 군수· 구청장	불명확	양도· 양수일 부터 30일 이내	-골재채취업 등록증 -양도계약서 사본 -양수인에 관한 시행규칙 제 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	×	×	
3	골재 채취업 (골재채취 법 제17조 제1항·제 3항)	범인 합병	합병으로 실거 존 속하는 범인	"	"	"	합병일 부터 30일 이내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 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유 범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 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범 인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제2 항 각 호의 서류	"	"	"	-골재채취업 자인 범인 이 골재채 취업자 가 아닌 범인 합병 시 제외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의 서류 중 개인이 제출하 여야 하는 서류	"	"	"	

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장·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양수인	1개월 이내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 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나 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 정을 증명하는 서류	○	×	×	
4	국 토 해 상 영 업 승 계 제 도 (국 토 해 상 영 업 승 계 법 제9조 제1항)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합병 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 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합병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피상속 인 사망 후 60일 이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5	개발가능 무인도서 개발사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28 조 제1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국토해양부 장관·시·도 지사	양수인	사유 발생일 부터 1개월 이내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 거나 존속하 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 나 존속하 는 법인	"	"	"	"	"	
6	복합물류 터미널사 업 (물류시설 및 관 운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영업 양도 · 양수	양수인	신고	국토해양부 장관	양수인	승계일 부터 7일 이내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양수인(법인 경우에는 그 임 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시 행규칙 제4조제3호의 서류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7 조제2항 제1호)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	"	"	

1.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유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합병계약서의 사본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 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 의 명세서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 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 제3호의 서류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외 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 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 국인투자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7	물류 창고시설 (물류시설 의 개발 및 관 운영에 관 한 법률 제 21조의7)											-복합물류 터미널사 업 승계규 정 준용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청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8	국제 물류 주선업 (물류정책 기본법 제 45조 제1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국토해양부 장관	양수인	승계일 부터 15일 이내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 의 서류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3 조제1항 제2호)	
		법인 합병	합법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합병계약서의 사본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 산의 명세서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 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임 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 의 서류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 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외	"	"	"	- 등록취소 (제47조)

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 신고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	"	"	-외국인 상속 인정
9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국토해양부 장관	양도인· 양수인 공동	사전	-양도계약서 사본 -양수인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	○	-시정조치 (법 제22 조제1항 제1호)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의면책 규정 필요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시행령 제13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소 비자 모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40 조제3항 제2호)	
	조 제1항· 제5항)	법인 합병	합병의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 전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여여는 의 설립 법인 대표 공동	"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공고문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 는 법인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	"	

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준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상속 개시일부 터 60일 이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인에 관한 시행규칙 제3 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양도)	"	"	
10	시설물안 전진단전 문기 관 영 업 (시설물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 별법 제9조 의 8 제 1 항· 제 2 항· 제4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 도지사	양도인· 양수인 공동	사 전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에 관한 시행규칙 제 7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	×	×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 시정요 구(시행규 칙 제10조 의2제3항)
		합병 법인 합병	합병의 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 는 법인	"	"	합병 전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공고문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 서 사본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응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범인이거나 합병하여 설립되는 법인 대표 공동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신고방법· 절차 규정 미비
1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4조제1 항·제4항/ 제15조 제1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	불명확	사전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결정서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	×		-영업양도에 따른 승계 제한 있음 (법 제14조 제2항)

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응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양도·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	"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합병 당사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	"		
	상속	상속인	"	"	"	"	"		"	"		-상속에 따른 승계 제한 있음 (법 제15조 제1항 단서)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12	자동차 관리사업 (자동차관 리법 제55조 제1항·제 2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장·군수 · 구청장	불명확	사 전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 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 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 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 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	×		-결격사유 준용 규정 법률화 -휴·폐업 신고 규정 분리 -양도·양 수 첨부서 류와 별인

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13	휴양 펜션업 (제주특별 자치도 설 치 및 유 도 제시 조 성 을 위 한 특 별 법 제174조 제5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도지사	양수인	양수일 부터 1월 이내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 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 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 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 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 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 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 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 사관이 확인한 서류)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 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3조제4항)	×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62 조제6항 제5호)	합병 첨부 서류 구분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의 전부 인수	시설 인수자	"	"	시설 인수자	인수일 부터 1월 이내	"	"	"	"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장·군수 · 구청장	양수인	양수일 부터 1개월 이내	-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 양도계약서 사본 -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 -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0 조제6호)	
14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지하수법 제24조 제 1항~제3항)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속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합병일 부터 1개월 이내	-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	"	

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15	지하수 정화업 (지하수법 제29조의2 제3항)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승계일 부터 3개월 이내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 규정 준용
16	철도사업 (철도사업 법 제14조 제1항·제 2항)	영업 양도	양수인	인가	국토해양부 장관	양도인· 양수인 공동	양도· 양수 계약 체결일 부터 1월 이내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양도·양수 후 당해 운영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 양수인이 법 제7조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 명하는 서류 -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 인인 경우에 한한다) -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 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의결서 사본	○	×	×	- 인가신청 절차에 관한 위임 근거 없음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되는 법인	"	"	법인의 합병을 하고 자하는 자	합병 계약 체결일 부터 1월 이내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당사자가 신청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7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	"	"	"
17	전용 철도 운영권 (철도사업 법 제36조 제1항·제 2항, 제37 조 제1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국토해양부 장관	양도· 양수하려 하는 자	사 진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법 인의 경우에 한한다) -법인 임원의 성명·주 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서류(법 인의 경우에 한한다)	○	×	×	-신고인 불명확 -사후 신고로 전환

1.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요간	인·허가·신고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법인 합병	합병으 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 는 법인	"	"	합병하고 자 하는 법인	"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 산의 명세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 사회의 의결서 사본	"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신고 를 하고자 하는 자	피상속 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과 상속위 또는 동 순위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의 동의서	"	"	"	"
18	철도용품 인증품 생산업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품질 인증기관	양수인	승계일 부터 1월 이내	-철도용품품질인증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 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1 조제6호)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재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철도용품품질인증서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인증을 생산하는 자의 지 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철도안전 법 제29조 제1항)	상속	인 증 품 을 하 는 인 계 속 하 는 인 생 산 하 는 인 상 속 하 는 인	"	"	인 증 품 을 계 속 하 는 인 생 산 하 는 인 상 속 하 는 인	"	-철도용품품질인증서 -합병계약서 및 합병후 존 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 등본 -인증을 생산하는 자의 지 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19	측량업 (측량·수 로조사 및 지적에 관 한 법률 제 46조제1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국토해양부 장관/시· 도지사	양수인 상속 하 는 인	승계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1 조제1항 제2호)	

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	"	"	
		상속	상속인	"	"	"	"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공고문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	"	"	
20	수로사업 (측량·수 로조사 및 지척에 관 한 법률 제 54조 제 6항)											-측량업 승 계 규정 준용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요간	인·허가·신고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21	국내항운 송사업· 국제항공 운송사업 (항공법 제124조제 1항, 제125 조제1항, 제126조제 1항)	영업 양도	양수인	인가	국토해양부 장관	양도인· 양수인 (연명)	계약일 부터 30일 이내	-양도·양수 후 해당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양수인이 법 제113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계약서의 사본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도의 승계제한 사유 있음 (법 제124조 제2항)	×	면허취소·정지(법 제129조제1항 제10호)	-절차에 관한 수권 근거불비
		법인 합병	합병으로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법인의 합병을 자하려는 자(연명)	계약일 부터 30일 이내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	"	면허취소·정지(법 제129조제1항 제11호)	"

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 사유	상속인 (상속 인이 2 명 이상 인 경우 협의에 의한 1 명)	"	"	상속인	승계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	-가족관계등록부 -신고인이 법 제113조제3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의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승계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2명 이상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3개월 이내에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	면허취 소·정지 (법 제129 조 제1항 제12호)	"
22	소형항공 운송사업 (항공법)											-국내항공 운송 사업·국제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준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제132조제 3항)											항공운송 사업 승계 규정 준용
23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법 제134조제 3항)											"
24	항공기 취급업 (항공법 제142조제 1항)											"
25	항공기 정비업 (항공법 제142조제 2항)											"

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26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항로표지 법 제16조 제1항·제 2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국토해양부 장관	양수인	승계일 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수신 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 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4 조제1항 제5호)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별지 제18호서식의 합병신 고서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 인의 정관	"	"	"		
		상속	상속인	"		상속인	상속인	"	-별지 제16호서식의 상속인 사업승계신고서 -상속인의 사업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	"	"	"	
		경매 등에 따른 시설· 설비의	시설· 설비인 수자	"		시설·설 비인수자	시설·설 비인수자	"	신고양식,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없음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27	예선업 (항만법 제36조)	진부 인수										
		영업 양도	양수인	-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	-	-	-승계근거만 두고 있음
28	항만운송 사업 (항만운송 사업법 제 23조 제1항·제 2항)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 는 법인	-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	-	-	-
		상속	상속인	-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	-	-	-

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준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상속	상속인	-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	-	-	"
		경매 등에 따른 시설· 장비 전부 인수	시설· 장비 인수자	-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	-	-	"
		영업 양도	양수인	-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	-	-	-승계근거만 두고 있음
29	항만운송 관련사업 (항만법 제26조의4)	법인 합병	합병으 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 는 법인	-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	-	-	"
		상속	상속인	-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재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30	해상교통 안전진단 대행업 (해사안전 법 제21조 제1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국토해양부 장관	양수인	승계일 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진 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 양도·양수 신고서(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 하는 서류	○	×	-등록취 소·영 업정지 (법 제23 조제1항 제6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 조제3항 제4호)	-제재적 행 정 처분 과태료 모두 두는 것은 과다함
31	해상교통 안전관리 대행업	법인 합병	합병으 로 되 거나 존속 하 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 나 존속 하는 법인	"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진 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 고서를 포함한다) -합병계약서 사본 등 권리· 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	"	"
											-등록취 소·영 업정지	-해상교통 안전진단 대행업 승계

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해사안전 법 제53조 제1항)										(법 제54 조제1항 제6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 조제3항 제4호)	규정 준용 -제재적 행 정 처분 과 태료 모 두 는 것 은 과 다 함
	해양심층 수개발업 (해양심층 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 1항·제2 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국토해양부 장관	양수인	1개월 이내	-사업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	×	-신고기간 의 기 산 점 불 명 화
32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 립 되 거 나 존 속 하 는 법 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경매 등에 따른 시설· 설비 전부 인수	시설· 설비 인수자	"	"	시설·설 비인수자	"	"	"	"	"	"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도지사	양수인	1개월 이내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 조제1항 제2호)	-신고기간 의 기산점 불명확
33	먹는해양 심층수 제조업 (해양심층 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 1항)	범인 합병	합병의 로 설 립되거 나 존 속하는 범인	"	"	합병으로 설립되지 하는 범인	"	"	"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	"	"	"

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경매 등에 따른 시설· 설비 전부 인수	시설· 설비인 수자	"	"	시설·설 비인수자	"	"	"	"	"	"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도지사	양수인	1개월 이내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8 조제1항 제2호)	-신고기간 의 기산점 불명확
34	먹는해양 심층수 수입업 (해양심층 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법인 합병	합병으 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 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 나 존속 하는 법인	"	"	"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경매 등에 따른 시설· 설비 전부 인수	시설· 설비인 수자	"	"	시설·설 비인수자	"	"	"	"	"	"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해양 경찰청장	양수인	1개월 이내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 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 하는 서류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폐기 물배출업자로 한정)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2 조 제2항 제호)	-첨부서류 가 별지 서 식에 명시 되어 있음
35	해양환경 관리업 (해양환경 관리법 제 74조 제1 항·제2항)	법인 합병	합병으 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 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 나 존속 하는 법인	"	-법인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폐기 물배출업자로 한정)	"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	"	"	"

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로 한정)				
		경매 등에 따른 시설· 설비 전부 인수	시설· 설비인 수자	"	"	시설·설 비인수자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폐기 물배출업자로 한정)	"	"	"	"
36	해양여객 운송사업 (해운법 제17조 제 1항·제2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국토해양부 장관	-	-	-	-	-	면허취 소·영업 정지 (법 제19 조 제1항 제9호)	-개정 해운법 (2012.12.2 시행)을 기 준으로 함 -신고방법· 절차규정 미제정 -결격사유 에 해당하 면 90일 이 내에 지위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양도·대 표자 변경 의무
		법인 합병	합병으 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 는 법인	"	"	-	-	-	-	-	"	
		상속	상속인	"	"	-	-	-	-	-	"	
		경매 등에 따른 시설· 설비 전부 인수	시설· 설비인 수자	"	"	-	-	-	-	-	"	
37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국토해양부 장관	양수인	사전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물차 등 차의 지역 간 수급균

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준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 제17조 제1항)							<p>합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p> <p>-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p> <p>-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다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명 사본</p> <p>-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p>				<p>형 등을 양도·양수, 합병 제한 (법 제16조제3항)</p> <p>(법 제70조제2항 제8호)</p>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서 제출 서류 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결격 사유 존응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 산의 명세서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합병 후 신설되는 법 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 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 명하는 서류	"	"	"	-운송사업 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 하는 경우 제외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피상속 인 사망 후 60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 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 명하는 서류	"	"	"	

I. 국토·해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 사유 존용 여부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비고
								인·허가· 신고 시 제4조 각 호의 -신고인이 별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증명하는 서류				
3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승계규 정 준용
39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승계규 정 준용

II.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고압가스 제조허가 업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 제8조 제1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	양수인	승계일 부터 30일 이내	-허가증·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 조 제4항 제1호)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 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 나 존속 하는 법인	"	-허가증·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합병계약서 사본 등 등 지 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허가증·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II.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호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	양수인	승계일 부터 30일 이내	-허가증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4조제 2항제1호)	
2	도시 가스사업 (도시가스 사업법 제 7조 제1 항·제2항)	법인 합병	합병으 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 는 법인	"	"	합병진의 각 법인 대표 합 의자와 병후에 존속하 거나 신 설되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	"	-허가증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허가증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호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경매 등에 따른 가스 공급 시설 의 전부 인수	시설 인수자	"	"	시설 인수자	"	-허가증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	"	
3	천연가스 수출입업 (도시가스 사업법 제 10조의2제 3항)											-도시가스 사업 승계 규정 준용
3	산업표준 인증기관 (산업표준 화법 제35 조제1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지식경제부 장관	양수인	승계일 부터 1개월 이내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	300 만 원 이 하 의 과태료(법 제44 조 제 1 항 제2 호)	

II.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	"	"	-첨부서류 미규정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4	석유 정제업 및 석유 연료 사업 법 제7조 제1항·제 2항)	영업 양도 · 양수	양수인	보고	시장·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양수인	승계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	-	○	○	×	-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 1항 별표 8에 따라 보고의무 부과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호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	"	"	
		경매 등으로 석유 정제 시설의 전부를 인수 한자	시설 인수자	"	"	"	"	-	"	"	"	
5	석탄 가공업 (석탄산업 법 제20조 제1항·제 2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장·군수 ·구청장	양수인	승계일 부터 15일 이내	-등록증	×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5조제 3항제1호)	-승계일 단 기임 -첨부서류 보완 필요 -수수료

II.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	"	"	
	경매 등에 따른 석탄 가공 업을 영위 하는 시설의 전부 인수	시설 인수자	"	"	시설 인수자	"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의 사본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존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6	액화석유 가스사업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 8조 제1 항·제2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허가관청· 등록관청	양수인	승계 후 30일 이내	-허가증 또는 등록증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 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 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 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3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법 제52 조 제 1 항 제2호)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	"	"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	"	"	"
		사업 용 시설 이나 액화 석유 가스	시설 인수자	"	"	시설 인수자		"	"	"		

II.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호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저장소 시설의 전부 인수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지식경제부 장관 (협회)	양수인	승계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8조제 1항제3호)	-신고수수 료 부과 (법 제45 조제2호)
7	엔지니어 링사업 (엔지니어 링산업 진 흥법 제23 조제1항)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 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를 증명하는 서류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8	특정물질 제조업 (오진정보 호를 위한 특정물질 의 제조규 제 등에 관 한 법률 제 6조제1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지식경제부 장관	양수인	승계일 부터 30일 이내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 표자와 임원)의 신원증명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 의 경우에는 정관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각 1부 -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2조 제2항 제 2호)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	"	"	"
9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 발전법 제 13조제1항)	영업 양도	양수인	-	-	-	-	-	×	×	×	-절차 규정 미비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합병	-	-	-	-	-	"	"	"	"

II.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존속 하는 법인									
		상속	상속인	-	-	-	-	-	"	"	"	
10	공동집배 송센터 (유통산업 발전법 제 32조제2항)	신탁 계약	신탁 계약을 체결한 신탁 업자	자료 제출	-	-	계약 체결일 부터 14일 이내	-신탁계약서 사본	×	×	×	
11	전기 공사업 (전기공사 업법 제7 조 제1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도지사	양수인	사전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 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양수에 관한 사 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 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3 조제3호)	-신고수수 료 부과 (법 제5조 제4호)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p>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양도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양도·양수 신문 공고문 사본</p> <p>-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p>				
		<p>법인 합병</p>	<p>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p>	<p>"</p>	<p>"</p>	<p>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p>	<p>"</p>	<p>-합병계약서 사본</p> <p>-합병공고문 사본</p> <p>-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p> <p>-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p> <p>-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p> <p>-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 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p>	<p>"</p>	<p>"</p>	<p>"</p>	
		<p>상속</p>	<p>상속인</p>	<p>"</p>	<p>"</p>	<p>상속인</p>	<p>"</p>	<p>-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p> <p>-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p>	<p>"</p>	<p>"</p>	<p>"</p>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호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 가를 받 아 법인 을 분할 한 경우 그에 의 하여 설립 되는 법인						
		상속	상속인	-	"	"	-	-	"	"	"	- 상속에 따른 승 계 절차 필요
12	설계업· 감리업 (전력기술 관리법 제 16조의2제 1항)	영업 양도 · 양수	양수인	신고	시·도지사	불명확	- 양도· 양수 제 약일부 터 30일 이내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법 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 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 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 함한다)	○	×	1년 이하 의 징역 또 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수수 료 부과 (법 제6조 제6호)

II.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호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수인에 관한 시행규칙 제 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양도·양수에 관한 공고문 사본 -법 제18조의2제2항의 공제 규정에 따른 단체의 의견서(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설계·설계감리 또는 공사 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9조 제9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합병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호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설계·설계감리 또는 공사 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용역이 있 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지식경제부 장관	양수인	1개월 이내	-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46조제 2항제12호)	-신고기간 의 기산시 점 불명확 -법률 개정 에 따른 절차규정 미완비
11	공인전자 문서센터 영업 (전자거래 기본법 제 31조의14 제1항)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	"	"	

II.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2	지식정보 보안 권설정 전문업 (정보통신 산업진흥 법 제35조 제1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지식경제부 장관	불명확	사전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이 지식정보보안 권 설정전문업체가 아닌 경우 에는 양수인에 관한 시행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 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 다)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 된 업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	×	×	-결격사유 준용여부 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야 함 -제재수단 마련 필요
		합병 합병	합병의 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 는 법인	"	"	"	"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제9 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 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 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정보보안 권설정전문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호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3	집단 에너지 사업 (집단 에너지사업 법 제12조 제1항·제 2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지식경제부 장관	양수인	30일 이내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 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 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 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 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증명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 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 인한 서류)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 세를 포함한다) - (제주특 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3조제4항)	○	×	200 만 원 이하 의 과태료(법 제60조 제 1항제1호)	-신고기간 의 가산점 명확화

II.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합병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승계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승계인이 특수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사업허가증	"	"	"	-불필요한 첨부서류 제외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	"	
		경매 등에 따른 공급 시설 시설 의 전부 인수	시설 인수자	"	"	시설 인수자	"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및 양수받은 공급시설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사업의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에 한한다)	"	"	"	
14	특정사업 (항공우주 산업개발)	영업 양도	양수인	-	-	-	-	-	○	×	×	-승계 절차 규정 없음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호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촉진법 제 7조제1항)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	-	-	"	"	"	
		상속	상속인	-	-	-	-	-	"	"	"	
15	1종 화학물질 제조업·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제조업 (화학무기 ·생물무 기의 금지)와 특정화학 물질·생 물 작용제 등의	영업양도	양수인	신고	지식경제부 장관	양수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 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 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0조제 1항제1호)	-승계사실 확인 서류 필요 명시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 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 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	"

II. 지식경제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 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제조·수 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Ⅲ.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건강기능 식품제조 업 등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 률 제11조 제1항· 제2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인·허가· 신고권자 식품의약 품안전청 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양수인	승계일 부터 30일 이내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및 양 도인의 인감증명서	○	○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의 벌금 (법 제45 조제3호)	-해당 사유 별로 영업 자의 지위 를 승계하 였음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 도록 함

Ⅲ.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 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경매 등에 따른 영업 시설· 설비 의 전부 인수	영업 시설· 설비 인수자	"	"	영업시설 ·설비 인수자	"		"	"	"	
2	공중위생 영업 (공중위생 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장·군 수·구청장	양수인	1개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 인의 인감증명서[다만, 양 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 특별상 무단전출을 포함 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 하는 경우로서 시장·군 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 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	○	6월 이하 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의 벌금(벌 금(벌제 20조 제2 항제2호)	-이용업· 미용업의 경우 면 허소지자 에 한하 여 지위 승계 가능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합병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경매 등에 따른 영업	시설 인수자		"	"	시설· 설비 인수자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Ⅲ.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요양기관 (국민건강 보험법 제85조제 3항·제4항)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 인수	양수인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	신고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양수인	승계일 부터 1개 월 이내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법 제15조 의12)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제 1항제2호)	- 무효 처분과 승계 의 만 족 조건 없음
3	산후 조리업 (모자보건 법 제15조 의3제1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양수인	승계일 부터 1개 월 이내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법 제15조 의12)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제 1항제2호)	- 무효 처분과 승계 의 만 족 조건 없음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	"	
4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 사업법 제30조 제1항)	법인 합병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허가	시·도지 사/보건복지 지부장관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 간 합병)	사회복지 법인	사전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복지 지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 인의 정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관 계법인의 합병결의서·정 관·재산목록 및 대차대 조표 각 1부, 정관변경안 1부,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재 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	○	○	×	- 사회복지 사업법 에 따 른 간 만 가능

Ⅲ.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5	사회 서비스 제공업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리에 관한 법률 제22 조제1항· 제2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장·군수 ·구청장	양수인	1개월 이내	되는 법인(합병취지서·재 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합병 당해연도 및 다 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 호의 서류 각 1부)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 합병	합병의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경매 등에 따라	시설· 설비 인수자	"	"	시설· 설비 인수자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	"	"	

Ⅲ.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영업 시설 ·설비의 전부 인수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식품 의약품 안전청장	양수인	1개월 이내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 조 제3항 제1호)	
6	식품위생 검사기관 (식품위생 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식품위생 위생 검사기관 영업 시설의 전부 인수	시설 인수자	"	"	시설 인수자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위 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7	식품제조 업등 (식품위생 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식품의약 품안전청 장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	양수인	1개월 이내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	×	

Ⅲ.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식품 제조업 시설의 전부 인수	시설 인수자	"	"	시설 인수자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8	의약품등 제조업등 (약사법 제89조제 1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의약품관 매업의 경우는 시장·군 수·구청장)	양수인	1개월 이내	-	○	○	×	- 신고방 법·절 차에 구체 적인 항 미비
		합병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 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	"	"	" (상속 시작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

Ⅲ.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어린이집 (영유아보 육법 제 45조의3)	영업 양도 범인 합병	양수인 합병의 모של림 되거나 존속하 는 법인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 행정 제 재 처 분 과 효 과 만 승 계
10	응급환자 이송업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 제54 조제1항· 제2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 도지사	양수인	60일 이내	-	×	×	허가취소 또는 업 무 정 지 (법 제55 조 제2항 제1호)300 만원 이 하의 과태 료(법 제 62조 제1 항제5호)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	"	"	
		경매 등에 따른 영업 시설 전부 인수	시설 인수자	"	"	시설 인수자	"		"	"		
		영업 양도	양수인	-	-	-	-	-	○	×	-	-승계 절차 규정 미비
11	의료기기 제조업등 법 제47 조제1항)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	"	"	"	"	"	

Ⅲ.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상속	상속인	"	"	"	"	"	"	"	"	
12	치과 기공업· 안경업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 조 제4항)	영업 양도	양수인									- 행정 제 재 처 분 의 효 과 만 승 계
12	화장품 제조 판매업· 제조업 (화장품법 제26조)	영업 양도 인 병 합 병	양수인 합병 으로 설 립 되 는 속 하 는 법 인									- 승 계 절 정 차 규 비

IV.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게임 제작업등 (게임산업 진흥에 관 한 법률 제29조 제1항·제 3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장·군수 · 구청장	양수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양수 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 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 48조제1 항제6호)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 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IV.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존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경매 등에 따른 영업 시설· 설비의 전부 인수	영업 시설· 설비 인수자	"	"	영업 시설· 설비 인수자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 에서 같은 업종 으로 다시 허가· 등록· 신고	재허 가· 등록· 신고한 영업자	-	-	재허가· 등록· 신고한 영업자	승계 사유 발생일 부터 20일 이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 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2	관광사업 (관광진흥 법 제8조 제1항 제1 항· 제2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인·허가· 신고권자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구청장	양수인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 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 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 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 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 세를 포함한다)	○	○	- 등 록 취 소, 사 전 업의 또는 부 일 부 지, 시 운 설 · 운 영 개 신 명 령(법 제 35 조 제 1 항 제 3 호) - 카 지 노 사 업 자 · 2 년 이 하 의 징 역 또 는 2 천 만 원 이 하 의 벌 금 (법 제 83 조 제 2 호)	- 신고수수 료 부과 (법 제79조 제5호)

IV.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	"	"	
		경매 등에 따른 영업 관련	시설· 설비 인수자	"	"	시설· 설비 인수자	"	"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설 및 설비의 전부 인수										
	신문사업 · 인터넷 신문사업 (신문 등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 2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 도지사	양수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 서(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 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 조 제1항 제7호)	
3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합병계약서 사본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 서(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 한다)	"	"	"	

IV.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존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양수인	승계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 은 서류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 조제3항 제3호)	
4	영화상영 관 경영자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 항· 제2항)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	"	"	-영업양도 이 외 의 승계사유 에 대한 첨부 서류 미비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	"	"	"
		경매 등에 따른 영화 상영관 인수	영화 상영관 인수자	"	"	영화 상영관 인수자	"	-	"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 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5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 1항~제3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장· 군수· 구청장	양수인	1개월 이내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 (법 제69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 조 제3항 제3호)	-영업양도 이 외의 승계사유 에 대한 처분 미비

IV.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존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등록	재신고·등록한 영업자	-	-	재신고·등록한 영업자	-	-	-	"	-	-
		영업양도	양수인	-	-	-	-	-	-	○	-	-승계절차 규정 미비
6	음반·음 악영상물 제작업등 (음악산업 진흥에 관 한 법률 제 23조 제 1항·제2항)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	"	"	"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상속	상속인	"	"	"	"	"	"	"	"	"
		경매 등에 따라 영업 자의 시설· 기구의 전부 인수	시설 · 기 구인 수자	"	"	"	"	"	"	"	"	"
7	정기간행 물사업 등 (잠지 간행 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2 제1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등록· 신고 관청	양수인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잠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 간행물· 전자기행물· 기타 간행물사업 신고증 -양도· 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등록 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3 조 제2항 제3호)	

IV.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잠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 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사업 신고증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등록 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	"	"	-제출 서류 의 구체화 필요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잠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 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사업 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등록 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	"	"	
8	체육 시설업 (체육시설 의 설치· 이용에 관 한 법률)	영업 양도	양수인	-	-	-	-		×	×	×	-승계 절차 규정 미비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제27조제1 항·제2항)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	"	"	"	"	"	"
		상속	상속인	"	"	"	"	"	"	"	"	"
		경매 등에 따라 필수 시설 인수	시설 인수자	"	"	"	"	"	"	"	"	"

V.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신고기 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농산물우수관리인 수관리인 증기관· 우수관리 시설·품질 인증기관 (농산물품질 관리법 제28조 제 1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지정을 받은 기관	양수인	승계 사유 발생일 부터 1개월 이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 정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 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	×	×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기 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2	농약등 제 조업·수물 출입식물 방제업· 품목등록 제조업· 수입업· 원재업· 판매업 (농약관리 법 제5조 제1항, 제 12조, 제 16조 제 4 항, 제17 조 제 3항, 제17조의2 제4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농촌진흥청 장/국립 식물검역 기관의 장/시장· 군수·구청장	양수인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등록증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서류	○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0 조 제2항 제1호)	-신고 시점 이 시행규 칙(제7조 제1항)에 규정됨 -신고수수 료 부과(법 제28조 제 1항 제3호)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등록증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등록증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V.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기 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3	농어촌 관광휴양 지사업 (농어촌정 비법 제87 조 제1항· 제2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장· 군수· 구청장	양수인	1개월 이내	-신고필증(또는 분실사유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	○	-사업장 폐쇄명,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전부 는 일부 는 정지 명령(범 제89조 제1항제 5호, 관 광농원 사업의 경우만 해당함) - 1년 이내 의 지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광농원 의 경우에 「농어 촌 관광 휴양 지사업 규정」 제3조제2 호에 따라 농어촌 농업인, 한 국농어촌 공사, 그 밖에 통령령으 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만 승 계 가능 (농어촌정 비법 제87 조제3항)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기 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별지서식 에서 첨부 서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 -제재수단 이 과다함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신고필증(또는 분실사유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신고필증(또는 분실사유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 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V.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기 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존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경매 등에 따른 사업 시설· 설비의 전부 인수	시설· 설비 인수자	"	"	시설· 설비 인수자	"	-신고필증(또는 분실사유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장·군수 ·구청장	양수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7 조제1항 제6호)	
4	동물장 포 동물 영업 판매 동물 영업 생산물 (동 물 보호 법)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기 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존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제35조제1 항· 제2항)	경매 등에 따른 영업 시설의 전부 인수	시설 인수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영업 양도	양수인						×	×	×	-승계 관련 절차규정 미비
5	비료업 (비료관리 법 제13조)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	

V.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기 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상속	상속인						"	"	"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도지사	양수인	승계일 부터 30일 이내	-승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8 조제3항 제3호)	-신고기간 의 점이 시행 규칙에 규정됨
6	사료제조 업 (사료관리 법 제9조 제1항·제 2항)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	"	-영업양도 이외의 승계사유 에 대한 첨부서류 미비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	"	"	"
		경매 등에 따라 제조 시설의	제조 시설 인수자	"	"	시설· 설비 인수자	"	"	"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 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기 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존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7	어업 (수산업법 제44조 제 1항)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 의 매입 또는 임차	매입자 또는 임차인 (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에는 합병· 분할 후 존속 하는 법인 포함)	신고	허가 행정청	매입자 또는 임차인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	-	-승계 절차 규정 미비 (해당 시행 규칙 없음)
		전부 인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
												"
												"

V.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기 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존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시설물 의 상속									(법 제102 조 제1항 제9호)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식물검역 기관의 장	양수인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양도·양수 를 증명하는 서류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0 조 제3항 제5호)	-신고기간 미규정
8	수출입목 재열 처리업 (식물방역 법 제40조 의3제1항)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제출 서류 의 구체화 의 필요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기 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존유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9	우수식품 인증을 받 은 자우 우수식품 인증(식 품안전 진흥 법 제30 조제1항)	영업 양도	양수인	- 농림수산 식품부장 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 인증기관 의 장	양수인	승계일 부터 30일 이내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인증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 증품취급계획서(취급자의 경우에만 해당함) 1부 -인증승계사실 증명자료 1부 -승계받은 우수식품인증서 1부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우수식품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8 조제1항 제4호)	-신고시점 및 기간이 시행규칙 에 명시됨	
		범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범인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범인	"	"	"	"	"	"	"
		상속	상속인	"	상속인	"	"	"	"	"	"	"

V.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기 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0	양곡 가공업 (양곡관리 법 제19조 의 2 제 1 항· 제2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양수인	1개월 이내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6 조 제1항 제4호)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	"	"	
		경매 등에 따라 영업 시설· 설비의 전부 인수	시설· 설비의 인수자	"	"	시설· 설비의 인수자	"	"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 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기 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존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11	어장정화· 정비업 (어장관리 법 제19조 제1항·제 2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도지사	양수인	1개월 이내	-양도계약서 등 양도·양수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	200만 원 이 하 의 과태료 (법 제33 조 제1 항 제3호)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 본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경매 등에 따라 영업 시설· 설비의	시설· 설비의 인수자	"	"	시설· 설비의 인수자	"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V.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기 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전부 인수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농림수산식 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	양수인	승계사유 발생일 부터 60일 이내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법에 따른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승계대상 승인·허 가 업을 보다 명확 하게 명시 할 필요 있음
12	이촌종합 개발사업 (이촌·어 항법 제55 조제1항)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법에 따른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법에 따른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기 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3	연계조업 (약관리법 제5조제1 항·제2 항)	영업 양도	양수인	-	인·허가·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기 간	-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	×	×	-승계절차 규정 미비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	"	"	"	"	"	"
14	인삼류 제조업 (인삼산업 법)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장·군수	양수인	승계사유 발생일 부터	-「식품위생법 48조제1항에 따른 증인을 얻거나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규칙 에서 「식 품위생법
		경매 등에 따라 연계조 시설· 설비의 전부 인수	연계 조시 설· 설비의 인수자	"	"	"	"	"	"	"	"	"

V.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기 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존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 제14조 법 제1항)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법에 따른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법 제33 조 제1 항 제4호)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수수료 를 납부 하 도 록 의무화함				
15	인삼경작 (인삼산업 법 제4조 제2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	양수인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법에 따른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기 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존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합병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법에 따른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법에 따른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16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 공업·식 공포장처 육업·축 리업·축 산물보관 업·축산 물업·축 산물판매 업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농림수산식 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양수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 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	○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의 벌금 (법 제 45조제4 항제10호)	-수수료(법 제41조제 15호) - 제재수단 이 과다함
		합병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V.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기 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존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존속하는 법인						
	(축산물위 생관리법 제26조제1 항·제2항)	상속 경매 등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진부 인수	상속인	"	"	상속인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시설 인수자	"	"	시설 인수자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7	축산업· 가축사육업 (축산법 제24조제1 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양수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축산업등록증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4 조제5호)	-2013년 2월 23일 시행 -가축사육 업의 경우 신고절차 규정 미 제정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기 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	-축산업등록증	"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축산업등록증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18	친환경농 산물인증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 (친환경농 업육성법 제17조의7 제1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인증기 판의 지위 승계한 농 림수산식품 부장관 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 계한 경우: 농림수산식	양수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 재한 사업계획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 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증기관승계사실 입증자료 -승계받은 인증기관지정서 ·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인증품생산계획서	×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 조 제1 항 제2호)	-승계시 점 및 기간이 시행규칙 에 규정 되어 있음

V.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신고권자	인·허가·신고 의무자	인·허가·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존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품부장관 또는 기관	인·허가·신고	인·허가·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존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품부장관 또는 기관	인·허가·신고 의무자	인·허가·신고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존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인 합병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법에 따른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상속	상속인		"	상속인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법에 따른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19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 (친환경농업육성법)	영업양도	양수인	신고	·인증기관의 승계한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양수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자재공시등기관 승계 사실 입증자료 -승계 받은 농자재공시등기관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승계시점 및 시간이 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 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기 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제 20 조 의 10 제 1 항)				인·허가· 신고권자 · 인 증 을 받 은 자 의 지 위 를 승 계 한 경 우: 농 립 수 산 부 또는 농 자 재 공 시 등 기 관	인·허가 · 신고 의 무 자	인·허가 · 신고 기 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관 지정서 · 인 증 을 받 은 자 의 지 위 를 승 계 한 경 우: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 시 또는 품질인증 생산계 획서 -공시 또는 품질인증 승계 사 실 임 증 자 료 -승계 받은 친환경유기농자 재 제품 공시서등				
		합병 으로 설립되 거나 존속 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법에 따른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	
		상속	상속인	"	상속인	상속인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법에 따른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

VI. 환경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1	배출시설· 처리시설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14조)	법인 합병	양수인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	×	×	-	-승계 절차 규정 없음
2	가축분뇨 관련영업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및 이용에	영업 양도	양수인	-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	○	×	-	-승계 절차 규정 없음

VI. 환경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존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4	유독물 영업 (유해화학 물질 관리 법 제28조 제1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도지사	양수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증 원본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3 조 제1항 제5호)	
		범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범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범인	"	"	"	"	"	
5	취급 제한·금지 영업 물질영양 (유해화학 물질 관리 법 제34조 제6항)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도지사	양수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증 원본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3 조 제1항 제5호)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 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존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	"	"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	"	"	
		영업 양도	양수인	-	-	-	-	-	×	○	-	-승계절차 규정 없음
6	배출시설· 방지시설 (소음·진 동관리법 제10조 제1항·제 2항)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	"	"	"	"	"	"
		상속	상속인	"	"	"	"	"	"	"	"	"

VI. 환경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경매 등에 따라 배출시 설 및 방지 시설 인수	시설 인수자	"	"	"	"	"	"	"	"	"
7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시·도지사	양수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 서(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 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 조 제1항 제7호)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인수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합병계약서 사본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하는 법인					서(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 한다)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영업 양도	양수인	-	-	-	-	-	×	×	-	-승계절차 규정 없음
8	배출시설· 방지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제36조제1 항·제2항)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	"	"	"	"	"	"
		상속	상속인	"	"	"	"	"	"	"	"	"

VI. 환경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경매 등에 따라 배출시 설 및 방지 시설 인수	시 설 인수자	"	"	"	"	"	"	"	"	"
9	종말처리 시설 부담금 징수대상 공장 또는 사업장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제 49조의3)	영업 양도	양수인	-	-	-	-	-	-	-	-	
10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	영업 양도	양수인	-	-	-	-	-	×	×	-	-승계 절차 규정 없음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수질 및 수생태계 관 보전에 관 한 법률 제 53조제7항)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	"	인·허가· 신고 의무자	"	"	"	"
상속		상속인	"	"	"	"	"	"	"	"	"	"
경매 등에 따라 배출시 설 및 방지 시설 인수		시 설 인수자	"	"	"	"	"	"	"	"	"	"
11	폐수 처리업	영업 양도	양수인	-	-	-	-	-	○	×	-	-승계 절차 규정 없음

VI. 환경 관련 법제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제 65조 제 1 항· 제2항)	합병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	"	"	"	"	"	"
상속		상속인	"	"	"	"	"	"	"	"	"	"
경매 등에 따라 배출시 설 및 방지 시설 인수		시설 인수자	"	"	"	"	"	"	"	"	"	"
1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관 리법 제17	영업 양도	양수인	-	-	-	-		×	×	허가 취소 또는 6개 월 이내의 영업정지 (법 제27 조 제 2항 제16호)	- 승계 절차 규정 없음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	"	"	"	"	"	"
		상속	상속인	"	"	"	"	"	"	"	"	"
		경매 등에 따라 배출시 설 및 방지 시설 인수	시 설 인수자	"	"	"	"	"	"	"	"	"
13	폐기물처 리업, 폐기물처 리시설 설치승인 을 받거나	영업 양도	양수인	신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양수인	승계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 물처리 신고증명서 또는 폐 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 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	"	"	"

VI. 환경 관련 법제 분야 분야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준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고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 리 신고자 (영화 및 비디오 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 항· 제 2 항)	범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범인	"	"	합병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하는 범인	"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 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함)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영업양도 이 외 의 승계사유 에 대한 첨부 서류 미비
		상속	상속인	"	"	상속인	"	-	"	"	"	"
		경매 등에 따른 영화 상영관 인수	영화 상영관 인수자	"	"	영화상영 관 인수자	"	-	"	"	"	-

【부록】 분야별 영업승계제도 현황표

순 번	승계대상 영업명 (조문)	승계 사유	승계인	승계 절차	인·허가· 신고권자	인·허가 · 신고 의무자	인·허가 · 신고 기간	인·허가· 신고시 제출 서류	결격사유 존용여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여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비 고
14	분노수집 · 운반업 (하수도법 제46조 제1항)	영업 양도	양수인	-	-	-	-	-	×	×	×	-절차 규정 미비
		법인 합병	합병 으로 설립 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	"	"	"	"	"	○	"	"	"
		상속	상속인	"	"	"	"	"	×	"	"	"